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672-01

GS&J 연구보고서 2024

영농승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영농승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

GS&J 인스티튜트

www.gsnj.re.kr

황 의 식

신 용 광

김 남 훈

김 태 헌

강 형 준

우 가 영

연구자

황 의 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

신 용 광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김 남 훈 부산대학교 교수

김 태 현 대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 형 준 GS&J 인스티튜트 연구원

우 가 영 GS&J 인스티튜트 기획지원실장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영농승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4월

연구책임자 :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 황의식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제2장 영농승계의 필요성과 전망	11
1. 영농승계의 필요성과 승계농 전망	11
2. 영농승계의 개념과 유형	22
3. 은퇴농지 공급 및 잠재승계자 전망	30
제3장 영농승계 실태조사 분석과 시사점	39
1. 조사개요	39
2. 영농승계 과정, 효과 및 애로요인 실태조사	41
3. 영농승계의 애로요인	47
4. 영농승계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52
5. 영농상속/증여공제제도 평가	54
6. 농업법인 전환 평가	58
7. 영농승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60
제4장 영농승계 활성화 정책 실태와 과제	63
1. 경영이양직불제와 경영이양 농지연금	64
2. 영농승계를 위한 세제지원 현황과 과제	72
3.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 제도	85

제5장	외국의 영농승계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95
1.	외국의 경영이양(농지이양)지원 제도	95
2.	일본의 영농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102
3.	외국의 농업법인 정책	109
4.	일본의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승계 활성화 사례	122
제6장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29
1.	기본방향	129
2.	영농승계 활성화 문화 조성 및 사전 영농승계 컨설팅 지원	132
3.	사전계획적 영농승계 활성화를 강화하는 지원체계 구축	134
4.	사전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경영이양직불금의 지원방식 개선	138
5.	농업법인제도의 개선을 통한 3자 영농승계 촉진	140
6.	영농상속공제 및 사전 영농증여 세제기반 개선	143
	참고문헌	151
	부록1. 영농승계 실태조사표	153
	부록2. 영농승계 실태조사 집계표	163

표 차례

제2장 영농승계의 필요성과 전망	11
표 2-1. 청년후계농 유형별 평균 경지면적과 그 차이	12
표 2-2. 농지 매입 경험과 자금 조달 형태(1순위)	13
표 2-3. 2020년 연령별 농가 인구 및 농업인력 현황	15
표 2-4. 2030년 연령별 농가 인구 추계	17
표 2-5. 2020년 연령별 농가 인구 현황	20
표 2-6. 2030년 연령별 농가 인구 추계	21
표 2-7. 일본의 농업경영승계 유형의 구분	30
표 2-8. 연령별 농업인 농지 소유 현황	31
표 2-9. 향후 10년간 영농은퇴 농업인의 농지 공급 예측	32
표 2-10. 향후 10년간 영농 은퇴 농업인 잠재 승계자 추계	33
표 2-11. 향후 10년간 은퇴 농업인의 논 잠재승계 면적 추계	34
표 2-12. 향후 10년간 은퇴 농업인의 밭 잠재승계 면적 추계	35
표 2-13. 고령 농가의 잠재 승계자 현황	36
표 2-14. 품목별·연령별 잠재 승계자 현황	37
제3장 영농승계 실태조사 분석과 시사점	39
표 3-1. 주요 소득 작목별 청년농 영농현황	40
표 3-2. 영농시작 형태별 승계농지 비중 및 영농승계 효과	41
표 3-3. 승계 유형별, 승계 방식별 농가 비율	42
표 3-4. 승계농지 비중별 영농승계에 대한 부모의 입장	43
표 3-5. 승계농지 비중별 승계 방식별 농가 비율	43
표 3-6. 승계농지 금액별/승계 방식별 농가 비율	44
표 3-7. 승계농지 금액별/승계농지 비중별 농가 비율	44
표 3-8. 영농시작 형태별 영농승계 효과 평가	45
표 3-9. 승계농지 비중별/영농승계 효과별 농가 비율	46

표 3-10. 승계농지 금액별/영농승계 효과별 농가 비율	46
표 3-11. 승계 농지 비중별/승계 애로사항별 농가 비율	47
표 3-12. 승계농지 금액별/승계 애로사항별 농가 비율	48
표 3-13. 영농경력별 부모와 공동영농 중 장애요인(5점 척도)	49
표 3-14. 영농승계 유형별 영농승계 장애요인	49
표 3-15. 승계농지 비중별 영농승계 장애요인	50
표 3-16. 영농 이양 이후 부모의 생활비 확보 계획(복수 응답)	51
표 3-17. 청년농 영농정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52
표 3-18. 영농시작 형태별 정책 중요도 평가(5점 척도)	54
표 3-19. 승계 유형별/영농상속공제금액 만족도별 농가 비율	55
표 3-20. 승계농지 금액별/영농상속공제금액 만족도별 농가 비율	55
표 3-21. 승계 유형별/농업공제한도 확대 필요 이유별 농가 비율	56
표 3-22. 승계농지 금액별/농업공제한도 확대 필요 이유별 농가 비율	57
표 3-23. 승계 유형별/고령농 법인출자 제도 제3자 승계참여 효과별 농가 비율	59
표 3-24. 승계농지 금액별/고령농 법인출자 인센티브 지급제도 효과별 농가 비율	59

제4장 영농승계 활성화 정책 실태와 과제 63

표 4-1 . 경영이양직불 연도별 지원 실적	65
표 4-2. 경영이양직불 총 지원 실적	66
표 4-3. 농지양도 및 양수자 경영면적 비교(2017~2020, 신규 약정자 기준)	66
표 4-4. 경영이양직불 농지 양수자의 연령 분포	66
표 4-5. 경영이양직불 개편(안) 전·후 비교	70
표 4-6. 농가연령별, 농가 고정자산규모 비중(2022년)	81
표 4-7. 농가 영농형태별, 농가 고정자산규모 비중(2022년)	82
표 4-8. 한우농가 규모별 농가 수(2023. 9)	82
표 4-9. 양돈농가 규모별 농가 수(2023.9)	82
표 4-10. 시설재배 농가의 재배면적 현황(2020년)	83
표 4-1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88
표 4-12. 자산규모별 농업법인 수	90
표 4-13. 2022년 기준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 농업법인 수 및 평균 자산	91

제5장	외국의 영농승계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95
표 5-1.	일본의 농업법인화의 장점 내용	112
표 5-2.	일본 농지소유자격법인 요건	114
표 5-3.	프랑스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116
표 5-4.	프랑스 영농법인제도 비교	117
표 5-5.	연도별 프랑스 농업경영체 현황	119
표 5-6.	2020년 기준 농장 규모별 프랑스 농업경영체 현황	120
표 5-7.	일본의 농업경영승계 유형의 구분	123
표 5-8.	일본의 농업법인 영농승계 유형과 특징	127

그림 차례

제2장 영농승계의 필요성과 전망	11
그림 2-1. 2020년 기준 향후 10년간 농가인구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18
그림 2-2. 2020년 기준 향후 10년간 농가인구 연령별 가구 및 인구 구성 변화	18
제3장 영농승계 실태조사 분석과 시사점	39
그림 3-1.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정책 평가	53
제4장 영농승계 활성화 정책 실태와 과제	63
그림 4-1. 연도별 농업법인의 자산규모 변화	91
제5장 외국의 영농승계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95
그림 5-1. 독일의 농지직거래사업 거래구조	100
그림 5-2. 일본의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104
그림 5-3. 특정대부 절차 및 시기	108
그림 5-4. 일본의 농업법인 추이	115

1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구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농업 세대인 40세 이하 청년농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농업성장의 지속가능성 위협
- 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중을 보면, 65세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1990년 18.3%에서 2020년에는 55.9%로 증가
 -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비중은 1990년 14.6%에서 2020년에는 12천 호인 1.2%에 불과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그동안 후계·청년농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후계농육성정책, 경영이양직불제, 신규창업 정착자금 지원정책, 농지지원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농 유입이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가 55.9%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10~15년 이내에 영농에서 은퇴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런 고령농들의 농업기반이 어떻게 농가에게 승계되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결정
- 정부도 농업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창업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농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 청년창업농에게 농지와 시설 확보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5억 원 한도), 청년창업농에 대한 최장 3년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최대 월 110만 원), 청년농 중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등을 추진
 - 은퇴농가의 생활안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영이양직불제의 추진, 은퇴농업인의 농지연금사업 확대 등

2 영농승계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 외국에서도 청년농 육성을 농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 EU의 조기은퇴지원제도(ERS), 영국의 은퇴지원금(LSES), 프랑스의 제3자 경영이양지원제도, 미국의 TIP가 후 영농승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 프랑스의 경영이양지원사업은 기존 농업인이 승계를 목적으로 청년농을 고용하는 경우, 경영이양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 미국의 TIP는 환경보전프로그램인 CRP에 참여했던 농업인이 계약 종료 후 신규 진입농 등의 취약계층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하면 CRP 참여기간 동안 지급했던 월 지급금을 2년 동안 추가로 지급
- 일본의 경우에는 청년농창업 생활자금의 지원만이 아니라 농업의 법인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고용에 의한 창업농 촉진을 유도
- **신규청년창업농 중에서 승계창업농이 영농정착에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바와 같이 청년창업농 육성에서 영농승계 지원 정책은 효과적인 수단**
- 청년창업농 중 승계 창농자가 신규 창농자보다 높은 수입을 얻고 있어 영농승계는 성공적 영농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마상진 외)
 - 청년창업농의 조사결과(이항미, 2023)에 의하면 신규창업농보다 영농승계 창업농이 더 규모화된 상태에서 영농
 - 미래농업세대인 청년창업농을 위해서는 영농승계를 촉진하는 방안의 강구가 효과적인 수단
-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청년창업농 육성정책을 활용하는 정책이 보편적인 수단**
-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영농이양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제3자 승계에는 적합하지만 직계가족에게 경영이양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업승계농 촉진정책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실정
 - 경영이양직불제는 제3자의 승계농 육성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주로 장기임대 중심으로 사업참여가 많아 영농승계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한계가 노출

-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세제 지원인 가업승계(영농) 공제제도가 대표적인 지원정책 수단(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 가업승계공제도 농업생산의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30억 원까지 상향하였지만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사업규모 확대, 규모화 추진, 명목자산가치의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공제규모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업승계 공제 한도를 300~6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가업승계 상속세 특례제도 등 세제지원의 방안도 마련
 - 여기에는 농업중 종묘업 등에 대해서는 자산중 부동산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되지만 일반 농업생산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영농상속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도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
- **고령은퇴농의 영농승계를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실태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 영농승계라는 것은 주로 농업 기반인 농지 및 농업용 자산의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적 측면만이 아니라 미래가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산투자의 의사결정도 고려하여야 하는 과제
 - 지역적 정서와 가족의 합의, 영농기술의 문제 등 다른 사회적, 기술적 요인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
 - 또한, 영농승계에 보다 유리한 농업경영체 형태가 있을 것이므로 경영체 유형의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
 -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농업법인 형태의 경영방식은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면서도 권리관계의 명확화로 승계과정에 유리한 측면
 - 프랑스, 일본 등은 농업의 법인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영농승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
 - 다양한 측면에서 영농승계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제도개선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

- 이 연구는 정책적 효과가 높은 영농승계농 육성을 통하여 청년 창업농의 신규 취농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계농의 실태조사를 통한 승계 현황 분석 및 사례조사, 이로부터 도출된 보다 효과적인 영농승계 촉진 정책의 주요 과제와 해소방 안 등을 모색
- 먼저 영농승계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업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전망, 농지자산의 비중 등의 실태 현황을 분석
- 영농승계 실태조사, 외국의 정책 등을 검토하여 세제지원정책, 직불제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영농기술 전수, 농업경영체 유형 전환, 영농승계 촉진 정보의 제공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

2. 선행연구 검토

- 마상진, 김남훈 논문 : 청년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분석
 - 농촌경제 제42권 제1호 27-49
 - 청년농 중 승계 창업자가 신규 창업자보다 높은 수입을 얻고 있음. 청년농 육성에서 승계 창업이 중요하다는 사실
 - 부모의 경영기반 전수 및 농업 관련 지식 및 기술의 중요
 - 둘째, 창업 준비 자금규모가 청년농의 소득에 영향, 창업 과정에 소요되는 농지 및 축사의 임대, 구매비용, 초기 정착 비용 확보가 중요
 - 영농경력도 중요한 요소
- 주재창(농수산대) : 일본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및 프로그램, KREI 세계농업정보, 해외농업 농정 포커스
 - 일본 신규취업농 형태
 - 일본은 2013년 이후 신규 취업농업인 수가 증가 : 2016년 60,150명
 - 신규가족농 종사자 46,060명, 신규 농업취업인 10,680명, 신규 창업농업인 3,440명
 - 그중 49세 이하 취농 형태별 신규취농인 수(22.1천 명) : 신규 가족농 종사자 11.4천 명, 신규 농업법인 고용자 8.2천명, 신규 창업농인 2.5천 명
 - 청년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분석

- 임소영, 김남훈, 하인혜 :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지원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12.
 - 농업인의 경영 이양에 미치는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분석
 - 농업인의 경영 이양 의사 설문조사 결과, 41.7%만 경영 이양 의사 표시
 - 경영규모와 영농승계자 확보 여부의 상관관계가 높아 전업농가 영농승계 가능성이 높은 수준
 - 경영 이양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 : 정체성 유지, 건강 유지
 - 농업인의 영농 정착 시 애로 요인
 - 경영 자금 확보, 농지확보, 영농기술 습득, 기본생활비 확보, 판매처 확보 등을 애로 요인으로 지적
 - 경영 이양 방식에 대한 조사(이양자)
 - 생존 시 경영권과 소유권 모두 단계적으로 이전을 가장 선호(48.5%), 생존 시 경영권 이전, 사망 시 소유권 이전(14.7%), 생존 시 경영권과 소유권 모두 일시에 이전(13.2%)
 - 승계자가 있는 농업인의 경우 승계자와 갈등을 경험한 비율 43.4%이고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경영주 입장에서는 세대간 의사소통 애로(27.4%), 농가 경영방향에 대한 의견 불일치(25.0%), 승계자의 영농기술 부족(23.8%)
 - 영농승계자 입장에서의 갈등 원인으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방식의 차이 (47.9%), 자향하는 경영방식의 불일치(37.3%), 월급을 받지 못함(11.3%) 등
 - 승계농가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 근무시간, 급여 등의 요구, 경영승계계약서의 강제성 부족으로 효과가 낮은 것, 시설장비 투자 등 영농의사결정의 불일치 발생
 - 은퇴준비 교육의 필요성
 - 조금 필요하다 이상이 72.2%로 중요하고, 은퇴를 위한 재무설계,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
 - 현재 경영이양 관련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 분석 및 외국의 경영이양 지원정책을 검토

-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
 - 경영이양직불제 개선(지불단가의 인상 등),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장기적으로 연금 중심의 노후소득안전망 구축
 - 제3자 경영승계 지원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승계대상 영농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인식차이, 청년참여형 마을영농지원(경북도) 등

□ **임소영 외 : 고령농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22. 12.**

- 기존 경영이양직불제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외국의 경영이양제도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 농가경제조사, 농업총조사 등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자료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해 경영이양직불 현황 분석 및 평가
 - 정량분석의 한계 보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 신청 가능 고령 농업인 대상 집단 면접 조사 실시 및 업무 담당자 대상 면접조사 실시
- 경영이양직불제도의 개편을 통한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경영이양직불제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고령농 사업 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은퇴 유도, 청년농에 대한 보다 많은 농지의 안정적인 공급 필요
 - 대상 연령 상향 조정,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밭과 과수원으로의 확대, 농지 처분의 매도 및 임대, 임대위탁 대상, 지급 규모와 단가 및 기준 조정
- 경영이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제시
 - 농업으로의 진입·진출에 대한 로드맵 구상 및 한계농의 진출 유도 확대
 - 은퇴농 포함 농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 및 은퇴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농지이양직불 사업의 한시적인 운영을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 및 관심도 제고 참여 유도

□ **이상호교수 : 영농 경영승계의 성공적 정착모델 개발(농진청 과제) 2020**

- 개별단위 농가의 성공사례 및 지역연구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후계농업인 정착모델 제시
- 가족경영협약제도 특징 및 유형분석 : 기존 부부 중심에서 승계자와 후계자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특징, 인지도, 애로사항, 장점 (154농가 현장방문조사)

-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83.1%, 그러나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6.2%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
- 경영승계 사례 분석(16농가) : 수도작 2인, 곡류 2인, 특작 및 수도작, 축산 및 수도작, 과수 및 양념채소류 2인, 과수
 - 승계 개황, 경영승계 이전 및 승계 과정, 경영승계 의사결정, 영농활동에 미친 영향, 장애요인, 경영 승계 후 과정에 대한 인식 등
- 일본의 가족경영협약 체결 제도 분석 및 가족경영협약 제도 매뉴얼 개발
 - 경영 방침 및 노동시간, 역할 분담, 노동보수와 수익배분 등으로 구성
- 중소기업 경영승계 지원현황 및 시사점 분석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농가의 특징 및 유형분석
 - 농업계 대학 졸업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영농의향, 기술 수준, 영농기반 확보, 영농 관리 능력, 마케팅 능력, 인맥 형성 등에서 비농업계 대학 졸업자보다 높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제3자 경영승계에 대한 농가 및 대학생의 인식조사 진행(농가 146명 및 농수산 대학 재학생 95명) 및 우수사례 조사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이양자 및 승계자에 대한 정보를 영농승계 상대에게 제공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해주는 영농승계거래소 제안함. 이를 통한 영농승계 의향은 농가 53.6%, 농업계 대학생 58.9%가 '예'라고 응답함.
 - 성공적인 영농승계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정착자금 지원(4.11점), 농지·주택 등 승계 시 세금 감면(4.06점), 농기계 임대 지원(4.00점) 순으로 평가
 -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영농자금 지원(4.09점), 회계·컨설팅 등 서비스 지원(3.94점), 이양자 토지 매입자금 지원(3.93점) 순으로 평가
- 해외 사례 현장 조사
 - 일본 NARO의 추천을 받아 일본 집락영농(요시다팜, 무라키자와 법인, 시라타카 법인)의 운영실태 및 집락영농을 통한 후계농 육성사례 검토

- 청년 후계인력 경영승계 매뉴얼 개발
 - 준비단계(승계에 대한 인식, 수익-배분 기준 마련, 정책 활용)와 진행단계(법인화, 인적 네트워크), 완료단계(독립 가정생활, 지역사회 기여) 순으로 개발
- 손지용 (2020. 12, 축산과학원) : 한우 사육농장 영농승계자의 현황과 성공요인 분석
 - 한우 사육농장의 영농승계자 실태 및 의식 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승계자 확보 및 육성 방안 도출 요구
 - 전국 한우 사육농장 경영주 및 영농승계자 대상으로 법·정책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 영농자금 지원(75.6%),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72.0%), 농지와 주택 등 승계 시 세금 감면(48.5%), 정착자금 지원(42.9%) 순으로 영농승계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34.8%), 모르는 경우(11.2%)가 46%에 달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범위(만 50세 제한) 걱정 여부는 44.6%, 대출한도(3억 원) 걱정 여부는 47.3%, 상환기간(거치5년 상환10년) 걱정 여부는 40.7%, 대출금리(2%)는 66.8%가 '아니오'라고 대답해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음.
 - 특히,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는 몰랐음이 84.0%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영농후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영농 승계 사례 분석을 통한 이양자 및 승계자로서 태도 및 업무 제시, 증여 및 상속 등에 있어서 정책 활용 필요성 강조
 - 가족경영협약 활용, 상담 및 교육지원 한우헬퍼 제도의 활성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상향,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확대, 증여세 감면규정 교육 및 홍보 필요 등 제시
- 영농승계 관련 주요 쟁점 시사점
 - 영농승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농업용 자산의 가치평가에 의한 경영이양을 추진하는 방안이 중요하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장애요인 상존
 - 특히 제3자 승계의 경우 고령농의 농업용 자산을 승계농가에게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 대안모색이 필요, 농지 등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 필요

- 영농승계 공제한도의 획기적 확대 등으로 과도한 지원이 될 경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승계농가의 지속가능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하는 것도 한 방안
- 영농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고령농가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이양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청년농의 승계하는 것을 촉진하는 지원대책을 보다 강화할 것 인지 정책의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
 - 이양농에 대한 지원으로는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 (가칭)경영이양농지연금제도 확대, 영농승계공제 한도의 확대 등의 세제지원도 해당
 - 청년 승계농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활정착자금의 지원,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용 증여제도의 개선 등
- 가족 내 영농승계가 보다 효과적이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한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자문, 정보의 제공 등 기반 구축도 중요한 과제
 -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과 창농과정에서 해소하여야 할 재무, 세제 문제의 컨설팅 자문지원 등
 - 승계과정의 가치관의 차이, 영농투자 의사결정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지원도 필요
 - 이양자와 승계자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중개디지털플랫폼기능도 중요
- 가족경영협약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검토 필요
 - 가업승계 촉진을 위한 과도기적 과제로 가족경영협약제도가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는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면에서는 문제점이 제기
 - 농업경영체의 법인화 촉진 등으로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의사결정권의 배분과정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은 아닌가 검토 필요
- 영농승계과정에 개입되고 있는 지원주체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

2

영농승계의 필요성과 전망

1. 영농승계의 필요성과 승계농 전망

1.1. 영농승계의 필요성

-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농업을 담당하여야 할 청년 후계 세대의 확보와 이들의 농업기반인 농지 등의 농업용 자본축적 증대가 중요한 과제
- 미래후계세대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업적 인력의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이들이 영농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미래 농업을 전업적으로 담당할 청년농업인의 절대적 수와 비중이 감소하고, 전망도 낮아지고 있어 후계세대 확보를 위한 영농승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과제
- 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중을 보면,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비중이 1990년 14.6%에서 2020년에는 12천 호인 1.2%에 불과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음.
 - 그동안 후계·청년농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후계농육성정책, 청년창업농육성, 경영이양직불제, 신규창업 정착자금 지원정책, 농지지원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농 유입이 부족하여 안정적 경영체 유지가 어려운 실정
- 정부도 농업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창업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농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 청년창업농 육성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영농승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

- 청년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신규 창업농 육성도 중요하지만 농업기반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 영농을 승계한 영농승계농의 육성이 보다 효과적인 과제
- 청년창업농이 경영위기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높은 농업소득을 얻느냐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영농승계농이 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승계농 육성이 중요
 - 마상진의 연구에서는 청년농 중 승계 창업자가 신규 창업자보다 높은 수입을 얻고 있어 청년농 육성에서 승계창업이 중요하다고 지적
- 이항미(2023) 연구에서는 청년후계농의 평균 경지면적은 신규창업농보다는 영농승계농이 더 규모화 유지하고 있어 승계농 육성이 중요하다고 지적¹⁾
 - 청년후계농의 평균 경지면적은 승계농 2.658ha, 독립창업농 1.150ha로 승계농이 독립창업농에 비해 1.508ha 큰 규모(통계적 유의수준 1%) 수준
 - 청년후계농 유형별로 임차농지 비중을 살펴보면, 독립창업농의 44.8%, 승계농의 42.2%는 임차를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있어 승계농이 보다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확보

표 2-1. 청년후계농 유형별 평균 경지면적과 그 차이

단위 : ha

구분		독립창업농(N = 480)	승계농(N= 375)	평균 차이
평균 경지면적		1.150	2.658	-1.508***
농지 이용 형태	논	0.620	1.534	-0.914*
	밭	0.224	0.698	-0.474*
	과수	0.127	0.201	-0.074
	시설원예	0.153	0.137	0.016
	축사	0.024	0.087	-0.063***

주 1) '평균차이'는 '평균 비교 검정(t-test)' 분석결과

2) *** p<0.01, ** p<0.05, * p<0.1

자료: 이항미(2023) 설문조사 결과

1) 이항미(2023), 청년농업인의 농지이용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 2022년까지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자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사이트 개설 후 2022년 7월 5일 ~ 9월 20일까지 조사. 총 855명의 청년후계농이 참여(연구 표집율 10.2%).

표 2-2. 농지 매입 경험과 자금 조달 형태(1순위)

단위 : %

구분	독립창업농		승계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지매입 경험 있음	294	61.3	232	61.9	
농지 매입 방법	개인 간 매매	240	81.6	180	77.6
	농지은행	23	7.8	21	9.1
	개인 + 농지은행	30	10.2	30	12.9
	기타(무응답 포함)	1	0.3	1	0.4
농지 매입 자금 조달 형태 (1순위)	정부 지원	181	61.6	122	52.6
	금융기관 대출	41	13.9	25	10.8
	직계가족	18	6.1	37	15.9
	자기자금	34	11.6	26	11.2
	기타(무응답 포함)	20	6.8	22	9.5

자료: 이향미(2023), 설문조사 결과

- 농지 매입 시 자금 조달(1순위)은 대부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 의존도는 승계농(52.6%)에 비해 독립창업농(61.6%)이 높은 비중
 - 독립창업농은 승계농에 비해 농지 매입 시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은 수준
 - 신규창업농의 경우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고, 이는 낮은 경영성과의 원인으로 작용
- 농업기반의 농업경영자가 소유하여 농업고정자본 축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농 승계농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고령농가가 영농은퇴를 하면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농업용 고정자산이 농업부문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
 - 고령농가가 은퇴 및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농업기반이 축소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 고령농의 영농은퇴로 인하여 축적된 농업자산이 상속을 통하여 비농업인으로 이전될 경우 그만큼 농업부문 고정자산 감소로 이어져 농업기반이 축소되는 문제에 직면
 - 상속된 농업고정자산이 농업용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더라도 비농업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만큼 농업부문 비용이 증가
 - 고령농의 사망과 상속으로 인하여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가 증가하고 있고(임차농지 비중 증가 및 경영비 증가), 그만큼 농업의 규모화도 위축되는 결과 발생
 - 농업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다른 농업인이 그런 농업용 자산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그만큼 농업자본의 감소를 가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결과
-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가 5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10~15년 이내에 영농에서 은퇴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
 - 이런 고령농들의 농업기반이 어떻게 농업부문에 승계되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결정
- **농업자산의 농업용으로만 활용되는 자산고정성(Asset Fixity), 비분할성 등으로 승계과정에서 자산가치의 저하가 발생하고, 이는 농업부문 고정자산 축적의 감소로 연계**
- 고령농 은퇴로 인한 비농업인에 대한 농지 상속 등의 비농업인에게 농업자산이 이전되어 매각되면 자산고정성 등으로 인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문제 발생
-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각하게 되면 농지공급이 확대되어 농업용 자산가치의 하락이 발생
 - 농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지만(사례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 이는 부채 증가 요인으로 경영위험으로 연계될 우려가 제기
- 대규모 유리온실, 축사 등은 자산을 분할 할 수 없어서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영농승계 및 상속과정에서 그동안 축적하였던 규모화된 농업기반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
- **결론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기반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승계 활성화가 필요**

1.2. 영농승계 전망

1.2.2. 청년농 육성정책과 영농승계

□ 신규청년농 규모 추정

- 우리나라 청년농업인 현황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농가경영주²⁾ 비중은 1990년 14.6%에서 2010년 2.8%, 2020년 1.2%로 감소한 12,423호 수준이어서 후계세대의 확보가 중요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가인구는 395,183명이고, 이 중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영농인력은 61,209명이고, 비영농인력은 321,614명 수준
 - 20세 미만의 고등학교 등 학업 중인 농가인구가 159,635명에 이르고 있고, 이를 제외한 20세 이상~45세 미만의 농가 인구는 303,306명이고, 이중 영농인력은 86,452명 수준
 - 영농가구주와 영농인력을 합한 20세 이상~45세 미만의 농업 종사인구는 117,544명(농업경영주는 31,092명이고, 영농인력은 86,452명)으로 농업종사자 수의 6.4%에 불과하여, 농업후계세대가 부족한 실정

표 2-3. 2020년 연령별 농가 인구 및 농업인력 현황

단위 : 명, (%)

연령	농가호수(A)		가구원수(B)				농가 인구 (A+B)	
			영농인력		비영농인력 등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세 미만	6	0.00	3,576	0.44	156,053	33.18	159,635	6.90
20~44세	31,092	3.00	86,452	10.69	185,762	39.50	303,306	13.11
45~69세	588,042	56.81	511,576	63.28	72,819	15.48	1,172,437	50.67
70세 이상	415,981	40.19	206,871	25.59	55,647	11.83	678,499	29.32
계	1,035,121	100	808,475	100	470,281	100	2,313,877	100

주: 비영농인력은 영농경험이 없거나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미분류된 가구원임.
자료: 농업총조사(2020)

2) '가구주'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응답자가 가구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경영주'는 농림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농림어업 경영을 총괄하는 가구원 (<https://affcensus.go.kr>).

- 청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20세 이상~45세 미만의 농업인력 중 경영주가 아닌 영농인력 86,633명이 어떻게 경영주로 성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 2020년 기준 영농 가구원³⁾ 수는 808,475명, 비영농 가구원 수는 470,281명이며, 가구주와 가구원 수를 합한 총 농가 인구는 2,313,877명 수준
 - 연령별 농가 인구는 60~69세가 641,740명(27.7%)으로 가장 많으며, 70~79세가 465,557명(20.1%), 50~59세가 422,375명(18.3%), 30대 이하가 291,385명(12.6%), 40~49세가 176,080명(7.6%), 30~39세가 103,798명(6.1%)으로 구성
- 그중 영농인력(가구주와 영농인력을 합한 수)은 7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415,981명이고 영농인력이 206,871명으로 향후 많은 농업인력이 은퇴에 직면
 - 60~69세 농업인력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주가 346,772명이고 영농인력이 273,834명으로 총 620,606명 수준, 45~59세 농업인력은 농업경영주가 241,270명이고, 농업종사인력이 237,742명
 - 20~44세 농업인력은 농업경영주가 60,581명이고, 영농인력은 76,601명으로 농업경영주보다 많은 수이므로 40대 영농인력이 농업경영주로 승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 비영농 가구원 중 20세 미만이 전체 비영농 가구원의 33.2%를 차지하므로, 향후 해당 가구원을 영농승계 대상자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설계 필요
 - 비영농 가구원 중 20세 이하는 156,053명으로 현 고령 농업인과 비교하여 절대적 수는 적으나, 전체 비영농 가구원의 34.4%를 점유
 - 20세 이하 비영농 가구원에는 농가 가구주 및 가구원의 (손)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해당 가족원을 영농 승계자로 육성하는 교육 및 정착 관련 정책 설계가 필요
- 한편, 영농지역이 현재 사는 읍면동인 청년농업 경영주는 59.9%이고, 현재 사는 시군구의 다른 읍면 23.3%, 다른 시군구 16.8%임. 따라서 전체 청년농업 경영주의 40.1%는 영농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거주
 - 이러한 거주지역과 농장과의 차이 변화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조건에서 통작거리(30km 이내)의 조건이 적합한 조건인가에 대해 시사

3) 영농경력이 있는 가구원임.

□ 2030년 농가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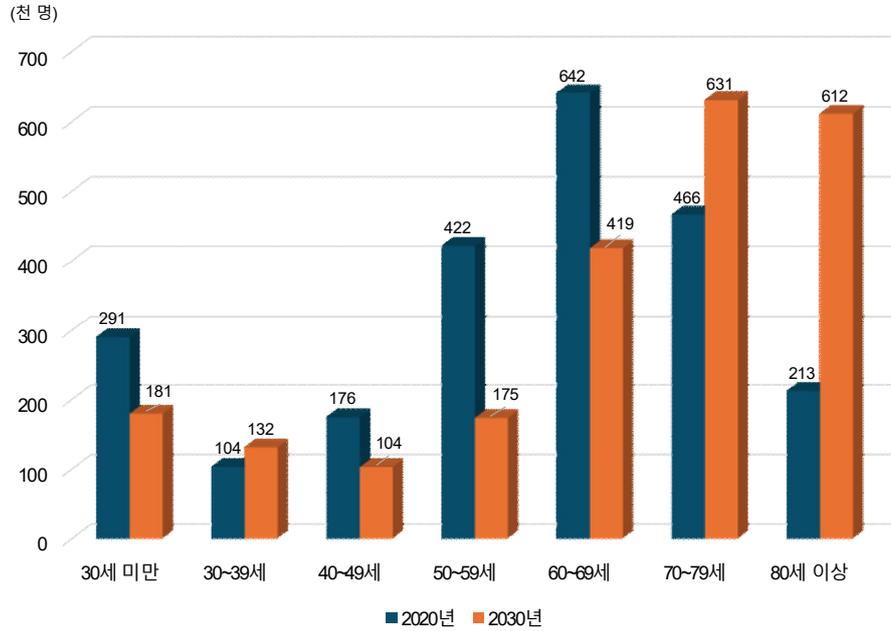
- 2020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0년 후인 2030년 농가 인구 및 구성을 추계
 - 농가 인구는 통계청의 2022년 연령별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 수)을 적용하여 인구 감소를 추계하였으며, 100세 이상 인구는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
 - 출생아 수는 2022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에서 2025년까지는 2025년 출생아 수, 2026년에서 2023년 출생아 수에 2020년 전체 출생아 수 중 0세 농가 가구원 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
 - 귀농, 이농 등의 인구 유출입, 영농인력, 비영농인력, 농가의 가구주의 상호 변화 등은 고려하지 않음.
- 2030년 농가 수는 989,920호, 가구원 중 영농 인력은 784,783명, 비영농인력은 478,380명이며, 총 농가 인구는 2,253,084명으로 예상되며,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수준
 - 농가 수, 가구원 중 영농인력, 비영농인력 등의 농가 인구 수는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태
 - 농업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70세 이상 경영주 농가 수가 2020년 415,981명에서 719,37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영농인력도 206,871명에서 458,860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농업의 고령화가 크게 진행

표 2-4. 2030년 연령별 농가 인구 추계

연령	농가호수(A)		가구원수(B)				농가 인구 (A+B)	
			영농인력		비영농인력 등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세 미만	-	-	-	-	72,418	15.14	72,418	3.21
20~44세	3,810	0.38	41,154	5.24	245,138	51.24	290,102	12.88
45~69세	266,739	26.95	284,768	36.29	96,481	20.17	647,989	28.76
70세 이상	719,370	72.67	458,860	58.47	64,343	13.45	1,242,576	55.15
계	989,919	100.0	784,782	100.0	478,380	100.0	2,253,0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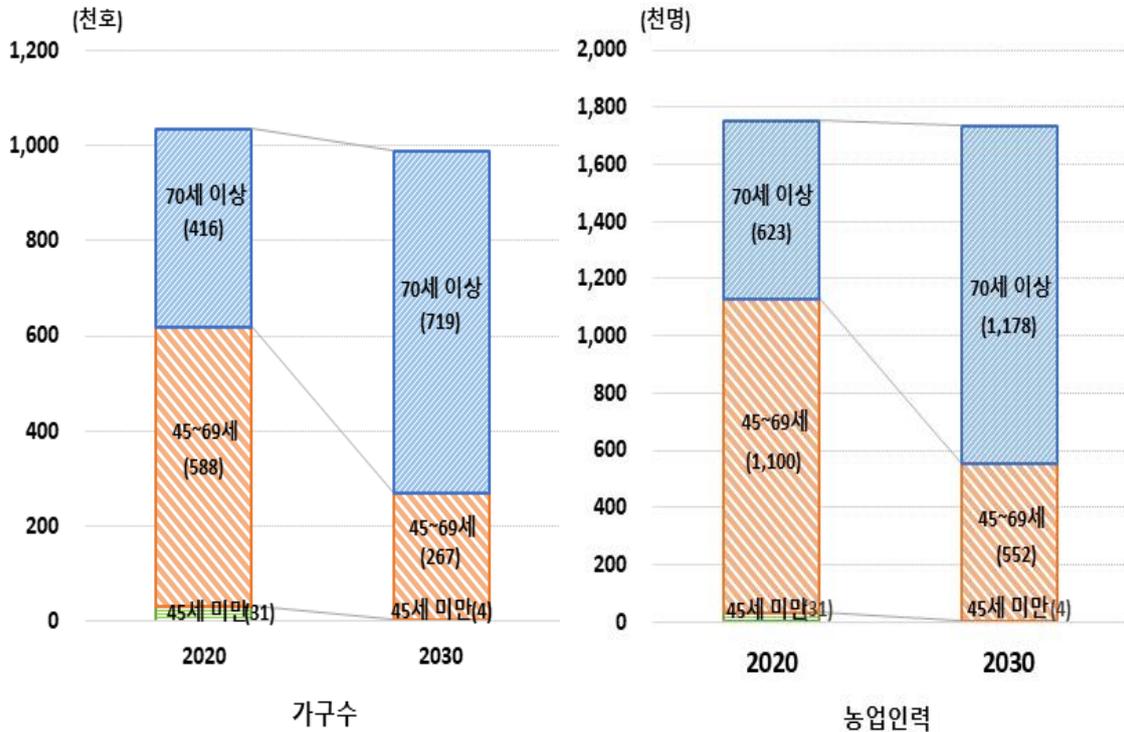
주: 비영농인력은 영농경험이 없거나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미분류된 가구원임.
자료: 농업총조사(2020)

그림 2-1. 2020년 기준 향후 10년간 농가인구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자료: 농업총조사(2020)

그림 2-2. 2020년 기준 향후 10년간 농가인구 연령별 가구 및 인구 구성 변화



자료: 농업총조사(2020)

- 45세 미만의 농업인력은 농가 경영주가 2020년 31,092명에서 3,810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영농종사인력도 86,452명에서 41,154명으로 감소, 총 농업인력(경영주 + 영농인력)은 2020년 117,544명에서 44,964명 수준에 불과하여 후계농업 세대 확보가 시급한 과제
 - 45세 미만의 농업경영주가 크게 감소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농이 여전히 농업을 담당하고 있고, 영농승계 등을 하지 않은 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45~60세 미만의 농업인력을 보면, 농가 경영주는 241,270명에서 68,883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영농종사인력도 273,742명에서 96,296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총 농업인력은 515,012명에서 168,179명으로 크게 감소
- 2020년과 2030년 동안 농가 호수(경영주) 및 영농인력의 수는 60세 미만의 농업인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의 지속가능한 유지가 우려되는 실정
 - 전체적인 농가 호수 및 영농인력 수의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도시지역 은퇴 인력의 귀농귀촌 등으로 70세 이상의 농가 수와 영농인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 반면 60세 미만의 핵심적인 농업인력의 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우려된 수준
- 농업인구 구조의 변화를 볼 때(향후 10년) 농가 및 농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농인력인 가구원의 영농승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한 과제
 - 40세 이하 농가와 농가 인구는 지속해서 정체되거나 감소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경영 승계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승
 - 은퇴와 경영 승계의 지연을 일부 해소하려면 비영농 가구원의 영농 전환, 미성년 가구원을 영농승계자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

표 2-5. 2020년 연령별 농가 인구 현황

단위 : 호, 명

연령	농가 호수(A)		가구원 수(B)				농가 인구(A+B)	
			영농인력		비영농인력 등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세 미만	6	(0.0%)	3,576	(0.4%)	156,053	(33.2%)	159,635	(6.9%)
20세~24세	197	(0.0%)	8,938	(1.1%)	57,005	(12.1%)	66,140	(2.9%)
25세~29세	864	(0.1%)	13,808	(1.7%)	50,938	(10.8%)	65,610	(2.8%)
30세~34세	2,748	(0.3%)	14,875	(1.8%)	32,595	(6.9%)	50,218	(2.2%)
35세~39세	8,545	(0.8%)	20,012	(2.5%)	25,023	(5.3%)	53,580	(2.3%)
40세~44세	18,738	(1.8%)	28,819	(3.6%)	20,201	(4.3%)	67,758	(2.9%)
45세~49세	41,843	(4.0%)	47,782	(5.9%)	18,697	(4.0%)	108,322	(4.7%)
50세~54세	75,976	(7.3%)	75,560	(9.4%)	17,138	(3.6%)	168,674	(7.3%)
55세~59세	123,451	(11.9%)	114,400	(14.2%)	15,850	(3.4%)	253,701	(11.0%)
60세~64세	178,270	(17.2%)	149,234	(18.5%)	12,827	(2.7%)	340,331	(14.7%)
65세~69세	168,502	(16.3%)	124,600	(15.4%)	8,307	(1.8%)	301,409	(13.0%)
70세~74세	158,302	(15.3%)	91,384	(11.3%)	6,720	(1.4%)	256,406	(11.1%)
75세~79세	134,723	(13.0%)	65,288	(8.1%)	9,140	(1.9%)	209,151	(9.0%)
80세~84세	88,954	(8.6%)	36,210	(4.5%)	14,349	(3.1%)	139,513	(6.0%)
85세~89세	29255	(2.8%)	11665	(1.4%)	14,621	(3.1%)	55,541	(2.4%)
90세~94세	4252	(0.4%)	2012	(0.2%)	8,147	(1.7%)	14,411	(0.6%)
95세~99세	451	(0.0%)	276	(0.0%)	2,312	(0.5%)	3,039	(0.1%)
100세 이상	44	(0.0%)	36	(0.0%)	358	(0.1%)	438	(0.0%)
합계	1,035,121	(100.0%)	808,475	(100.0%)	470,281	(100.0%)	2,313,877	100.0%

주: 비영농인력은 영농경험이 없거나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미분류된 가구원임.
 자료: 농업총조사(2020)

표 2-6. 2030년 연령별 농가 인구 추계

단위 : 호, 명

연령	농가 호수(A)		가구원 수(B)				농가 인구(A+B)	
			영농인력		비영농인력 등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세 미만	-	-	-	-	72,418	(15.1%)	72,418	(3.2%)
20~24세	-	-	38	(0.0%)	49,100	(10.3%)	49,138	(2.2%)
25~29세	6	(0.0%)	3,536	(0.5%)	55,641	(11.6%)	59,183	(2.6%)
30~34세	197	(0.0%)	8,931	(1.1%)	56,960	(11.9%)	66,087	(2.9%)
35~39세	863	(0.1%)	13,794	(1.8%)	50,886	(10.6%)	65,544	(2.9%)
40~44세	2744	(0.3%)	14,855	(1.9%)	32,551	(6.8%)	50,150	(2.2%)
45~49세	8529	(0.9%)	19,975	(2.5%)	24,976	(5.2%)	53,480	(2.4%)
50~54세	18686	(1.9%)	28,739	(3.7%)	20,145	(4.2%)	67,571	(3.0%)
55~59세	41668	(4.2%)	47,582	(6.1%)	18,619	(3.9%)	107,869	(4.8%)
60~64세	75506	(7.6%)	75,092	(9.6%)	17,032	(3.6%)	167,630	(7.4%)
65~69세	122350	(12.4%)	113,380	(14.4%)	15,709	(3.3%)	251,439	(11.2%)
70~74세	175911	(17.8%)	147,259	(18.8%)	12,657	(2.6%)	335,828	(14.9%)
75~79세	164936	(16.7%)	121,963	(15.5%)	8,131	(1.7%)	295,029	(13.1%)
80~84세	152130	(15.4%)	87,821	(11.2%)	6,458	(1.3%)	246,410	(10.9%)
85~89세	124692	(12.6%)	60,427	(7.7%)	8,459	(1.8%)	193,579	(8.6%)
90~94세	76750	(7.8%)	31,242	(4.0%)	12,380	(2.6%)	120,373	(5.3%)
95~99세	22276	(2.3%)	8,882	(1.1%)	11,133	(2.3%)	42,292	(1.9%)
100세 이상	2675	(0.3%)	1,266	(0.2%)	5,125	(1.1%)	9,065	(0.4%)
합계	989,920	(100.0%)	784,783	(100.0%)	478,380	(100.0%)	2,253,084	(100.0%)

주: 비영농인력은 영농경험이 없거나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미분류된 가구원임.
 자료: 농업총조사(2020)

2. 영농승계의 개념과 유형

2.1. 영농승계의 개념과 유형

□ 영농승계 개념

- 농업인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미래 농업을 담당할 청년창업농 세대의 확보와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여 선진국에서도 핵심적인 농정과제로 추진
 - 미래세대 청년농을 확보하는 방안은 농업기반이 없는 신규창업 청년농을 육성하는 것과 기존 농가가 자녀 등에게 영농기반을 승계하여 농업에 진입하도록 하는 영농승계농으로 구분이 가능
- 이들의 구분 없이 청년창업농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농지공급 및 농업투자자금을 지원 확대
 -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신규창업농보다 부모의 기존 농업기반을 인수하는 영농승계에 의한 청년창업농이 큰 비중을 점유
 - 미래세대인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는 영농승계가 원활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영농승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추진하는 것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할 때 관련 지원정책의 구체화가 가능하므로 중요한 과제
- 농업경영 승계란 농지나 기계·설비 등과 같은 유형자산과 더불어 경영기술·경영지식·인맥 등 무형자산을 다음 세대에 승계함으로써 농업경영체가 계속 유지·존속해 나가는 것을 의미
 - 농지 등 농업용 고정자산 및 경영기술, 경영지식 및 관련 정보 등을 다음 세대에 이양하여 기존의 농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영농경영상태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경영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 무형자산인 경영방식, 친환경농업 등의 경영원칙 등이 승계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중요한 사항

- 이와 같이 영농승계는 기존의 경영기반을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단순히 창업농이 농지 등 농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농업에 진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
 - 영농승계의 개념과 같은 중소기업에서의 가업상속이 있는 것으로 이는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자산을 상속 및 증여를 한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존재
 - 상속이나 증여에는 승계자가 자금을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기존의 경영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따라서 제3자 영농승계의 경우도 농지의 매입이 아닌 증여 등으로 농업기반이 이전되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
 - 그렇지만 제3자 영농승계는 창업농과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하는 것이 적합
 - 이에 따라 기존 농업고정기반시설의 상당부분(예 1/2 이상)을 승계자에게 이양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 중요
- 영농승계는 적절한 이양자의 조건과 적절한 승계자의 조건이 구비되었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
 - 농업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업고정기반시설의 상당부분(예 1/2 이상)을 승계자에게 이양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실정
- 우리나라에서는 영농승계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와 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영농상속공제를 규정하는 정도
 - 예를 들어 이양자의 자격으로 8년 경작조건, 해당 농지의 지리적 위치(30km)
 - 승계자의 조건 : 영농조건, 비농업활동의 규모 등
 - 그러다 보니 제3자 영농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 영농승계로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영농승계가 농업기반의 유지 및 농업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 영농기반이 일정 부분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외국(일본 등)에서는 농업경영자의 등록, 소득세 신고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

□ 사전 영농승계와 사후 영농승계 차이

- 영농승계를 구분하는 것은 고령농가가 생전에 영농기반을 이양하는 사전 영농승계와 사후에 상속 과정에서 후계 세대가 영농기반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구분
- 사전 영농승계는 부모세대가 농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농업기반을 증여 등의 방법으로 후계세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
 - 사전 영농승계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영농승계가 이루어져 무형의 자산 등도 함께 승계가 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영농승계
- 반면, 사후 영농승계는 고령농이 사망 후에 상속자산인 농업기반을 상속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영농승계
 - 사후 영농승계는 상속자산의 배분에서 상속자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 농업기반이 축소되는 문제도 발생
 - 사후에 영농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상속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의 하나가 되고, 영농기반, 지식의 공유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차이가 발생
- 사전 영농승계는 고령농가가 영농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 체계적이고, 계획을 가지고 승계과정을 선택하는 것이어서 보다 효과적인 영농승계 절차
 - 영농승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적 영농승계인 사전 영농승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
 - 고령농이 사전 영농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농능력을 상실하여도(병원에 입원한 경우) 농업기반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어서 농업자산의 관리가 떨어지고, 적기에 농업투자도 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
- 그렇지만 사전 영농승계를 위해서는 증여에 의한 영농자산의 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제상의 조건은 이를 활성화할 수 없는 실태
 - 상속에 의한 영농상속공제 수준은 높지만 사전 영농증여 공제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대상범위도 농지에 한정된 실정
- 그에 따라 대부분의 영농승계는 사후 상속에 의한 승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전 농업자산의 증여에 의한 영농상속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영농승계가 비효율적으로 실현
 - 일부 영농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업기반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안정적인 영농 정착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

□ 농업경영 승계 유형

- 영농승계 대상에 따라 영농승계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는 직계가족간의 승계가 있고, 비직계가족에 대한 승계인 제3자 영농승계로 구분
 - 제3자 영농승계에는 사위, 며느리 등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영농증여(증여는 가능)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각에 의한 제3자인 타인에 대한 영농승계와 동일한 상태
 - 최근 1인 자녀가 많아지면서 직계가족이 아닌 사위, 며느리 등이 영농주체가 되어 농지를 이양하는 영농승계가 많이 발생
 - 제3자 영농승계에 대해서는 영농상속이 없다는 점에서 경영이양과 동일한 것이고, 매매거래에 의해서 영농승계가 가능
- 다음으로 승계방식에서 가족농 형태로 승계하는 것과 농업법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법인을 통한 영농승계로 구분이 가능
 - 가족간의 영농승계에서도 가족농 상태의 영농승계만이 아니라 농업법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법인을 통한 승계도 가능
 - 농업법인에 의한 영농승계는 제3자 영농승계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분의 이전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용 자산의 매각을 통한 제3자 영농승계와 차이
-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승계는 직계가족이 아닌 계속 근무한 직원 등에게 지분을 매각, 양도하는 것은 농업법인의 경영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농승계의 올바른 모습으로 평가
 -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반 자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농업발전에 효과적인 승계수단
 - 농업법인에서의 승계는 기존 지분의 승계도 가능하고, 지분을 소유하면서도 경영권만 승계하는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령농가에게도 효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 즉 고령농가의 노후소득 획득을 위해서는 지분을 계속 유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
-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승계가 보다 탄력적인 점을 가지고 있고, 제3자 영농승계에도 효율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제3자 영농승계와 신규취농의 차이점

- 신규창업농 육성을 위하여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맞춤형 농지구입 지원 등 경영이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제3자 영농승계와 경영이양은 구분이 모호한 실정
 -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경영이양정책도 제3자 영농승계 지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
- 가족농의 영농승계에서 가장 구분이 모호한 것이 제3자 영농승계
 -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법인의 경영자로 승계하는 등의 방법이 적용 되기 때문에 경영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영농승계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
 - 그런데 가족농의 경우 제3자 영농승계에 증여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결국은 농업기반 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므로 승계로 보아야 하는 기는 차이가 발생
- 가족농의 제3자 영농승계의 경우 대상자가 좀더 특정적이고, 기존 농업기반 자산의 일정(예 : 1/2)부분까지 매각하고, 그래서 기존 농업경영기반을 유지한다면 엄격한 의미의 영농승계로 보는 것은 가능
 - 농업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농업기반이 유지되고, 기존의 영농규모가 승계 이후 일정부분 계속 경영된다는 점에서 매각에 통한 제3자 영농승계가 실현 가능
 - 매각에 의한 경영이양의 경우 대상자가 매우 불특정적이고, 농업기반의 활용방식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농승계와 차별은 가능
- 그러나 가족농의 제3자 영농승계는 적격 승계자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선정되더라도 승계농이 승계에 필요한 자금조달능력의 부족 등으로 쉽게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
 - 매입이 아닌 장기 임대방식으로 일정부분 농지를 승계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도 제3자 승계로 보는 것도 가능
-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농의 제3자 영농승계는 신규창업농과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곤란
 - 신규취농의 농지자산 매입 등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입하지 않고, 다수에 걸쳐 부분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이양자의 농업자산의 아주 적은 일부분만 취득한다는 점에서 영농승계와는 구분이 가능
- 농정에서는 신규취농의 지원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제3자 영농승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청년창업 신규취농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
- 따라서 제3자 영농승계는 농업법인을 통한 승계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일정한 조건 이상의 농업기반 매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적함

2.2. 일본의 영농승계의 개념과 유형

□ 영농경영승계에 대한 개념

- 일본 농정에서는 경영이양의 대상자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별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은퇴)’로 설정
 - 농지, 채초방목지 또는 특정 농업용시설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에 근거해 농업을 영위하는 자 : 농지 및 특정 농업용시설의 전부에 대해 적절한 제3자 또는 후계자에 대해 권리이전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으로부터 은퇴하여야 함.
 - 일반농업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는 처분도 필요 : 단 제3자에게 경영승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소유지로 인정
 - 농지 등의 권리를 갖지 않고 일반농업생산시설만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에 근거해 농업을 영위하는 자는 일반농업생산시설의 권리이전 또는 그 시설에 대해 공용(供用) 폐지, 용도변경 등의 처분을 하여 농업경영으로부터 은퇴
 - 가족경영협정에 의해 경영에는 배우자, 후계자가 참여한 경우 : 가족경영협정서에 열거하는 약정 중 경영 관련 부분의 협정을 파기하거나 또는 경영관련 부분에서 제외하도록 협정을 명확화하는 등 농업경영으로부터 은퇴한 경우
 - 법인구성원 : 법인의 상시 종사자인 구성원이 아니어야 하는 조건
- 이런 개념설정은 상속보다는 영농증여 등 사전 경영이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존재
- 경영승계 과정에서 농지 및 농업용시설의 양수는 다음의 대상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로 설정
 - 농지 및 특정 농업용시설 승계 경우 : 60세 미만의 농업경영자, 60세 미만의 신규취농자로 통산 3년 또는 최근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농지중간관리기구,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JA, 농협연합체(農協連), 농사조합법인 지방공공단체 등 제3자)(복수로 적용 가능),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1인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통산 3년 또는 최근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후계자
 - 일반농업생산시설 승계자 요건 :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만 적용

- 경영이양 농업인은 소유지, 임차지(借地) 등 본인 명의의 농지 및 농업생산시설의 전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하여야 하는 조건.
 - 소유지 및 소유시설은 경영승계의 상대방이 양도하거나(소유권의 이전) 또는 임대(사용수익권만 설정).
 - 차입지 및 차입시설은 경영승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이전 또는 전대하든가, 임대자(貸主)에게 반환(사용수익권의 소멸).
 - 기준일 후 1개월 이내에 토지수용법의 수용이 있던 경우 등은 적격한 경영 승계로 간주
- 경영승계는 단지 농지 등의 권리명의를 변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익권 등 실체를 동반
- 농업인은 승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농업경영주 지위를 이전
 - 후계자에게 경영승계 한 경우 :
 - ① 농업경영을 주재하는 것과 손익의 귀속처를 후계자에게로 이전할 것
 - ② 후계자가 원칙적으로 중요한 농작업을 담당할 것
 - ③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공제, 경영소득안정대책 등 보조금, 농업소득에 관련된 납세신고 등 세 가지의 명의를 후계자로 변경할 것
 - 제3자에게 경영승계 한 경우 :
 - ① 농지 등의 권리의 이전 설정계약의 완전 이행이 확보될 것
 - ② 대외적으로 경영승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지 및 시설 등에 관련하여 농업공제의 가입 명의, 경영소득안정대책등 보조금의 신청 명의를 수급권자가 갖고 있지 않을 것
-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승계를 확인
 - 경영승계 시 경영이양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서류와 함께 농업위원회에 제출
 - 현황계 제출 시 현황계 제출 시에 소유지의 범위를 초과한 농지의 취득이 없다는 것과 본인 명의가 변경된 상태로 경영승계한 자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자기 체크

□ 일본의 영농경영승계 유형

- 일본은 영농승계를 가족승계와 농업법인을 통한 승계로 구분
 - 농업법인 승계에서는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직계가족인 자녀 등의 종업원과 친족이 아닌 종업원을 통한 승계, 그리고 제3자에게 자산을 매각하여 승계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
 - 제3자 승계에 대해서는 경영이념, 사업방향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단점을 지적
- 가족농에서 가족 내 승계의 경우에는 후계자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능력과 의욕을 가진 승계가 없어 영농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후계자 결정 및 농업용 자산의 집적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
- 농업법인(농사법인 및 회사법인)을 통한 영농승계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친족이 농업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를 후계자로 선정하여 영농이양을 하는 경우, 비교적 영농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장점
 - 친족이 없는 경우 고용 직원을 후계자로 설정하여 영농이양을 하는 경우, 농업경영방식 등의 유지가 용이하고, 후계자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후계자가 농업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자금력이 부족할 단점도 존재
 - 마지막으로 농업법인 내 적격 후계자가 없는 경우 외부에서 제3자 영농승계자를 찾아 승계하는 경우로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은 있지만 농업경영이 올바르게 이 전되기는 어려운 단점도 상존

표 2-7. 일본의 농업경영승계 유형의 구분

유형	장점	단점
가족 내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자로부터 심정적으로 수용 용이 - 후계자를 조기에 결정하여 장기간 경영이양 준비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내에 경영 능력과 의욕이 있는 후계자 부재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후계자 결정이나 사업용 자산 등의 집중이 곤란 - 후계자 본인의 의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종업원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내 후계자 후보가 없는 경우에도 후계자 확보가 용이 - 업무에 정통하기 때문에 다른 종업원 등의 이해를 얻는 것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내 승계와 비교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 후계자가 주식 취득 등의 자금력이 부족 - 후계자로서 조직 내에서 계획적으로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
제3자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넓게 후계자 후보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 - 현재 경영자가 사업(지분)을 매각하여 이익을 획득하여 노후소득 확보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조건(후계자의 경영이념, 종업원의 계속 고용, 매각 가격 등)을 충족시키는 후계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 - 후계자를 확보해도 이해당사자의 이해나 협력 등을 얻지 못해 후계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승계 완료까지 확실하게 경영을 지원할 필요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3. 은퇴농지 공급 및 잠재승계자 전망

□ 농지 소유 현황

- 2020년 총조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 호수는 1,035,121호이며, 전체 농가 중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는 584,483호로 전체의 56.5% 수준
 - 은퇴 직전에 있는 75세 이상 가구주 농가는 257,679호로 전체의 24.9%이고, 85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34,002호로 전체의 3.28%
 - 40세 미만 가구주 농가는 12,360호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며, 49세 이하 가구주 농가도 전체의 7.0%에 불과한 상황

표 2-8. 연령별 농업인 농지 소유 현황

단위 : 호, ha

연령	농가 호수		면적			
		비율	논 면적	밭 면적	논밭 합계 (비율)	
40세 미만	12,360	1.2%	4,905	8,598	13,503	1.5%
40세~44세	18,738	1.8%	6,729	10,452	17,181	1.9%
45세~49세	41,843	4.0%	14,217	22,274	36,491	4.0%
50세~54세	75,976	7.3%	24,729	39,304	64,033	7.0%
55세~59세	123,451	11.9%	43,570	72,014	115,584	12.5%
60세~64세	178,270	17.2%	68,373	108,430	176,803	19.2%
65세~69세	168,502	16.3%	63,346	93,498	156,844	17.0%
70세~74세	158,302	15.3%	60,300	80,384	140,684	15.3%
75세~79세	134,723	13.0%	49,258	59,215	108,473	11.8%
80세~84세	88,954	8.6%	30,793	35,374	66,167	7.2%
85세 이상	34,002	3.3%	11,920	13,443	25,363	2.8%
합계	1,035,121	100.0%	378,140	542,985	921,125	100.0%

자료: 농업총조사(2020)

-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논과 밭 면적은 각각 논밭 면적은 378,140ha와 542,985ha
 - 이 중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논 면적은 215,617ha로 전체 면적의 57.0%, 밭 면적은 281,914ha로 전체 면적의 51.9% 수준
 - 영농은퇴 직전에 있는 7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논, 밭, 시설 온실 면적은 각각 91,971ha, 108,032ha, 3,673ha이고, 이들이 전체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논이 24.3%, 밭이 19.9%, 시설 온실이 8.6%
 - 고령 농업인은 일반적으로 논 소유가 높은 수준
- 40세 미만 가구주 가구가 소유한 논 면적은 4,905ha, 밭 면적은 8,598ha로 전체의 1.2%와 1.6%에 불과하며, 50세 미만으로 넓혀도 전체 논 면적의 6.8%, 밭 면적의 7.6%에 불과한 실정
 - 40세 미만의 농가 비중이 1.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소유 농지도 비슷한 비중인 1.5% 비중을 보이고 있어, 이들에게로 농지 이전이 중요한 과제

□ 은퇴농 농지 공급 예측

- 75세 이상 농가가 은퇴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고령농의 은퇴에 따라 향후 10년간 논 118,562ha와 밭 167,834ha가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표 2-9 참조)
 - 이는 전체 농가 소유 논 면적 378,140의 31.3%에 이르고, 밭 면적도 30.9%에 이를 전망되어 이 농지가 어떻게 영농승계되느냐에 따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결정(표 2-8 참조)
- 65세 은퇴를 기준으로 하면 향후 10년간 논 104,964ha, 밭 172,083ha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 고령농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은퇴농으로 은퇴농지 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60세~69세 가구주 농가의 논밭 소유가 많아 은퇴 시기를 언제로 설정하고, 은퇴 시기를 늦출수록 시장에 공급되는 은퇴농의 농지는 지연 공급될 것으로 전망
- 현재 60~69세 농가의 농지 소유가 많아 해당 연령대의 농업인 은퇴 시기에 따라 농지공급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추정
 - 영농은퇴에 따라 공급되는 농지가 농업 미래세대인 영농승계자에게 원활한 이전 여부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표 2-9. 향후 10년간 영농은퇴 농업인의 농지 공급 예측

단위 : ha, %

연도	65세 은퇴 기준				75세 은퇴 기준			
	은퇴 농업인	공급 면적			은퇴 농업인	공급면적		
		논면적	밭면적	논밭합계		논면적	밭면적	논밭합계
2024	34,301	12,719	19,868	32,588	32,546	9,509	12,180	21,688
2025	34,531	13,805	21,604	35,409	33,288	12,426	16,280	28,707
2026	37,112	13,264	20,954	34,218	33,893	12,030	16,119	28,149
2027	35,792	12,384	20,603	32,988	25,812	12,316	16,488	28,805
2028	37,365	12,686	21,086	33,773	24,772	11,719	16,555	28,274
2029	34,021	10,758	18,309	29,067	25,364	10,964	15,208	26,172
2030	31,191	8,876	14,947	23,823	25,541	12,608	18,393	31,001
2031	36,403	7,395	12,152	19,547	31,475	11,099	16,862	27,960
2032	28,702	6,645	11,369	18,014	26,135	12,543	19,366	31,909
2033	31,753	6,430	11,190	17,620	21,676	13,348	20,382	33,731
합계	341,171	104,964	172,083	277,046	280,577	118,562	167,834	286,396

주: 65세와 75세 영농 은퇴 기준으로 예측함.
 자료: 농업총조사(2020)

□ 잠재 영농승계자 추계

- 2020년 농업총조사의 65세 이상 농가의 가구주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 형제자매, 친척, 기타 동거인 수, 나이, 농업 종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고령농가의 잠재 승계자 현황을 추산
 - 가구원은 미혼자녀,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 손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가구주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분석
 - 각 가구원은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농업 종사(종사 기간 6개월 미만)와 농업 비종사로 구분
 - 잠재 영농승계자인 40세, 50세 미만의 가구원으로 보면, 가구원 중 청년 농업인 기준인 40세 미만 가구가 적어 49,696명에 불과하고, 50대 미만까지 확대하여 보면, 잠재 승계자는 96,665명

표 2-10. 향후 10년간 영농 은퇴 농업인 잠재 승계자 추계

단위 : 명, %

연도	65세 기준				75세 기준			
	은퇴 농업인	잠재 승계자			은퇴 농업인	잠재 승계자		
		영농	비영농	없음		영농	비영농	없음
2024	34,301	2,981 (8.7%)	9,653 (28.1%)	21,667 (63.2%)	32,546	2,319 (7.1%)	3,422 (10.5%)	86,805 (82.4%)
2025	34,531	2,951 (8.5%)	8,210 (23.8%)	23,370 (67.7%)	33,288	2,580 (7.8%)	3,450 (10.4%)	27,258 (81.9%)
2026	37,112	3,013 (8.1%)	7,827 (21.1%)	26,272 (70.8%)	33,893	2,400 (7.1%)	3,472 (10.2%)	28,021 (82.7%)
2027	35,792	2,815 (7.9%)	6,570 (18.4%)	26,407 (73.8%)	25,812	1,925 (7.5%)	2,550 (9.9%)	21,337 (82.7%)
2028	37,365	2,786 (7.5%)	6,049 (16.2%)	28,530 (76.4%)	24,772	1,791 (7.2%)	2,361 (9.5%)	20,620 (83.2%)
2029	34,021	2,610 (7.7%)	5,017 (14.7%)	26,394 (77.6%)	25,364	1,750 (6.9%)	2,243 (8.8%)	21,371 (84.3%)
2030	31,191	2,366 (7.6%)	4,216 (13.5%)	24,609 (78.9%)	25,541	1,720 (6.7%)	2,265 (8.9%)	21,556 (84.4%)
2031	36,403	2,725 (7.5%)	4,637 (12.7%)	29,041 (79.8%)	31,475	1,867 (5.9%)	2,429 (7.7%)	27,179 (86.4%)
2032	28,702	2,099 (7.3%)	3,374 (11.8%)	23,229 (80.9%)	26,135	1,472 (5.6%)	1,782 (6.8%)	22,881 (87.5%)
2033	31,753	2,378 (7.5%)	3,631 (11.4%)	25,744 (81.1%)	21,676	1,158 (5.3%)	1,523 (7.0%)	18,995 (87.6%)
합계	341,171	26,724 (7.8%)	59,184 (17.3%)	255,263 (74.8%)	340,502	18,982 (5.6%)	25,497 (7.5%)	236,023 (69.3%)

주: 65세와 75세 영농은퇴 기준. 영농, 비영농 관계없이 50세 미만 승계자를 대상으로 팔호는 전체 은퇴 농업인 중 차지하는 비율

자료: 농업총조사(2020)

- 75세 은퇴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340,502명의 고령농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잠재 승계자는 44,479명(영농 18,982명, 비영농 25,497명)으로 은퇴 고령 농가의 13.1%에 불과하여 영농후계세대 확보가 위험한 수준(〈표 2-10〉)
- 65세 은퇴를 가정하게 되면, 향후 10년간 341,171명이 은퇴하는데, 잠재 승계자는 85,908명(영농 26,725명, 비영농 59,184명)으로 은퇴 고령농가의 25.2% 수준에 불과

□ 은퇴 농지 잠재 승계 농지 면적 추계

- 75세 은퇴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논 104,303ha가 은퇴 농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잠재 논 승계는 영농 승계자에게 9,407ha, 비영농 승계자에게 8,079ha로 전체의 16.7%에 불과
- 65세 은퇴를 가정해도 향후 10년간 130,116ha의 논이 공급되는데, 잠재 논 승계는 영농승계자에게 12,999ha, 비영농승계자에게 18,333ha가 승계되어 전체의 24.1% 수준

표 2-11. 향후 10년간 은퇴 농업인의 논 잠재승계 면적 추계

단위 : ha, %

연도	65세 기준				75세 기준			
	은퇴 농지	잠재 승계 농지			은퇴 농지	잠재 승계 농지		
		영농	비영농	승계자 없음		영농	비영농	승계자 없음
2024	13,039	1,389 (10.7%)	2,836 (21.8%)	8,814 (67.6%)	12,752	1,111 (8.7%)	1,059 (8.3%)	10,582 (83.0%)
2025	13,885	1,636 (11.8%)	2,747 (19.8%)	9,502 (68.4%)	12,443	1,306 (10.5%)	1,005 (8.1%)	10,132 (81.4%)
2026	14,525	1,391 (9.6%)	2,605 (17.9%)	10,529 (72.5%)	12,847	1,160 (9.0%)	1,074 (8.4%)	10,613 (82.6%)
2027	13,299	1,353 (10.2%)	1,985 (14.9%)	9,961 (74.9%)	9,855	1,044 (10.6%)	743 (7.5%)	8,068 (81.9%)
2028	13,941	1,194 (8.6%)	1,831 (13.1%)	10,916 (78.3%)	9,097	888 (9.8%)	751 (8.3%)	7,458 (82.0%)
2029	13,051	1,355 (10.4%)	1,551 (11.9%)	10,145 (77.7%)	9,236	822 (8.9%)	694 (7.5%)	7,720 (83.6%)
2030	11,552	1,165 (10.1%)	1,224 (10.6%)	9,163 (79.3%)	9,397	816 (8.7%)	742 (7.9%)	7,839 (83.4%)
2031	13,228	1,273 (9.6%)	1,353 (10.2%)	10,602 (80.1%)	11,628	892 (7.7%)	797 (6.9%)	9,939 (85.5%)
2032	11,425	1,109 (9.7%)	1,066 (9.3%)	9,250 (81.0%)	9,456	769 (8.1%)	708 (7.5%)	7,979 (84.4%)
2033	12,171	1,134 (9.3%)	1,135 (9.3%)	9,902 (81.4%)	7,592	599 (7.9%)	506 (6.7%)	6,487 (85.4%)
합계	130,116	12,999 (10.0%)	18,333 (14.1%)	98,784 (75.9%)	104,303	9,407 (9.0%)	8,079 (7.7%)	86,817 (83.2%)

주: 65세와 75세 영농 은퇴 기준임. 영농, 비영농 관계없이 50세 미만 승계자를 대상으로 함. 괄호는 전체 은퇴 농지(논) 중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농업총조사(2020)

표 2-12. 향후 10년간 은퇴 농업인의 밭 잠재승계 면적 추계

단위 : ha, %

연도	65세 기준				75세 기준			
	은퇴 농지	잠재 승계자			은퇴 농지	잠재 승계자		
		영농	비영농	승계자 없음		영농	비영농	승계자 없음
2024	14,616	1,593 (10.9%)	3,200 (21.9%)	9,823 (67.2%)	11,035	986 (8.9%)	969 (8.8%)	9080 (82.3%)
2025	14,379	1,694 (11.8%)	2,884 (20.1%)	9,801 (68.2%)	11,141	1205 (10.8%)	947 (8.5%)	8989 (80.7%)
2026	15,087	1,608 (10.7%)	2,648 (17.6%)	10,831 (71.8%)	10,875	1094 (10.1%)	954 (8.8%)	8827 (81.2%)
2027	13,957	1,347 (9.7%)	2,096 (15.0%)	10,514 (75.3%)	8,147	915 (11.2%)	674 (8.3%)	6558 (80.5%)
2028	14,441	1,459 (10.1%)	2,105 (14.6%)	10,877 (75.3%)	7,577	820 (10.8%)	642 (8.5%)	6115 (80.7%)
2029	12,828	1,409 (11.0%)	1,582 (12.3%)	9,837 (76.7%)	7,555	762 (10.1%)	601 (8.0%)	6192 (82.0%)
2030	11,723	1,268 (10.8%)	1,313 (11.2%)	9,142 (78.0%)	7,181	723 (10.1%)	594 (8.3%)	5864 (81.7%)
2031	13,270	1,400 (10.6%)	1,483 (11.2%)	10,387 (78.3%)	8,650	278 (3.2%)	724 (8.4%)	7648 (88.4%)
2032	10,170	1,070 (10.5%)	1,215 (11.9%)	7,885 (77.5%)	6,977	614 (8.8%)	502 (7.2%)	5861 (84.0%)
2033	10,786	1,107 (10.3%)	1,206 (11.2%)	8,473 (78.6%)	5,689	448 (7.9%)	407 (7.2%)	4834 (85.0%)
합계	131,257	13,955 (10.6%)	19,732 (15.0%)	97,570 (74.3%)	84,827	7845 (9.2%)	7014 (8.3%)	69968 (82.5%)

주: 65세와 75세 영농 은퇴 기준임. 영농, 비영농 관계없이 50세 미만 승계자를 대상으로 함. 괄호는 전체 은퇴 농지(밭) 중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농업총조사(2020)

- 밭은 75세 은퇴 기준 10년간 약 69,968ha가 공급되고 영농 승계자에게 9,407ha, 비영농 승계자에게 8,079ha가 승계되어 승계 농지가 전체의 17.5%에 불과(표 2-12)
 - 65세 기준으로도 10년간 약 98,784ha의 밭이 시장에 공급되며 영농승계자에게 13,955ha, 비영농 승계자에게 19,732ha가 승계되어 전체의 25.6% 수준
- 고령농 은퇴로 공급되는 농지의 70~80%의 농지가 잠재 승계자에게 승계되지 않아, 제3자 승계, 농지 규모화 등을 통한 은퇴 농지 승계 지원 필요
 - 승계후계농이 없는 농지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및 농지 매매를 위한 중개 시스템 필요

- 고령농의 은퇴로부터 공급되는 농지의 90%가 비영농 잠재 승계자 또는 승계자가 없어, 제3자 승계의 증가, 농지 규모화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영농 승계 정책이 필요
 - 비영농 승계자의 농지 승계 이후 매도, 제3자 승계자의 영농 승계 등으로 원활한 승계와 농업 경영을 위한 정책 수요 증대 전망

□ 잠재 영농 승계자 현황

- 2020년도 40세 미만 잠재 승계자는 농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49,696명으로 전체 은퇴 고령농가의 8.6%이며, 승계연령이 50세 미만은 96,665명으로 전체 은퇴고령농가의 16.7% 수준(〈표 2-11〉)
 - 40대 미만 손자녀가 12,812명으로 전체의 25.8%, 50대 미만에서는 12,870명인 13.3%를 차지하여 장기적으로 고령 농가의 동거 손자녀가 영농을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경제적 지원, 거주지의 정주 만족도 향상 등의 정책 필요
 - 부족한 영농 승계자를 발굴하고자 동거가족 외에 비동거 가족 인력이 영농을 승계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

표 2-13. 고령 농가의 잠재 승계자 현황

단위: 명

구분	40대 미만			50대 미만		
	농업 종사	농업 미종사	합계	농업 종사	농업 미종사	합계
미혼자녀	8,309 (62.2%)	19,324 (53.1%)	27,633 (55.6%)	21,496 (56.0%)	32,626 (56.0%)	54,122 (56.0%)
기혼 자녀 등	3,648 (27.3%)	4,808 (13.2%)	8,456 (17.0%)	15,199 (39.6%)	13,146 (22.6%)	28,345 (29.3%)
손자·녀 등	1,128 (8.4%)	11,684 (32.1%)	12,812 (25.8%)	1,160 (3.0%)	11,710 (20.1%)	12,870 (13.3%)
형제자매 등	14 (0.1%)	18 (0.0%)	32 (0.1%)	75 (0.2%)	81 (0.1%)	156 (0.2%)
기타 친인척	79 (0.6%)	376 (1.0%)	455 (0.9%)	193 (0.5%)	494 (0.8%)	687 (0.7%)
기타 동거인	145 (1.1%)	163 (0.4%)	308 (0.6%)	246 (0.6%)	239 (0.4%)	485 (0.5%)
합계	13,363	36,373	49,696	38,369	58,296	96,665

주: 괄호는 전체 잠재 승계자 수 대비 비율임. 16세 미만 가구원은 제외함.
 자료: 통계청(2020)「농업총조사」

- 품목별 잠재 승계자 현황에 따르면(〈표 2-14〉) 품목별 농업 소득과 수익률 등에 따라 잠재 승계자 수에 편차 존재
 - 작물과 과수의 40대 미만 잠재 승계자 수는 각각 47,666명과 8,116명으로 해당 품목 전체 고령 농업인 대비 8.0%와 9.5%이며, 50대 미만 잠재 승계자 가 전체 해당 품목 고령 농업인의 26.6%와 35.7% 수준
 - 축산과 가공 등 기타의 40대 미만 잠재 승계자 수는 각각 2,761명과 354명으로 해당 품목 전체 고령 농업인의 14.8%와 34.7%이며, 50대 미만 잠재 승계자가 전체 해당 품목 고령 농업인의 59.0%와 106.8%를 차지
 - 향후 농업 수입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작물 재배 부문 영농 승계자를 발굴 하고 지원하는 정책 필요

표 2-14. 품목별·연령별 잠재 승계자 현황

단위: 명

품목	고령 농업인	40세 미만 가구원			50세 미만 가구원		
		농업 종사	농업 비종사	합계	농업 종사	농업 비종사	합계
작물	490,638	10,085	29,320	47,666 (8.0%)	29,674	47,767	130,487 (26.6%)
과수	65,300	1,910	4,313	8,116 (9.5%)	5,134	6,645	23,312 (35.7%)
축산	10,891	737	875	2,761 (14.8%)	1,467	1,234	6,427 (59.0%)
육림	652	26	60	104 (13.2%)	63	92	293 (44.9%)
임산	9,002	224	480	1,009 (7.8%)	539	774	3,070 (34.1%)
기타	855	37	260	354 (34.7%)	399	77	913 (106.8%)
전체	577,338	13,059	35,308	48,327 (8.4%)	37,326	56,589	93865 (28.5%)

주: 괄호는 전체 잠재 승계자 수 대비 비율임. 농업 미종사 고령 가구주의 가구원은 제외함.
 자료: 통계청(2020)「농업총조사」

- 가구 내 영농승계인력의 부족을 제3자 영농승계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법인화 등 보다 영농승계에 유리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것을 의미
 - 고령 농업인의 은퇴에 따른 경영 승계자 부족을 해결하려면 농가 내 영농 승계자 대상 정책과 함께 비영농 잠재 승계자의 농지 매도 및 영농 활동 전환을 위한 정책과 제3자 승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위한 정책 수요 증대에 대비 필요

3

영농승계의 실태조사 분석과 시사점

1. 조사 개요

- 영농승계 실태와 관련사항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고자 영농승계 경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정형화된 영농승계조사표를 모바일로 발송한 후에 200명의 결과를 회신⁴⁾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 모집단의 편향성이 있어 전체 청년농의 평균적인 실태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
 - 설문조사표는 크게 영농승계 현황, 현행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
- 청년농 영농종사자 일반현황
 - 청년농의 일반현황
 - 주요소득작목은 채소·과수·특용작목이 82명(41.0%), 축산 57명(28.5%), 식량작물 42명(21.0%), 유통·가공·체험 등 19명(9.5%)의 순으로 응답
 - 성별은 남성이 152명(76.0%), 여성이 48명(24.0%)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116명(58.0%), 30대가 69명(34.5%)으로 대다수를 차지
 - 부모님의 연령은 50대가 100명(50.0%)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60대가 82명(41.0%)으로 조사

4) 조사표 부록, 설문조사는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23년 10월 11일에서 30일까지 20일간이고 응답자수는 200명

□ 청년농 영농종사 현황

○ 청년농의 영농종사 현황은 표 3과 같음.

- 청년농이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형태는 개인 가족농이 167명(83.5%)이고, 청년농 개인 명의의 경영체 등록이 이루어진 농가가 145명(72.5%)
- 영농경력은 5년 이내가 126명(63.0%)으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영농지역은 부모 연고지 고향이 157명(78.5%)으로 응답 비중
- 부모님과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142명(71%)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모님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58명(29%)으로 조사

표 3-1. 주요 소득 작목별 청년농 영농현황

단위 : 명, %

특성 / 작목		식량작물	채소·과수·특작	축산	유통·가공·체험 등	전체
법인 여부	개인	34 81.0	72 87.8	49 86.0	12 63.2	167 83.5
	법인	8 19.0	10 12.2	8 14.0	7 36.8	33 16.5
경영체 등록 여부	예	34 81.0	58 70.7	42 73.7	11 57.9	145 72.5
	아니오	8 19.0	24 29.3	15 26.3	8 42.1	55 27.5
영농 경력	5년 이내	31 73.8	53 64.6	27 47.4	15 78.9	126 63.0
	6년-10년	9 21.4	18 22.0	26 45.6	3 15.8	56 28.0
	11년-15년	0 0.0	5 6.1	4 7.0	0 0.0	9 4.5
	15년 이상	2 4.8	6 7.3	0 0.0	1 5.3	9 4.5
영농 지역	부모 연고지	36 85.7	65 79.3	43 75.4	13 68.4	157 78.5
	비연고지 농촌	5 11.9	13 15.9	12 21.1	5 26.3	35 17.5
	비연고지 도시	1 2.4	4 4.9	2 3.5	1 5.3	8 4.0
부모 동일 작물 재배	예	28 66.7	51 62.2	53 93.0	10 52.6	142 71.0
	아니오	14 33.3	31 37.8	4 7.0	9 47.4	58 29.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2. 영농승계 과정, 효과 및 애로요인 실태조사

- 청년농의 영농승계 비중이 높아 영농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 청년농의 영농시작 형태는 부모 농장을 도우면서 영농을 시작한 영농승계형 창업농이 123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지구입 후 경영을 시작한 창업농이 56명(28.0%)으로 조사
 - 농지구입 후 영농을 시작한 경우도 58명인 28.0%에 이르고 있어 바로 독립한 경우도 다수 존재
 - (조)부모 농장에서 농업을 시작한 농가의 경우에는 경영 승계농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농가의 비중이 46.3%로 매우 높고, 독립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시작한 농가의 경우에는 승계농지의 비중이 없는 경우가 42.9%로 매우 높은 수준
 - 부모를 도와 영농을 시작한 후 영농승계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
 - 청년농이 농업에 진입하는 것이 바로 창농하는 것보다는 가족 내에서 영농을 배우면서 가족내에서 영농승계에 의해 창농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영농승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

표 3-2. 영농시작 형태별 승계농지 비중 및 영농승계 효과

단위: 명(%)

구분		영농시작 형태					계
		(조)부모 농장 도와 시작	토지승계 후 독립적 영농	농지구입 (또는 임차)	농업법인설립 (또는 참여)	농업법인 (농장) 취업	
경영 규모 중 승계 농지 비중	전무(0%)	13 (10.6)	1 (10.0)	24 (42.9)	1 (100.0)	6 (60.0)	45 (34.7)
	50% 미만	53 (43.1)	5 (50.0)	16 (28.6)	0 (0.0)	1 (10.0)	75 (32.8)
	50-100% 미만	33 (26.8)	2 (20.0)	11 (19.6)	0 (0.0)	3 (30.0)	49 (19.2)
	전체(100%)	24 (19.5)	2 (20.0)	5 (8.9)	0 (0.0)	0 (0.0)	31 (13.2)
	계	123 (100.0) (61.5)	10 (100.0) (5.0)	56 (100.0) (28.0)	1 (100.0) (0.5)	10 (100.0) (5.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영농승계는 대부분이 부모의 고령화로 인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영농승계문제가 크게 부각될 전망
- 경영승계과정을 경영권 승계 과정과 부분승계의 경우 가족 내 증여 및 상속에 의한 영농승계가 가장 많은 116명인 58.0%를 점유하고 있어 가족 내 승계가 중요
 - 가족내 증여/상속에 의한 승계는 대부분인 70.7%가 (조)부모 농지의 일부만 승계한 부분승계이어서 아직도 승계중인 것으로 파악

표 3-3. 승계 유형별, 승계 방식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가족 내 증여 또는 상속	같이 영농한 제3자 농지 승계	농업법인 참여형으로 창농	창농 후 임의 농장 구입	계
부분 승계	82 (70.7)	10 (71.4)	9 (52.9)	32 (60.4)	133 (66.5)
완전 승계	21 (18.1)	0 (0.0)	1 (5.9)	5 (9.4)	27 (13.5)
형제분 임차관리	2 (1.7)	1 (7.1)	0 (0.0)	2 (3.8)	5 (2.5)
법인지분 승계	2 (1.7)	1 (7.1)	3 (17.6)	2 (3.8)	8 (4.0)
법인 취업 중	9 (7.8)	2 (14.3)	4 (23.5)	12 (22.6)	27 (13.5)
계	116 (100.0)	14 (100.0)	17 (100.0)	53 (100.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영농승계 농가의 경우에도 부분영농승계가 133명으로 66.0%를 차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 완전한 영농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은 승계인력이 20, 30대 불과하여 아직은 승계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
- 현재 농장의 경영권 승계여부는 부분승계가 133명(66.5%)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창농을 위한 법인취업이 27명(13.5%), 완전승계 27명(13.5%), 법인 지분 승계 8명(4.0%), 형제분임차관리 5명(2.5%) 순
- 영농승계에 대한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기승계에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비중이 59.0%이고, 자녀들에 공평하게 상속을 하기를 원하는 비중도 31.5%, 사망 후 승계선택은 8.0%에 불과하여 상속보다 증여정책이 더 중요
 - 경영규모에서 영농상속(증여) 농지의 비중이 적은 후계세대일수록 조기승계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아직 영농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조기에 영농승계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
 - 부모세대가 아직 승계단계에 있지는 않지만 상속보다는 증여에 의한 조기승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표 3-4. 승계농지 비중별 영농승계에 대한 부모의 입장

단위: 명(%)

구분	경영규모에서 승계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				
	전무(0%)	50% 미만	50~100% 미만	전체(100%)	계
조기 승계 적극 지원	25 (80.6)	35 (71.4)	38 (50.7)	20 (44.4)	118 (59.0)
자녀에게 공평하게 상속	3 (9.7)	9 (18.4)	33 (44.0)	18 (40.0)	63 (31.5)
영농승계 반대	1 (3.2)	1 (2.0)	1 (1.3)	0 (0.0)	3 (1.5)
사망 후 선택 기대	2 (6.5)	4 (8.2)	3 (4.0)	7 (15.6)	16 (8.0)
계	31 (100.0)	49 (100.0)	75 (100.0)	45 (100.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본인의 농지규모 중 증여/상속으로 영농승계한 농지의 비중을 보면 아직도 적은 비중이어서 영농승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

- 자신의 농지기반 중 영농승계 농지가 차지한 비중이 전무한 경우는 22.5%이고, 37.5%는 50% 미만
 - 전체농지를 영농승계한 농가의 비중도 15.5%로 높은 수준이고, 가족내 증여/상속으로 승계한 농가에서는 그 비중은 19.0%로 증가
- 이는 영농승계는 제3자 승계도 중요하지만 (조)부모로부터 증여 혹은 상속으로 영농승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

표 3-5. 승계농지 비중별 승계 방식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가족 내 증여 또는 상속	같이 영농한 제3자 농지승계	농업법인 참여형으로 창농	창농 후 임의 농장 구입	계
전무(0%)	12 (10.3)	4 (28.6)	5 (29.4)	24 (45.3)	45 (22.5)
0~50% 미만	47 (40.5)	6 (42.9)	5 (29.4)	17 (32.1)	75 (37.5)
50~100% 미만	35 (30.2)	3 (21.4)	5 (29.4)	6 (11.3)	49 (24.5)
전체(100%)	22 (19.0)	1 (7.1)	2 (11.8)	6 (11.3)	31 (15.5)
계	116 (100.0)	14 (100.0)	17 (100.0)	53 (100.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승계농지의 금액으로 보면, 39.5%가 1억원 미만이고, 1억 ~5억원인 농가의 비중은 37.5%로 대부분 영농상속 농지금액은 5억원 미만
 - 영농상속 농지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농가 비중은 1.5% 수준

- 가족 내 증여/상속에 의해 농지를 승계한 농지금액은 1~5억원미만인 농가의 비중이 41.4%로 가장 많은 비중
- 가족 내 승계의 경우도 승계농지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농가의 비중이 2.6% 수준

표 3-6. 승계농지 금액별/승계 방식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가족 내 증여 또는 상속	같이 영농한 제3자 농지승계	농업법인 참여형으로 창농	창농 후 임의 농장 구입	계
1억 미만	41 (35.3)	8 (57.1)	7 (41.2)	23 (43.4)	79 (39.5)
1~5억 미만	48 (41.4)	3 (21.4)	5 (29.4)	19 (35.8)	75 (37.5)
5~10억 미만	15 (12.9)	1 (7.1)	3 (17.6)	9 (17.0)	28 (14.0)
10~50억 미만	9 (7.8)	2 (14.3)	2 (11.8)	2 (3.8)	15 (7.5)
50억 이상	3 (2.6)	0 (0.0)	0 (0.0)	0 (0.0)	3 (1.5)
계	116 (100.0)	14 (100.0)	17 (100.0)	53 (100.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표 3-7. 승계농지 금액별/승계농지 비중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승계농지가 본인 경영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
	전무(0%)	0~50% 미만	50~100% 미만	전체(100%)	
1억 미만	26 (32.9)	31 (39.2)	11 (13.9)	11 (13.9)	79 (100.0)
1~5억 미만	12 (16.0)	28 (37.3)	21 (28.0)	14 (18.7)	75 (100.0)
5~10억 미만	5 (17.9)	12 (42.9)	10 (35.7)	1 (3.6)	28 (100.0)
10~50억 미만	2 (13.3)	3 (20.0)	5 (33.3)	5 (33.3)	15 (100.0)
50억 이상	0 (0.0)	1 (33.3)	2 (66.7)	0 (0.0)	3 (100.0)
계	45 (22.5)	75 (37.5)	49 (24.5)	31 (15.5)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영농승계 농지의 규모와 영농승계 농지가 차지한 비중을 보면, 이양 영농 비중이 클수록 본인 경영규모에서 승계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
- 영농승계 비중이 낮은 농가일수록 영농승계 농지의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낮은 수준의 농지를 승계하고, 승계농지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이상이거나 전체를 승계한 경우가 많아 승계한 농지의 금액이 클수록 승계농지 비중이 높은 경향
- 전체승계한 농지인 농가의 경우에는 영농승계 농지규모가 10~50억 원 수준으로 높아 전체 영농승계를 위해서는 상속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 영농승계의 효과에 대한 평가

- 영농참여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농지 등의 영농승계를 받은 것이 영농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
 - 영농승계 효과가 매우 높다는 농가의 비율이 61.5%이고, 조금 높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도 24.0%로 합계 85.5%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 이는 영농승계가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농승계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
- 부모 등으로부터 영농승계가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부모농장을 도우면서 영농을 시작한 후계자는 87.0%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농지구입(또는 임차)을 하여 영농을 시작한 후계자는 그 비율이 80.3% 수준
 - 영농승계가 농업경영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영농승계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

표 3-8. 영농시작 형태별 영농승계 효과 평가

단위: 명(%)

구분	영농시작 형태					계
	(조)부모 농장 도와 시작	토지승계 후 독립적 영농	농지구입 (또는 임차)	농업법인설립 (또는 참여)	농업법인 (농장) 취업	
매우 높음	79 (64.2)	8 (80.0)	27 (48.2)	1 (100.0)	8 (80.0)	123 (61.5)
조금 높음	28 (22.8)	0 (0.0)	18 (32.1)	0 (0.0)	2 (20.0)	48 (24.0)
보통	16 (13.0)	2 (20.0)	7 (12.5)	0 (0.0)	0 (0.0)	25 (12.5)
효과 없음	0 (0.0)	0 (0.0)	4 (7.1)	0 (0.0)	0 (0.0)	4 (2.0)
계	123 (100.0)	10 (100.0)	56 (100.0)	1 (100.0)	10 (100.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영농경력별로 보면, 영농승계 효과가 매우 높다고 평가한 농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가가 6~15년의 영농경력을 가진 농가로 영농경력과는 연계성이 부족
- 이를 승계농지 비중별로는, 승계 농지가 없거나 50% 미만인 경우 대다수가 영농승계 효과가 매우 또는 조금 높다고 응답
 - 영농승계 농지비율이 50%미만인 농가에서는 영농승계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농가의 비중이 89.8%로 매우 높아, 농업기반을 구축하여 가고 있는 농가에서 영농승계의 효과를 높게 평가

표 3-9. 승계농지 비중별/영농승계 효과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영농승계 효과				
	매우 높다	조금 높다	보통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계
전무(0%)	22 (71.0)	8 (25.8)	1 (3.2)	0 (0.0)	31 (100.0)
0~50% 미만	35 (71.4)	9 (18.4)	5 (10.2)	0 (0.0)	49 (100.0)
50~100% 미만	40 (53.3)	22 (29.3)	13 (17.3)	0 (0.0)	75 (100.0)
전체(100%)	26 (57.8)	9 (20.0)	6 (13.3)	4 (8.9)	45 (100.0)
계	123 (61.5)	48 (24.0)	25 (12.5)	4 (2.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표 3-10. 승계농지 금액별/영농승계 효과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영농승계 효과				
	매우 높다	조금 높다	보통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계
1억 미만	45 (57.0)	21 (26.6)	10 (12.7)	3 (3.8)	79 (100.0)
1~5억 미만	50 (66.7)	18 (24.0)	6 (8.0)	1 (1.3)	75 (100.0)
5~10억 미만	16 (57.1)	6 (21.4)	6 (21.4)	0 (0.0)	28 (100.0)
10~50억 미만	11 (73.3)	3 (20.0)	1 (6.7)	0 (0.0)	15 (100.0)
50억 이상	1 (33.3)	0 (0.0)	2 (66.7)	0 (0.0)	3 (100.0)
계	123 (61.5)	48 (24.0)	25 (12.5)	4 (2.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승계농지 금액별로 보면, 모든 구간에서 승계 효과가 매우 또는 조금 높다고 응답하고, 특히 승계농지의 금액이 10~50억 원인 농가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하는 농가의 비율이 93.3%로 높은 수준
 - 영농승계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농가에서는 보통이라는 평가가 66.7%에 이르고 있어 영농상속세로 농업기반이 축소되는 부정적 영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이 대부분 영농승계가 농업에 보다 효과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정책과제

3. 영농승계의 애로요인

□ 영농승계과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큰 애로요인

- 유형별로 승계 과정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부모와의 의사결정 또는 생활방식의 차이’(60.0%)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술부족 문제(17.5%), 상속 자금 또는 상속세 부담(15.0%) 순으로 지적
- 부모와의 의사결정이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것이 평균치(60.0%)보다 높은 그룹은 영농승계 농지비율이 50% 미만인 농가에서 69.4%로 높게 지적

표 3-11. 승계 농지 비중별/승계 애로사항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부모와의 의사결정, 생활방식 차이	가족 형제간 상속 자산 배분 갈등	영농 상속 자금 부담, 상속세 문제	세제 정보 등 정보의 부족	기술 부족으로 인한 농업 경영 애로	계
전무(0%)	16 (51.6)	0 (0.0)	4 (12.9)	2 (6.5)	9 (29.0)	31 (100.0)
0~50% 미만	34 (69.4)	0 (0.0)	5 (10.2)	4 (8.2)	6 (12.2)	49 (100.0)
50~100% 미만	46 (61.3)	4 (5.3)	13 (17.3)	2 (2.7)	10 (13.3)	75 (100.0)
전체(100%)	24 (53.3)	2 (4.4)	8 (17.8)	1 (2.2)	10 (22.2)	45 (100.0)
계	120 (60.0)	6 (3.0)	30 (15.0)	9 (4.5)	35 (17.5)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원활한 영농승계와 청년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후에 영농상속보다는 부모와 갈등을 축소할 수 있는 사전증여에 의해 영농승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의미
- 승계농지 금액별로 보면, 승계농지 금액이 10~50억 원 사이의 농가에서는 73.3%로 매우 높게 지적
- 상속농지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농가에서는 영농상속 자금 부담 및 상속세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

표 3-12. 승계농지 금액별/승계 애로사항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승계 과정 중 애로사항					
	부모와의 의사결정, 생활방식 차이	가족 형제간 상속 자산 배분 갈등	영농 상속 자금 부담, 상속세 문제	세제 정보 등 정보의 부족	기술 부족으로 인한 농업 경영 애로	계
1억 미만	46 (58.2)	1 (1.3)	15 (19.0)	3 (3.8)	14 (17.7)	79 (100.0)
1~5억 미만	45 (60.0)	2 (2.7)	9 (12.0)	6 (8.0)	13 (17.3)	75 (100.0)
5~10억 미만	16 (57.1)	2 (7.1)	4 (14.3)	0 (0.0)	6 (21.4)	28 (100.0)
10~50억 미만	11 (73.3)	1 (6.7)	1 (6.7)	0 (0.0)	2 (13.3)	15 (100.0)
50억 이상	2 (66.7)	0 (0.0)	1 (33.3)	0 (0.0)	0 (0.0)	3 (100.0)
계	120 (60.0)	6 (3.0)	30 (15.0)	9 (4.5)	35 (17.5)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영농승계 애로요인에 대한 평가(5점 척도)

- 영농승계 애로요인에 대한 평점⁵⁾을 기준으로 애로요인을 보면, 시설투자, 운영 자금의 부족을 4.30점으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평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증여상속 법률정보 부족(3.92점), 농지확보(3.71점),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문제(3.50점) 순으로 지적
 - 2.5점 이상이면 부정적 애로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자금확보 애로, 농지확보 애로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
 -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던 형제자매간 유산 갈등, 지역주민과 갈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영농경력별로 보면, 영농경력이 많은 농가(10년 이상)는 농지구입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고, 영농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5년 이내) 농가에서는 자금부족의 문제와 증여나 상속의 법률정보 부족도 애로요인이 높은 것으로 지적

5) 5점 만점으로 평가

표 3-13. 영농경력별 부모와 공동영농 중 장애요인(5점 척도)

구분	영농경력				평균
	5년 이내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농지구하기 어려움	3.54	3.71	4.33	4.00	3.90
시설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부족	4.15	4.20	4.22	4.56	4.28
증여나 상속 법률정보 부족	3.82	4.00	4.00	3.78	3.90
농장경영 운영기술 미숙	3.53	3.04	2.44	3.56	3.14
경영 및 재배기술 상담 전문가 부족	3.44	3.07	2.11	3.44	3.02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문제	3.41	3.88	3.78	4.00	3.77
승계자 외 형제와의 유산갈등	2.43	2.38	2.44	2.33	2.40
지역주민과의 갈등	2.78	3.04	2.78	3.11	2.93
사람과의 교류(결혼, 사고 등)	3.17	3.39	2.33	2.78	2.92
평균	3.36	3.41	3.16	3.51	3.36

주: 공동영농 중 장애요인별 애로 수준을 5점 척도로 표현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표 3-14. 영농승계 유형별 영농승계 장애요인

구분	영농승계 유형					평균
	부분 승계	완전 승계	형제분 입차관리	법인지분 승계	법인(농가) 취업 중	
농지 확보 어려움	3.59	3.67	3.80	3.63	3.89	3.71
시설투자·운영자금 부족	4.11	4.26	4.80	3.88	4.44	4.30
증여·상속 법률 정보 부족	3.82	4.00	3.80	4.00	4.00	3.92
농장 운영기술 미숙	3.23	3.22	3.40	3.38	4.04	3.45
기술 상담전문가 부족	3.17	3.33	3.60	2.88	3.85	3.37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문제	3.64	3.67	3.20	3.75	3.26	3.50
형제자매 간 유산갈등	2.42	2.19	2.00	2.25	2.70	2.31
지역주민과의 갈등	2.82	2.93	3.20	3.00	2.93	2.97
사람과의 교류 문제	3.17	2.96	2.80	3.13	3.52	3.11

주: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수준이 높음.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영농승계농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소요되지 않은 영농승계 측
 진이 효과적인 방안
 - 영농상속 법률정보 부족이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지
 식의 제공이 중요한 과제
 - 부모와 의사소통의 부족문제도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해소
 하기 위한 컨설팅 등도 중요한 과제

- 시설투자자금의 부족, 농지확보 어려움을 더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농가 유형은 형제분 임차관리, 농업법인에 취업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아직 농업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유형의 농가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
 - 증여상속의 법률정보 부족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지적하고 있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문제에 직면하여 본 완전승계를 한 농가들이 4.00점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평가
- 자신의 농지에서 승계농지가 차지한 비중별로 구분하여 농가를 보면, 승계농지가 없는 농가에게서는 시설투자, 운영자금의 부족과 농지확보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

표 3-15. 승계농지 비중별 영농승계 장애요인

구분	승계한 농지가 현재 경영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무(0%)	0~50%미만	50~100%미만	전체(100%)	평균
농지 확보 어려움	4.11	3.52	3.53	3.45	3.65
시설투자 및 운영 자금 부족	4.38	4.08	4.10	4.29	4.21
증여나 상속 법률 정보 부족	3.98	3.60	4.04	4.13	3.94
농장 운영기술 미숙	3.56	3.12	3.29	3.68	3.41
경영·재배기술 상담 전문가 부족	3.36	3.00	3.43	3.61	3.35
부모님과 의사소통 문제	3.69	3.47	3.65	3.61	3.61
형제자매 간 유산갈등	2.42	2.44	2.18	2.68	2.43
지역주민과의 갈등	3.09	2.71	3.02	2.68	2.87
사람과의 교류 문제	3.42	2.96	3.00	3.61	3.25

주: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수준이 높음.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상속농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설투자 운영자금 부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속세 납부 등의 영향이라 볼 수 있고, 증여상속세 세제정보 부족의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영농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속비중이 0~50%미만인 농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직 상속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 평가
- 영농승계과정에 직면한 어려움의 평가를 볼 때,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한 자금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상속증여세제 지식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
 - 또한 부모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영농승계 과정에 부모의 노후소득 확보방안

- 영농 이양 이후 부모님의 생활비 확보계획은 부분적으로 영농지속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33명(3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로부터 생활비 총당 88명(23.8%), 농지매각 및 예적금활용 56명(15.2%), 농지 임대후 임대료 수입 49명(13.3%), 경영이양직불금 등 정부지원금 43명(11.7%) 순
- 생활비를 어느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복수 수단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

표 3-16. 영농 이양 이후 부모의 생활비 확보 계획(복수 응답)

단위 : 명, %

특성 / 작목	식량작물	채소·과수·특작	축산	유통·가공·체험 등	전체
부분적으로 영농지속	27 36.0	55 37.9	38 33.9	13 35.1	133 36.0
농지매각, 예적금 활용	10 13.3	22 15.2	18 16.1	6 16.2	56 15.2
농지 임대후 임대료 수입	11 14.7	21 14.5	13 11.6	4 10.8	49 13.3
자녀로부터 생활비 총당	15 20.0	33 22.8	31 27.7	9 24.3	88 23.8
경영이양직불금 등 정부지원금	12 16.0	14 9.7	12 10.7	5 13.5	43 11.7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4. 영농승계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 정책별 중요도/충분성 평가 결과

- 청년농 영농승계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먼저, 지원정책별로 중요도와 충분성을 평가하고 다음으로 영농승계 공제한도, 가족경영협약제도, 제3자 승계, 법인승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조사
- 청년창업농의 영농승계를 위한 8가지 지원정책에 대하여 정책별 중요도와 충분성을 평가(정책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

- 중요도에서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지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느끼는 충분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평가점으로 평가
 - 선정한 정책의 중요성은 매우 높게 보고(평균 3.0점 이상이면 중요한 정책), 정책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는가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낮은 수준
 - 중요도와 충분성간의 격차가 큰 점을 볼 때 영농승계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정책별로 살펴보면, 정착장려금, 영농가업승계공제, 원스탑종합지원, 농지취득임대 알선, 주거지 알선 정책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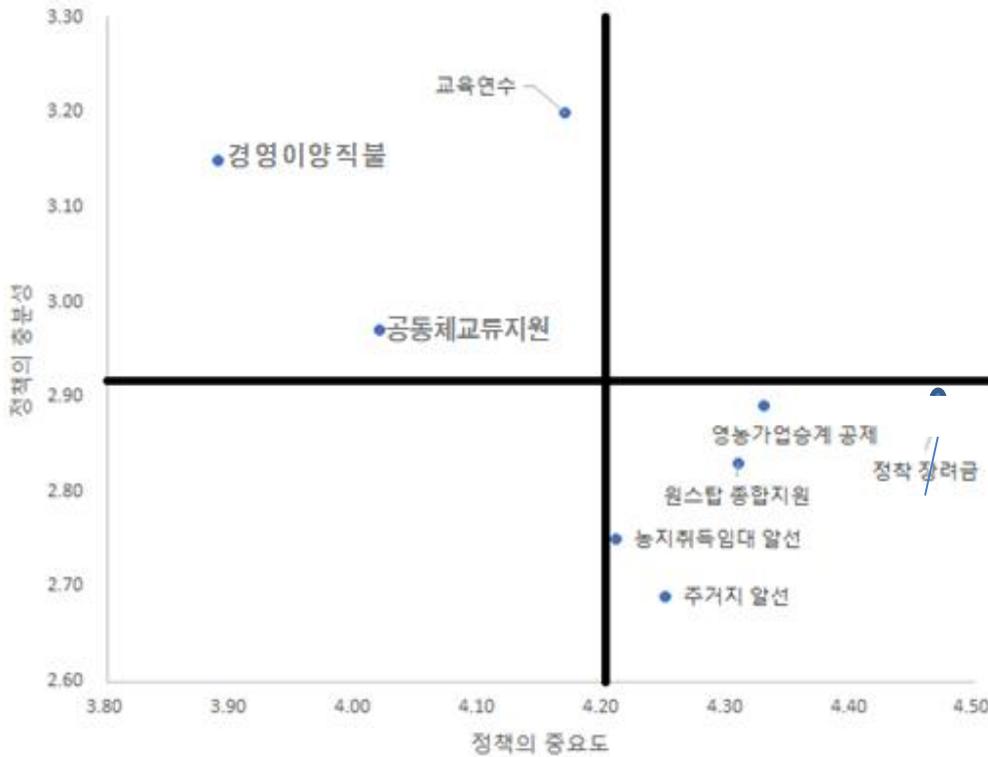
표 3-17. 청년농 영농정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 사업명	중요도		충분성	
	점수	평가	점수	평가
이양농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제	3.90	낮음	3.17	높음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영농가업승계 공제	4.34	높음	2.90	낮음
영농기술 및 경영 관련 교육연수	4.19	낮음	3.23	높음
농지 취득이나 임대와 관련한 소개 및 알선	4.22	높음	2.79	낮음
정착 장려금(보조) 지원	4.48	높음	2.95	평균
주거지 취득 및 임대 관련 소개 및 알선	4.24	높음	2.73	낮음
멘토 또는 기존주인, 관련 단체와 교류 지원	4.02	낮음	2.98	높음
농업기술, 기반자금 등 원스탑 종합지원	4.32	높음	2.86	낮음
평균	4.21		2.95	

주: 평가는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평균보다 높으면 “높음”, 전체 평균과 같으면 “평균”, 평균보다 낮으면 “낮음”으로 표시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그림 3-1. 청년농 영농정책 지원정책 평가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정책의 충분성이 낮다고 평가된 반면에 교육연수, 경영이양직불제도, 공동체교류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지만 충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정부지원의 영농단계별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착단계(1~3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91명(4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농준비단계 65명(32.5%), 정착후발전단계 44명(22.0%)으로 조사
- 영농시작 유형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모농장을 도우며 영농을 시작한 농가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제지원이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고,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도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 반면 경영이양직불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 농지를 구입(임차)하여 영농한 농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청창농육성정책에 대해 중요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면서, 그중에서도 정착장려금 지원, 주거알선 등을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
 - 또한 경영이양직불금 지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표 3-18. 영농시작 형태별 정책 중요도 평가(5점 척도)

정책 사업명	영농 시작 형태					평균
	부모 농장 도우며	토지승계 후 독립적 영농	농지 구입 (임차)	농업법인 설립 (참여)	농장(법인) 취업	
이양농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제	3.85	3.30	4.11	4.00	3.80	3.90
상속 및 증여 영농가업승계 공제	4.31	4.20	4.38	5.00	4.50	4.34
영농기술 및경영 관련 교육연수	4.14	4.00	4.30	5.00	4.20	4.19
농지 취득, 임대 관련 소개 및 알선	4.11	4.20	4.45	5.00	4.30	4.22
정책 장려금(보조) 지원	4.34	4.40	4.73	5.00	4.90	4.48
주거지 취득, 임대 관련 소개 및 알선	3.94	4.10	4.59	5.00	4.50	4.24
멘토, 주민, 관련 단체와의 교류 지원	4.07	4.10	4.59	5.00	4.50	4.02
농업기술, 기반 자금 등 원스탑 종합지원	4.20	4.20	4.59	5.00	4.30	4.32
평균	4.12	4.06	4.47	4.88	4.38	4.21

주: 정책별 중요도 및 효과를 5점 척도로 표현함.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5. 영농상속/증여공제제도 평가

□ 영농상속 공제한도에 대한 평가

- 현행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의견은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84명(42.0%)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자 46명(23.0%)보다 많았지만,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70명(35.0%)를 차지
 - 영농상속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아직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
- 영농승계 유형별 영농상속공제금액 만족도를 살펴보면, 부분승계 농가에서는 부족하다는 비중과 아직은 모르겠다는 비중이 높은 상태
 - 완전승계한 농가의 경우에는 51.9%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실재 영농상속 증여문제에 직면한 농가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부족하다는 평가

표 3-19. 승계 유형별/영농상속공제금액 만족도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영농상속공제금액 만족도			
	현행으로 충분	부족하다	모르겠다	계
부분 승계	31 (23.3)	55 (41.4)	47 (35.3)	133 (100.0)
완전 승계	6 (22.2)	14 (51.9)	7 (25.9)	27 (100.0)
형제분 임차관리	0 (0.0)	1 (20.0)	4 (80.0)	5 (100.0)
법인지분 승계	0 (0.0)	4 (50.0)	4 (50.0)	8 (100.0)
법인(농가) 취업 중	9 (33.3)	10 (37.0)	8 (29.6)	27 (100.0)
계	46 (23.0)	84 (42.0)	70 (35.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표 3-20. 승계농지 금액별/영농상속공제금액 만족도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영농상속공제금액 만족도			
	현행으로 충분	부족하다	모르겠다	계
1억 미만	21 (26.6)	25 (31.6)	33 (41.8)	79 (100.0)
1~5억 미만	18 (24.0)	33 (44.0)	24 (32.0)	75 (100.0)
5~10억 미만	7 (25.0)	14 (50.0)	7 (25.0)	28 (100.0)
10~50억 미만	0 (0.0)	9 (60.0)	6 (40.0)	15 (100.0)
50억 이상	0 (0.0)	3 (100.0)	0 (0.0)	3 (100.0)
계	46 (23.0)	84 (42.0)	70 (35.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영농승계 농지의 금액별로 보면, 승계농지의 금액이 클수록, 영농 이양 비중이 클수록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
 - 승계농지 금액별로는, 승계농지가 1억 미만인 경우 모르겠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은 반면, 10~50억 미만과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60%, 100%를 차지하여 승계농지 금액이 클수록 영농상속 공제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
- 향후 영농승계 증가에 따라 그 농지금액도 높아질 것이므로 상농상속/증여공제의 증대가 필요

□ 영농상속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한 이유

- 영농상속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보면, 농업범위 확대로 농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36.0%)을 지적하고 있고, 다음으로 영농승계 활성화(28.5%)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
 - 농업의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영농상속 공제한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평가
- 영농승계 유형별로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부분승계한 농가에서는 농장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완전승계한 농가의 경우에는 농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 법인지분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화로 자산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 비율이 37.5%

표 3-21. 승계 유형별/농업공제한도 확대 필요 이유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농업공제한도 확대 필요 이유					
	농업범위 확대로 농장규모 확대	법인화로 자산규 모 확대	비농업부문과의 형 평성 도모	농업승계 활성 화	기타	계
부분 승계	52 (39.1)	17 (12.8)	18 (13.5)	39 (29.3)	7 (5.3)	133 (100.0)
완전 승계	9 (33.3)	4 (14.8)	2 (7.4)	9 (33.3)	3 (11.1)	27 (100.0)
형제분 임차관리	1 (20.0)	1 (20.0)	1 (20.0)	2 (40.0)	0 (0.0)	5 (100.0)
법인지분 승계	2 (25.0)	3 (37.5)	1 (12.5)	1 (12.5)	1 (12.5)	8 (100.0)
법인(농가) 취업 중	8 (29.6)	6 (22.2)	5 (18.5)	6 (22.2)	2 (7.4)	27 (100.0)
계	72 (36.0)	31 (15.5)	27 (13.5)	57 (28.5)	13 (6.5)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표 3-22. 승계농지 금액별/농업공제한도 확대 필요 이유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농업공제한도 확대 필요 이유					
	농업 범위 확대로 농장 규모 확대	법인화로 자산규모 확대	비농업부문과의 형평성 도모	농업승계 활성화	기타	계
1억 미만	27 (34.2)	17 (21.5)	16 (20.3)	14 (17.7)	5 (6.3)	79 (100.0)
1~5억 미만	26 (34.7)	9 (12.0)	10 (13.3)	26 (34.7)	4 (5.3)	75 (100.0)
5~10억 미만	13 (46.4)	4 (14.3)	0 (0.0)	8 (28.6)	3 (10.7)	28 (100.0)
10~50억 미만	4 (26.7)	1 (6.7)	1 (6.7)	8 (53.3)	1 (6.7)	15 (100.0)
50억 이상	2 (66.7)	0 (0.0)	0 (0.0)	1 (33.3)	0 (0.0)	3 (100.0)
계	72 (36.0)	31 (15.5)	27 (13.5)	57 (28.5)	13 (6.5)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승계농지 금액별로는, 10억 미만일 경우 농장규모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농업승계 활성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승계농지 금액이 적을수록 법인화로 인한 자산규모 확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수준
 - 영농상속농지의 금액이 5~10억원 사이인 농가는 농장규모의 확대(46.4%)를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
 - 10~50억원 사이의 농가에서는 농업승계 활성화(53.3%)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로 평가
 - 영농상속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영농상속 공제한도의 부족을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농장상속이후 영농상속세 마련방법은 적립자금 97명(48.5%), 농지담보 22명(11.0%), 농지매각 10명(5.0%)이며, 납부안함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71명(35.5%) 수준
 - 많은 농가가 영농상속세를 대부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농가의 규모화 촉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영농상속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지원

6. 농업법인 전환 평가

□ 승계농가의 영농대가 수령방식

- 후계농가가 농장경영에 참여한 대가의 수령방법은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응답자가 82명(41.0%), 비정기적 75명(37.5%), 받지 않음 43명(21.5%)으로 조사
 - 아직도 비정기적으로 대가를 수령한 농가의 비율이 높은 점은 부모와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농장경영에 참여하는 대가의 연간 금액은 평균적으로 2,359만원으로 조사, 축산과 채소과수특작에 종사하는 농가의 대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식량작물과 유통가공체험 등에 종사하는 농가의 대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농장경영에 참여하는 역할과 대가 등의 문서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57명(78.5%)로 대부분을 차지

□ 법인을 통한 제3자 승계 효과

- 농업법인 설립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38명(69.0%)으로 농업법인 전환에 대해 긍정적 평가
- 고령 농업인이 은퇴할 때 농업법인 설립후 제3자에게 승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 54명(27.0%), 효과적 69명(34.5%)이라는 긍정평가가 약 62% 정도를 차지
- 고령농 은퇴시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지분을 소유, 배당 받고 제3자에게 영농기반을 이양하는 제도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제3자의 승계참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 승계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매우 효과적 또는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법인지분을 승계하거나 창농을 위해 법인(농가) 취업 중인 경우에는 효과 없다는 응답도 10% 이상
 - 완전승계한 농가의 경우, 형제분의 농지를 임차하여 관리한 농가의 유형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 40% 이상이고,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20% 내외를 지적
 -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형제지간의 농지상속분의 관리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

표 3-23. 승계 유형별/고령농 법인출자 제도 제3자 승계참여 효과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고령농 법인출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제3자 승계 참여 효과				
	매우 효과적	효과적	보통	효과 없음	계
부분 승계	34 (25.6)	46 (34.6)	43 (32.3)	10 (7.5)	133 (100.0)
완전 승계	11 (40.7)	5 (18.5)	11 (40.7)	0 (0.0)	27 (100.0)
형제분 임차관리	2 (40.0)	1 (20.0)	2 (40.0)	0 (0.0)	5 (100.0)
법인지분 승계	1 (12.5)	5 (62.5)	1 (12.5)	1 (12.5)	8 (100.0)
법인(농가) 취업 중	6 (22.2)	12 (44.4)	6 (22.2)	3 (11.1)	27 (100.0)
계	54 (27.0)	69 (34.5)	63 (31.5)	14 (7.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승계농지 금액별로도 모든 구간에서 매우 효과적, 효과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10~50억 미만으로 승계농지 금액이 큰 경우에는 효과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26.7%로 상당히 높은 수준
- 승계농지 금액 1억원 미만인 농가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높게 지시

표 3-24. 승계농지 금액별/고령농 법인출자 인센티브 지급제도 효과별 농가 비율

단위: 명(%)

구분	고령농 법인출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제3자 승계 참여 효과				
	매우 효과적	효과적	보통	효과 없음	계
1억 미만	24 (30.4)	28 (35.4)	24 (30.4)	3 (3.8)	79 (100.0)
1~5억 미만	17 (22.7)	26 (34.7)	27 (36.0)	5 (6.7)	75 (100.0)
5~10억 미만	8 (28.6)	10 (35.7)	8 (28.6)	2 (7.1)	28 (100.0)
10~50억 미만	4 (26.7)	4 (26.7)	3 (20.0)	4 (26.7)	15 (100.0)
50억 이상	1 (33.3)	1 (33.3)	1 (33.3)	0 (0.0)	3 (100.0)
계	54 (27.0)	69 (34.5)	63 (31.5)	14 (7.0)	20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7. 영농승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는 영농승계 활성화가 중요한 방향

○ 농수산대출신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한계는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인은 부모 등과 함께 영농을 시작한 후 영농승계하고 있어 청년농 후계세대 확보를 위해서는 영농승계가 중요한 방향

- 청년농업인이라는 점으로 인해 아직 부모도 영농능력을 가지고 있어 영농승계가 심각한 문제로는 인식되지 않는 초기단계

○ 영농승계한 농가의 경우 농업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영농승계가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지적

- 영농승계과정의 애로요인 평가에서도 농업투자/운영자금의 부족, 농지확보의 부족 등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부담이 완화되는 영농승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 영농승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모와 의사결정 차이 갈등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증여에 의한 영농승계가 필요

○ 영농승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부모와 영농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차이라는 지적

- 공동영농을 하는 경우, 노력에 대한 보상에 대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적고, 비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아 갈등발생이 상존

○ 사례조사에서도 부모와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한 이농 등의 문제가 발생

- 부모는 같은 공동경영자로서 자녀를 인식하기보다는 노동력을 보완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차이가 상존

○ 부모와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에 분가한 영농승계를 하여 독립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는 사전증여에 의한 영농승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

- 부모와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자문 등 상담을 하여주는 방안도 한 방향

□ 영농승계과정에 대한 자문 등 기반조성이 중요

- 가족 내 영농승계에는 세대간 갈등문제와 세제 등의 장애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자문, 정보 제공 등의 기반 구축도 중요
 - 승계과정의 가치관의 차이, 영농투자 의사결정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 지원도 필요
- 영농승계에서 가장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영농상속/증여에 대한 세제지식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소하는 자문기능 강화가 필요
 - 즉,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과 창농과정에서 해소하여야 할 재무, 세제 문제의 컨설팅 자문 지원 등도 필요
- 사례조사에는 청창농교육에서 영농상속세제에 대한 교육이 있지만 이해도가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세제문제는 개별농가마다 상황이 달라 일반적인 정형화된 교육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도 영농승계에 적합한 방식의 보완이 필요

- 영농승계과정의 애로요인에 대한 평가에서 경영이양직불지원정책이 중요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자금부족(농지부족)의 문제, 세제문제, 부모와의 갈등문제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으로 평가
 - 이는 경영이양직불제가 영농승계농인 직계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 고령농의 영농승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 부족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
 -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부족문제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고 법인으로 출자하는 방안도 선호
 - 이양농에 대한 지원으로는 영농승계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

□ 영농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필요

- 영농승계에서 영농상속세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의 개선이 필요
 - 영농상속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보면, 농업범위 확대로 농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과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

- 영농상속 농지의 금액별로 볼 때, 승계농지의 금액이 클수록, 영농 이양 비중이 클수록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
 - 승계농지 금액별로는, 승계농지가 1억 미만인 경우 모르겠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은 반면, 10~50억 미만과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60%, 100%를 차지하여 승계농지 금액이 클수록 영농상속 공제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
 - 향후 영농승계 증가에 따라 그 농지금액도 높아질 것이므로 상농상속/증여공제의 증대가 필요

□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 촉진이 필요

- 농업경영체의 법인화 촉진 등으로 경영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의사결정권의 배분과정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농승계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고령농 은퇴시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지분을 소유, 배당 받고 제3자에게 영농기반을 이양하는 제도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제3자의 승계참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 청년농 창업생활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의 법인화 정책을 중심으로 법인고용에 의한 창업농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경영승계는 농지나 기계·설비 등의 유형자산과 경영방침이나 영농기술 등의 무형자산을 승계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역할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정립이 필요
 - 특히 제3자 승계의 경우 고령농의 농업용 자산을 승계농가에게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농지 등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도 필요

4 영농승계 활성화 정책 실태와 과제

영농승계 활성화 정책의 체계

- 영농승계에 대한 정책은 영농기반 이양자에게 지원대책과 승계자에 대한 대책으로 구분
- 영농이양자에 대한 대책은 노후소득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여 주는 경영이양직불제의 방식
 - 세제상으로는 자경 8년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영농상속의 세제상 유리점이 상쇄
- 영농승계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승계 영농기반을 증여 혹은 상속받는 세제상의 지원이 중요
 - 상속세 납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는 명시적 대책은 없는 상태
 - 영농승계가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는 세제지원의 수준에 따라 결정
- 영농승계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구축하기 위한 농업경영구조의 마련 및 가족영농협약제 도입 등의 정책도 효과
- 다음 절부터 경영이양직불제, 영농승계 세제지원, 농업경영체로서 농업법인제도, 가족경영협약제 등에 대해 실태와 문제를 파악

1. 경영이양직불제와 경영이양 농지연금

1.1.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배경과 영농승계

- 경영이양직불제는 시장 개방으로 인한 영농규모화의 필요성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원활한 영농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 WTO로 시장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규모화의 농업구조개선 정책이 농정의 핵심과제로 제기
 - 농지유동화와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영농능력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전업농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
 - 1997년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모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시작하면서 도입, 즉, 3년 이상 벼를 재배한 65세 이상 농업인이 쌀 전업농 혹은 전문경영체에 농지를 매도 혹은 5년 이상 임대하면 258만 원/ha를 지급
 - 1999년에 ‘규모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경영이양직불제’로 명칭을 변경
- 이러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제3자에게 농지를 이양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양고령농가의 노후소득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 경영이양직불제는 1997년 규모확대 촉진을 위한 직불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 연령, 지급 단가 등을 변경
- 영농승계에서 가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고령농가가 농업기반을 이양하면 생활에 필요한 소득부족문제에 직면하는 것
 - 영농승계 실태조사에서도 고령농가의 노후소득 부족문제 해소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지적

1.2. 운영실태와 성과

□ 임대중심의 높은 경영이양 방식

- 고령농의 경영이양직불제는 1997년부터 시행되다가 실질적 영농승계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2021년부터는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경영이양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만 유지
- 경영이양직불제는 1997~2021년 기간 동안 약 10만 8,000명의 고령농(65~74세)에게 7,588억 원을 지원
 - 매입 농지 8만 1천ha를 전업농 등 7만 6,400명에게 경영이양

표 4-1. 경영이양직불 연도별 지원 실적

연도	인원(명)	면적(ha)	금액(백만 원)
1997~2016	104,455	77,199	180,099
2017	1,174	1,364	2,158
2018	852	921	1,133
2019	761	779	875
2020	769	787	1,013
2021	-	-	-
누계	108,011	81,050	758,751

자료: 농지은행 내부자료(임소영).

- 경영이양 방식으로는 농지매도와 장기임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임대방식의 농지이양에 집중
 - 임대 이양 비율은 면적 기준 88.8%에 이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을 차지

□ 경영이양직불제의 성과

- 다수의 소규모 필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양수자에게 이양되어 1인당 평균 양도면적은 0.7ha, 1인당 양수면적은 1.1ha로서 1인당 양도면적보다 양수면적이 큰 것으로 평가
 - 일부 전업농가에게 농지가 집중되는 규모화 효과는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
- 경영이양직불은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지원하여 지원대상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
 - 경영이양직불을 통한 농지 양도자의 평균 경지면적보다 양수자의 경지면적이 더 커 규모화가 추진

표 4-2. 경영이양직불 총 지원 실적

총계 (97~2021)	경영이양실적			전업농 등 지원현황	
	인원(명)	면적(ha)	1인당 양도면적(ha)	인원(명)	1인당 양수면적(ha)
소계	108,011	81,050	0.7	76,410	1.1
매도	17,658 (16.3%)	9,101 (11.2%)	0.5	15,160	0.6
임대	90,353 (83.7%)	71,949 (88.8%)	0.8	74,201	1.0

자료: 농지은행 내부자료(임소영).

표 4-3. 농지양도 및 양수자 경영면적 비교(2017~2020, 신규 약정자 기준)

단위: 명, (%)

구분	1ha 미만	1~2ha	2~3ha	3~4ha	4ha 이상	계
양도	3,651	131	14	3	-	3,799
	(96.1)	(3.4)	(0.4)	(0.1)	-	(100.0)
양수	1,741	783	256	109	76	2,965
	(58.7)	(26.4)	(8.6)	(3.7)	(2.6)	(100.0)

주: 괄호 안은 계에서 신청면적별 비율임.

자료: 농지은행 내부자료(임소영)

표 4-4. 경영이양직불 농지 양수자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연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2017	71	197	225	380	116	989
	(7.2)	(19.9)	(22.8)	(38.4)	(11.7)	(100.0)
2018	60	147	153	260	91	711
	(8.4)	(20.7)	(21.5)	(36.6)	(12.8)	(100.0)
2019	58	125	142	205	99	629
	(9.2)	(19.9)	(22.6)	(32.6)	(15.7)	(100.0)
2020	42	101	136	171	115	565
	(7.4)	(17.9)	(24.1)	(30.3)	(20.4)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

자료: 농지은행 내부자료(임소영)

- 경영이양 신청면적과 수혜면적의 규모별 분포를 비교하면, 경영이양 신청자는 1ha 미만의 농지 소유자가 96.1%로 대다수를 차지
 - 반면 수혜자의 경영면적은 1ha 미만 비율이 58.7%로 낮아져 규모화가 촉진되는 성과
- 경영이양 농지 양수자의 연령 비율을 보면, 경영이양직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에 농지가 집중적으로 지원
 - 경영이양직불을 통한 농지 양수자 중 40대 이하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일 기간 동안 전체 농가 경영주 중 40대 이하 비율이 5.2~7.2%(농림어업조사)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
 - 농지은행 사업 전체와 비교할 때, 경영이양직불을 통해 입수된 농지가 청년농에게 지원되는 비율이 더 높아 경영이양직불의 청년농 농지 지원효과는 타 사업에 비해 높은 수준
- 경영이양직불은 조기은퇴를 촉진하는 효과도 존재
 - 경영이양 농업인의 34.6%가 65~66세로서 대상 연령 중 낮은 연령대의 경영이양이 많은 실적

□ 한계와 과제

- 임대 중심의 사업실적
 -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사업방식은 매도와 임대 형태로 구분되며, 최근 임대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매도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
 - 2013년~2020년 동안 경영이양직불의 신규 가입한 면적은 약 1,298ha이며, 이중 임대 면적은 1,127ha로 86.9%를 차지
 - 2019년부터 임대의 비중이 70%대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매도보다는 높은 비중을 유지. 다만, 임대 면적은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매도 면적은 큰 변동성 없이 일정 수준(122ha~208ha)을 유지
 - 2013~2020년 동안의 평균 매도 면적은 170.6ha로 임대와 달리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임.

○ 영농 복귀 현상

- 경영이양직불금을 수령하였어도 사업 종료 후 영농에 복귀하는 경영주가 존재하여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경영이양직불에 참여한 인원 중 약 10%의 인원이 영농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
- 정부는 영농복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영농은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장에서 불만 제기
- 경영이양직불 수령자는 75세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이후 80세까지 자경을 금지
- 경영이양직불 수령기간과 영농은퇴기간이 상이하여 수혜자의 불만이 제기

1.3.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은퇴형 농지연금제로 개편

□ 경영이양직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창농 영농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으로 개편

- 고령농가의 은퇴 유도과 소득 안정 도모 및 청년농 중심의 농지 이양을 통한 영농 세대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에 신규지원이 중단된 경영이양직불제의 사업방식을 개편하여 새롭게 도입
 - 과거 사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장기임대 중심의 경영이양 비중이 높은 점을 개선하여 매도형(약정) 은퇴직불로 전환
- 2023년도 예산 215.26억 원에서 2024년도 305억 원으로 약 41.7% 증가
 - 경영이양직불 기존 약정자 면적 규모 5,324ha(138억 원)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규 약정자 3,000ha(126억 원) 추가

□ 지원대상 요건

- 2024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84세 이하(기존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 중에서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농업인 대상
- 농업진흥지역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논과 밭, 과수원 대상
- 소유한 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1천 m² 이하)에는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혹은 경작 중인 농지가 없는 조건

□ 농지이양 방식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기존 임대) 방식으로 전환

- 매도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거나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방식으로 경영이양을 촉진
 - 즉, 과거 장기임대방식의 자금지원은 없고, 농지이양 시에만 은퇴직불금을 지원
- 매도 조건부 임대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일정기간(최대 10년) 동안 임대한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 및 농지 매도대금 지원
- 지급단가는 매도 시 50만 원/ha/월 및 매도 조건부 임대 시 40만 원/ha/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을 합쳐서 4ha 수준
 - 지급기한은 가입연령 별 최대 10년 간이며 84세까지만 허용
 - 예를 들어,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청한 농업인 중 65세에서 75세까지는 10년, 76세부터는 지원기간을 1년씩 축소

1.4.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사업(안)

□ 사업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청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일정기간 동안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
-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혹은 지급기간 중에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 지원대상 요건

-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동일하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과 농지연금, 임대료 등을 동시에 지급
- 직불금 매월 40만 원/ha*(연간 480만 원) + 농지연금 최대 매월 300만 원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 단, 매도 조건부 임대에서 매도로 전환하는 경우 직불금 월 50만원 수령

□ 이양 방법 및 이양자·상속자 조건

- 신청 대상 고령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 혹은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농어촌 공사가 시행 중인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약정을 체결하여 매도조건부 임대 또는 임대 위탁
- 다만, 일반농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
 - 청년창업형 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 귀농인, 일반농, 전업농, 농업법인

표 4-5. 경영이양직불 개편(안)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개편 후(안)
사업명	· 경영이양직불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목적	· 고령농 소득안정, 영농규모화 촉진	· 고령농 은퇴유도·소득안정 및 청년농 농지공급으로 세대전환 촉진
사업기간	· 계속사업 (21년부터 신규 미반영)	· 5년 한시 사업 (5년 후 재검토)
가입요건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동일
지급단가	· 면적(ha)당 지급 - 매도: 월 27.5만 원(연 330만 원) - 임대: 월 21만 원(연 250만 원)	· 면적(ha)당 지급 - 매도: 월 50만 원(연 600만 원) - 매도 조건부 임대: 월 40만 원(연 480만 원)
가입연령	· 65세 이상, 74세 이하	· 65세 이상, 84세 이하
지급기한	· 75세 까지(가입 후 최장 10년) 66세 이하(10년) ~ 74세(2년)	· 84세 까지(가입 후 최장 10년) 75세 이하(10년) ~ 84세(1년)
이양대상	· 64세 이하 전업농, 50세 이하 농업인	· 청년농 우선 순위 : ①청년창업형 후계농, ②2030세대, ③후계농, ④귀농인, ⑤일반농, ⑥전업농
이양방법	· 매도, 임대	· 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지급농지	· 진흥지역 우선, 경지정리 비진흥 지역 포함	· 동일
신청면적	· 상한 4ha 이하, 하한 없음	· 동일
경작 허용면적	· 3,000m ² 이하	· 1,000m ² 미만
운영방식	· 농지연금 미연계	· 농지연금사업(은퇴직불형) 연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개인간 매도하는 경우에도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조건
 - 다른 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등)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상속자 조건은 동일
- 그러나, 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이양하는 경우에는 직불 신청 대상에서 제외

1.5. 경영이양직불의 영농승계에 미흡한 점

□ 직계비속에 매도 혹은 증여한 경우 지원제외 되는 문제

- 경영이양직불은 직계가족에게 경영이양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령농업인의 사전 영농승계 촉진에 적용이 어려워 사업달성이 지체될 가능성이 존재
 - 과거 사업실적을 보더라도 매도형 경영이양직불이 낮은 수준이었던 점이 이를 반증
 - 농지를 매각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상속 자녀의 반대 등) 경영이양 직불 지원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문제
- 영농승계 고령농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소득기반인 농지를 이양함으로써 노후소득 부족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
 - 타인에게 농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현금보유가 증가하여 유리하지만 영농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매각대금이 없고, 임대료 수입도 없어 노후생계소득 부족의 문제에 더 심각하게 직면⁶⁾
 - 영농자녀에 농지를 사전 증여로 양도하는 것이 노후소득 문제에서 더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이양직불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영농승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경영이양직불이 가족외 농가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농지매도는 지원하고, 가족 내 영농승계에는 지원하지 않는 차이가 있어야 타당하지만, 이의 논리적 근거는 부족
 - 타인에게 농지를 매각한 경우 8년 자경 시 농지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의 세제혜택이 있지만 사전영농증여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재
 - 사전영농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5년간 1억원 한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6) 영농승계 자녀가 고령농가의 노후소득을 부담하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이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심리적으 선택이 어려운 조건

- 가족 내 농지증여에 대해 경영이양직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이 지원하거나 이중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
 - 농지의 영농증여 과세특례는 고령농보다는 승계농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고령농가의 소득으로는 연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지원대상 범위 확대 필요
 - 경영이양직불이 청창농에게 원활하게 영농승계를 이루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영농자녀 승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합
 - 영농승계에서는 신규 창업농보다는 영농승계가 더 효과적이고, 영농승계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보완이 필요
 -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전증여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영농승계에 대해 경영이양직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면 지원수요가 확대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별도의 영농승계형 경영이양직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영농승계 촉진을 위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경영이양직불 보다는 적은 규모라도 지원방안 마련하는 개선이 필요

2. 영농승계를 위한 세제지원 현황과 과제

2.1. 가업승계 세제지원

- 가업상속공제 한도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이하 “가업상속”)⁷⁾
 -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부터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까지 300억에서 600억 원 한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2

- 공제하는 금액(2022. 12. 31. 신설)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 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자산
 -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별장, 비사업용토지 등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
 - 비사업용토지에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특정 기준이상 사용한 경우가 포함
- 대상업종
 - 가업상속공제의 농업 대상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상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중 작물재배업 중에서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만 포함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농업(01)은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복합농업(013),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수렵및관련서비스업(015) 이 있으며, 작물재배업 중에서도 종자및묘목생산업(01123) 이외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0), 채소,화훼작물 재배업(01121,01123) 채소,화훼및과실작물,기타시설작물 재배업(01151~01159)이 포함

2.2. 영농상속공제⁸⁾

- 영농상속공제 한도
 -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30억 원 한도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022. 12. 31 신설)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3

○ 대상업종

-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

○ 사후관리기간

- 5년간 사후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그 이전에 농지를 매각할 경우 공제세액과 해당하는 이자액을 환수

□ 적용대상

○ 적용 대상자 자격요건

- 피상속인의 영농기간(8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 거주요건 등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농업종사성격), 부동산임대업(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소득) 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기간에서 제외

○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

- 피상속인의 생전에 인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등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영농에 종사
-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축산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농외취업을 한 청장년의 경우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65세 이전)의 경우 공제대상

2.3. 영농증여과세특례제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⁹⁾

- 가업 승계와 관련한 증여세에 대한 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동법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규정
 - 다만, 두 규정 모두 가업의 대상업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상의 대상업종을 참조하고 있음.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상속대상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
 - 과세액가 10억(약 2.4억 세액감면효과(=10억 x 30% - 0.6억))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초과하는 증여세과세과액에 대하여는 10%~20% 과세, 5년간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의 주요내용
 - 거주자가 가업상속대상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 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은 납부유예
- 그러나 농업, 임업, 어업은 가업상속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에 가업승계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다음 영농자녀증여세과세특례에서 보듯이 농업은 농지에 한하여 사전증여만 허용하고 있어 영농승계에 한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및 이월¹⁰⁾

- 주요 내용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도
 - 단,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5년간 사후관리기간을 설정하고, 이전에 매각할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적용대상 자격요건

-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거주요건을 갖춘 거주자(자경농민 등)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거주요건을 갖추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¹¹⁾
 - 농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농지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초지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취득시기는 자경농민등이 취득한 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함(동법 동조 4항)
-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특례(동법 동조 6,7항)

2.4. 영농승계 세제지원(영농상속/증여세제) 문제의 주요 쟁점사항

□ 영농상속 공제한도의 문제

- 농업이 규모화되고,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이 증가하면서 영농상속공제한도 이상으로 자산규모가 증가 추세
 - 정책적으로 스마트팜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첨단유리온실의 경우 시설투자규모가 평당 150만원 이상으로 1ha 시설투자를 하면 자산규모가 40억원 이상으로 증가
- 농업법인으로 규모화를 추구하고, 영농상속 규모가 큰 이들의 은퇴 시점이 도래하면서 상속세 납부로 인하여 영농규모를 축소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시설원예농업만이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우에도 한우 사육두수가 50두 이상이 되면 상속공제 이상의 자산규모이어서 상속 시 경영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
- 유리온실, 농업용시설(농업법인의 경우 APC 등)의 경우 자산의 분리가 어려운 농업용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 직면

11) 직계비속이 아닌 사위, 며느리 등 영농종사 가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한 것과 비교하여 차별이 발생
 -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대상인데 반해 농업은 30억원으로 한정
 - 농업의 경우 농우종묘(주) 상속문제로 종묘업 등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어 농업 법인의 경우 규모화하는 것이 저해
 -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해당 경영체의 지속성이 중요하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경영기반을 계속 농업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
 - 영농상속공제의 문제로 경쟁력이 높은 농업경영체가 영농기반을 축소하여야 한다면 농업발전에 부작용으로 작용
 - 영농상속공제의 규모보다 영농자산이 농업용으로 계속 활용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므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이 적합
 - 따라서 농업구조변화에 적합하게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
 - 가업상속공제대상에 농업을 포함하는 것도 한 방안
 - 이와 동시에 농지, 초지는 생산용 자산이므로 상속자산의 범위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 차지한 경우 상속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개선이 필요한 실태
- 농업소득등외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합계(이하 농업외소득) 3,700만원의 자격조건 문제**
- 사업소득 중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농업외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보지 않아 영농상속공제대상에서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영농상속공제의 범위에서 제외(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6조 4항)
 - 먼저 3,700만원이라는 기준은 과거 2000년에 농가부채대책특별법 실시 당시 지원대상에서 농업인으로 제외하였던 기준이고, 이후 고정직불금 및 쌀 변동직불금 수령에서도 지원대상으로 적용한 기준
 - 현재의 소득규모, 근로소득 등을 고려할 때 3,700만 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경제성장에 적합하게 상향하는 것이 필요
 - 2000년 이후 GDP성장 추세 및 도시근로자 근로소득 등을 고려할 때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기준

- 또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에서 받은 급여는 농업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으로 판정되어 3,700만 원 기준 판단 대상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조건이 존재
 - 농업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유도 및 제3자 영농승계 등을 추진하고자 농업법인에 먼저 취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요인으로 작용
 - 개인이 사업소득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면 직접영농으로 보지만, 같은 사업을 법인화하여 농업에 종사하면 직접영농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규정은 동일직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에 위배
 - 이는 또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가족농을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농업법인에 종사하여 얻은 근로소득은 농외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개선
- 다른 한편으로 1인 자녀가 증가하면서 후계승계 자녀가 영농에 종사하는 1인과 부분적인 영농을 하면서 농외취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
 - 직계 자녀는 취업을 하고, 며느리가 취유농업 등 영농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공동으로 영농을 담당하고 있는데 고령으로 영농상속을 아들에게 하고자 할 경우 실질적으로 영농가구이지만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의 조건으로 상속이 불가
 - 반대로 사위가 주영농을 담당하고, 딸은 농외취업 등 다른 농외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인 딸에게로 영농상속을 하고자 하여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작용
- 농가도 가구구성이 변화하면서 1인 자녀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여건의 반영이 필요

□ 통작거리 30km 조건 문제

- 자녀교육 등으로 인하여 점차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
 - 영농에 적합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하여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농지를 소유하는 사례 증가
- 거주지역에서 30km이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상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 교통의 발달, 자녀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장에서 30km 이상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실질적으로 농업을 담당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농지가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므로 개선이 필요
 - 이는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업용을 활용되는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이 적합

□ 자가 영농시간 1/2 조건 문제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조건 중 또 다른 쟁점이 되는 조건은 상시 혹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¹²⁾
 - 농작업의 주요한 부분 및 노동력 활용에서 농업인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
- 농작업의 외부화, 농작업대행업의 활성화 등 농업생산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전체 농작업의 1/2를 자기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곤란
 - 자기 소유 노동력을 농업에 얼마나 투입하느냐가 영농종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합

□ 영농자녀 영농증여세 과세특례의 차별 문제

- 영농증여세 과세특례와 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비교하여 보면, 농업이 너무 적게 설정되는 차별이 발생
 - 농업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과세액가 10억(약 2.4억 세액감면효과 (=10억 x 30% - 0.6억))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초과하는 증여세과세과액에 대하여는 10%~20% 과세
 - 반면 영농증여세 과세특례는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 대상도 농지에 한정된 문제
- 영농증여세 과세특례가 적합하게 마련되지 않아 고령농가가 생전에 영농기반을 이양하는 것이 어려워 영농상속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고령농의 생전 영농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농승계 청창농이 부모의 사망만 기다려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
 - 영농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사전 영농승계가 되지 않음으로써 자산의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등 농업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1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의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

- 영농증여세 과세특례제를 개선하여 상속에 의한 영농승계보다 적기에 영농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가업증여세 과세와 유사하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
 - 영농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일본과 같이 증여세납부 유예를 하고 상속세에 포함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
 - 사전 영농증여를 활성화하여 영농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농업외 활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 영농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도 농지이외에 농업용 시설물, 소 등 대기축 등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이 되는 농업용자산으로 확대가 필요
 - 스마트팜 농업의 확대 등 농지보다 농업용 시설투자, 농기계 등이 농업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농업변화에 적합하게 대상자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이와 같이 영농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적기에 영농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농업은 제외되는 문제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부동산등을 제외한 특정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50억 원을 한도로 5억원의 증여재산공제와 10% 단일 세율을 적용
 - 증여세=(증여세과세가액-5억 원) ×10%
 - 한도 50억 원(10명 이상 신규고용의 경우에는 100억 원)
- 대상업종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의 업종을 적용하며, 농업은 제외되어 있어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
- 청창년의 제3자 영농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농업용자산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중요
 -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청창농육성자금, 농업후계자육성자금 등) 지원만으로는 경영체의 부채비율만 높여 경쟁력 확보에 불리
 - 비농업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농업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2.5. 영농상속공제 대상 규모 산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현황 분석

□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

- 가족농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농가의 고정자산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농가경제조사가 제시
 -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및 농업총조사에서는 자산규모 조사는 있지만 자산가역에 의한 평가액 자료가 없어서 활용 곤란
 - 상시고용인 5인 이상 대규모 기업농, 법인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규모 농가 등 농가의 정확한 자산규모 파악 곤란
- 2022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전체농가의 1.03%인 농가가 고정자산 규모가 30억 원 이상
 - 고정자산 30억 원 이상인 농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50대로 이들의 4.73%가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수준
- 영농은퇴 시점에 도달한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의 농가의 경우(59.8% 농가가 해당), 0.42%가 고정자산 규모 30억 원 이상
 - 전체 농가 1,035천 호를 기준으로, 70세 이상의 농가 중 약 2,600호 정도가 해당
 - 사전에 증여한 10년 전 증여한 부분까지 합산한다고 보면, 그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경영주 연령 60대의 30억 원 이상의 고정자산 규모 농가 비중인 1.29%를 70세 이상의 농가에 적용하여 보면 대상 농가의 수는 7,984호로 증가

표 4-6. 농가연령별, 농가 고정자산규모 비중(2022년)

구분	1억 원 미만	1억~5억 원	5억~10억 원	10억~30억 원	30억 원 이상	계	
39세 이하	10.95	46.82	42.23	0.00	0.00	100.0	(0.14)
40~49	6.52	61.38	18.67	13.06	0.36	100.0	(1.29)
50~59	8.21	46.20	28.39	12.48	4.73	100.0	(7.94)
60~69	12.43	52.75	22.08	11.44	1.29	100.0	(30.79)
70세 이상	18.24	54.74	17.87	8.73	0.42	100.0	(59.84)
계	15.50	53.52	20.05	9.91	1.03	100.0	(100.0)

자료 :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23)

- 영농형태별로 보면, 고정자산 규모 30억원 이상인 농가의 비중이 높은 영농형태는
 - 축산농가가 2.80%로 가장 높고, 다음 화훼농가가 1.77%로 큰 비중을 점유
 -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채소농가 및 수도작 농가의 경우에는 각각 0.57%와 0.50%의 농가가 고정자산규모 30억 원 이상

표 4-7. 농가 영농형태별, 농가 고정자산규모 비중(2022년)

농가 구분	1억 원 미만	1억~5억 원	5억~10억 원	10억~30억 원	30억 원 이상	계	
논벼	14.10	51.53	20.14	13.73	0.50	100.0	(21.06)
과수	8.56	51.32	29.21	10.33	0.58	100.0	(8.79)
채소	19.84	56.75	18.37	4.47	0.57	100.0	(24.80)
특작	29.53	34.93	26.29	9.25	0.00	100.0	(1.85)
화훼	11.44	65.35	12.35	9.10	1.76	100.0	(0.53)
전작	21.24	49.22	20.91	8.62	0.00	100.0	(3.13)
축산	7.76	36.89	25.31	27.23	2.80	100.0	(4.52)
기타	30.95	58.34	8.78	1.94	0.00	100.0	(1.82)
2종 겸업	13.93	56.19	18.42	9.68	1.77	100.0	(33.49)
계	15.50	53.52	20.05	9.91	1.03	100.0	(100.0)

자료 :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23)

- 농가경제조사의 모집단의 낮은 비중으로 농가비중이 적은 축산농가를 이력제자료 등을 활용하여 축산규모별 농가 수를 보면 많은 농가가 규모화되어 영농상속 시 공제한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
 - 한우농가는 사육두수 50두 이상인 농가 수가 전체 85,686호 중 22,505호에 이르는 순
 - 양돈농가는 규모화로 농가 수가 축소되어 사육두수 5천 두 이상인 농가 수는 417호 수준

표 4-8. 한우농가 규모별 농가 수(2023. 9)

구분	20두 미만	20~50두	50~100두	100두 이상	전체
농가 수	40,329	22,852	13,522	8,983	85,686
마리 수	323,665	741,247	947,232	1,584,090	3,596,234
평균 마리 수	8.0	32.4	70.1	176.3	-

자료: 축산물이력제

표 4-9. 양돈농가 규모별 농가 수(2023.9)

구분	1천 두 미만	1천~ 5천 두	5천~1만 두	1만 두 이상	전체
농가 수	2,311	2,995	301	116	5,723
마리 수	845,752	6,636,528	2,038,860	1,877,200	11,398,340
평균마리 수	366.0	2,215.9	6,773.6	16,182.8	25,538

자료: 축산물이력제

□ 스마트팜 농업의 성장

- 우리나라 시설원예 면적은 57,380ha로 많은 면적
 - 그러나 3ha 이상 규모의 온실은 1.5%로 대부분이 소규모의 온실을 운영
 - 2022년 기준 유리온실은 335ha이고, 경질판 온실은 75ha

표 4-10. 시설재배 농가의 재배면적 현황(2020년)

구분	농가 기준		면적 기준		농가당 면적 (ha)
	농가 수 (가구)	농가 비율 (%)	면적 (ha)	면적 비율 (%)	
0.3ha 이하	116,559	63.4	12,440	21.7	0.107
0.3~1.0ha	57,488	31.3	30,504	53.2	0.531
1.0~3.0ha	9,633	5.2	13,557	23.6	1.407
3.0ha 이상	217	0.1	878	1.5	4.047
합계	83,897	100.0	57,380	100.0	0.312

자료: 농업면적조사

- 스마트팜 온실의 대상이 되는 경질판 온실과 유리온실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8년 350ha → (2020년) 388ha → (2021년) 393ha → (2022년) 404ha
- 정부는 농업 경쟁력 제고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스마트팜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스마트팜의 대상농업인 기준에 시설투자한 350ha 정도의 유리온실이 후계세대에 잘 이전되는 것이 매우 중요
 - 청창농의 경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설원예농업으로 진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딸기 고설재배 분야에 진입이 확대
- 스마트팜 유리온실의 경우 시설투자 규모가 평당 150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1ha 구축을 위해서는 45억원의 투자금이 필요)을 고려할 때 영농승계에 의한 진입이 중요
 - 사례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창농의 시설농업(시설딸기) 3,300㎡(1천평) 규모의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

□ 영농상속공제한도 상향 검토

- 영농상속규모가 30억원 이상인(비공제 대상 자산포함) 전업농가 수는 농가경제조사자료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
 - 전업농가가 농업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농가경제조사에서 제외되는 한계로 낮게 추정 가능
 - 축산 및 시설원예 농업경영체(가족농 및 농업법인)에서는 전업농가 비중이 높은 수준
- 영농상속공제 한도 이상인 대상 농업경영체 수의 비중은 적지만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농업의 지속가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정부의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정책으로 규모화된 농가가 영농상속 과정에서 분할되어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문제
 -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농업경영체가 규모 축소 없이 그대로 영농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대규모 농업투자를 한 경우 농업용자산은 분할이 어려운 지분분할이 아니어서 상속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 상속자 간의 자산의 분할이 어렵고, 나머지 상속세 납부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
 - 예를 들어 한우농가의 경우 대가축은 영농상속 공제대상이 되지 않아 이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축사를 분할 매각할 수 없는 실정
- 농업자산을 투자지분으로 증권화하여, 이를 분할하는 보다 영농승계에 유리한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 설립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3.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 제도

3.1. 영농승계와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영농승계에 유리한 농업경영체 형태

- 가족농과 달리 농업법인은 지분에 의한 소유구조로 되어 있어 지분양도에 의한 영농승계가 유리하고, 출자지분의 소유로 인한 농업부문 수익공유 등에 유리한 경영체 구조
 - 영농승계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령농의 노후소득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지분 배당이 가능하여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기도 유리한 구조
 - 농업법인은 지분의 이전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에 의해 농업용 자산이 비농업부문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유리
- 특히 지분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여 농업법인의 임원에 의한 경영 추진으로 제3자 영농승계가 가능한 구조
 - 가족농의 경우 제3자 영농승계를 위해서는 농지 등 농업자산을 매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3자 영농승계가 어려운 실정
 - 일본의 경우에도 농업법인은 제3자 영농승계자를 확보하기가 유리한 점을 장점으로 제시
- 농업법인은 지분에 의해 자금조달능력이 확대되고, 농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가 유리하여 농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경영체 형태
 - 또한 영농경험 및 거래처 관계 등 무형의 지적자산 이전에도 장점
- 외국의 경우에도 가족농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법인을 통한 규모화가 크게 촉진되는 추세

□ 가족경영협약제도보다 유리한 역할분담 가능

-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영농한 경우 구성원간 역할분담, 농업수익의 공유 등에서 명확한 관계설정이 가능
- 청년창업농이 농업법인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에 권한이 명확히 설정되고, 인건비(임금) 설정이 되어 있어 영농활동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실현 가능

- 가족농의 경우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이 불명확한 구조이어서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발생
- 선행연구 결과 및 청창농의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영농의사결정(투자방향 등)에서 부모와 갈등이 발생하여 책임 있는 영농이 어렵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
-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조직체계상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인하여 농업경영방향의 공유와 영농의사결정의 승계가 잘 이루어지는 장점

□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농의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기반 구축이 필요

- 가족농의 농업법인으로 전환이 많은 장점이 있는 동시에 비용의 측면, 세제적 측면에서 애로요인도 공존
- 영농승계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법인제도의 개선이 필요

3.2. 농업법인제도 실태

□ 농업법인제도

- 현재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법」, 「농지법」 등을 중심으로 설립 근거, 목적과 성격, 설립 자격과 구성원, 출자 한도 및 책임 한계, 설립과 등기, 경영 참여와 의결권, 사업 내용, 해산 등을 규정
 - 농지법에서 규정한 것은 농업법인중 농지소유가 가능한 법인의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
- 농업법인은 크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되고, 농업회사법인에는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분
 -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으로 농업인만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최소 조합원 수를 5인 이상으로 규정
 -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로 회사유형에 따라 비농업인의 소유와 경영참여가 가능한 법인

- 가족농이 1인 소유 농업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유형으로는 농업회사법인 중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만 가능한 형태
 -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합명회사¹³⁾, 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소유자를 필요
 - 합자회사 및 주식회사는 비농업인이 직원이 아니면서도 외부출자가 가능하여 자본조달에 유리한 형태
 -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여 가족농 전환이 어려운 구조
- 가족농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때 합자회사는 1인 경영자와 1인 이상의 외부출자자로 구성이 가능하여 유리한 구조
 - 특히 자녀의 상속에서 영농승계농이 농업경영을 하고, 비농업인 자녀의 상속자산을 농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어 농업기반의 유지가 가능
 - 고령농이 가족외 직원을 영농승계자로 설정할 경우에도 고령농의 지분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어 노후소득 확보에 유리
- 농업회사법인이 보다 유연한 소유와 경영구조라는 점을 반영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

13) 소유자 모두 직원이어야 하는 조건이 적용

표 4-1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설립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결원 시, 1년 이내에 총원(미총원 시 해산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설립
비 농업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 한도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후 1년 경과 해산 사유
고유 목적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지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지법 제2조 제3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하고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특례를 부여하지만 그 외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
 - 예를 들어 축사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는 가능하지만 고유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면제가 불허
-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별도의 세제지원을 마련
- 먼저 국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 법인세의 경우 ①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면제, ②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은 조합원 당 수입금액 6억 이하의 소득분(영농조합법인), 연 수입금액 50억 이하의 소득분(농업회사법인)까지 감면, ③작물재배업 외의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은 조합원 1인당 연 1,200만원(영농조합법인),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농업회사법인) 감면
 - 부가가치세 면제도 추진하여 농업기자재 등의 구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도 면제
 - 농지에 대해서는 일정 자경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도 부여
- 지방세 부분에서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법인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이러한 세제지원으로 농업법인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농업의 규모화, 농업의 부가가치화 사업분야로 확대를 유도

□ 농업법인 운영실태

- 영농조합법인 운영법인 수는 10,163개소 수준¹⁴⁾
 - 법인당 평균 매출(판매)액: 1,198백만원
 - 매출액 10억 이상 법인 수: 2,219개소
 - 법인당 평균 출자액: 221백만원

14) 2018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20.2월)

- 농업회사법인 운영법인 수는 11,617개소
 - 법인당 평균 매출(판매)액: 2,356백만원
 - 매출액 10억 이상 법인 수: 3,931개소
 - 법인당 평균 출자액: 349백만원
-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농업법인인 결산법인을 보면(통계청 자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결산법인 수는 2015년 13,858개에서 2021년에는 25,605개로 약 84.8% 증가
 - 실태조사 법인 수보다 결산법인 수가 더 적은 것은 세무신고 재무결산을 하지 않는 법인 때문
-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농업법인의 자산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
 - 자산 10억 원 이상 대규모 농업법인의 수가 2015년 3,713개서 2021년 8,022개로 116.1% 증가(통계청 원자료에서는 자산규모 10억원이 한도로 집계)
 - 전체 농업법인 중에서 자산 10억 원 이상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26.8%에서 2021년 31.3%로 4.5%p 증가
- 농업법인 수의 증가와 농업법인 자산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영농상속 공제한도인 30억원 이상인 자산규모 농업법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업법인의 설립연도 장기에 따라 영농상속 시기(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법인연합회를 통하여 영농상속공제 규모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가업승계공제 대상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

표 4-12. 자산규모별 농업법인 수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결산 법인 수	13,858	14,361	15,954	20,689	22,147	24,499	25,605	
자산 규모	1억 미만	2,768 (20.0%)	2,791 (19.4%)	3,074 (19.3%)	3,553 (17.2%)	3,942 (17.8%)	5,233 (21.4%)	5,542 (21.6%)
	1~5억 미만	5,332 (38.5%)	5,377 (37.4%)	5,755 (36.1%)	7,325 (35.4%)	7,681 (34.7%)	8,013 (32.7%)	8,416 (32.9%)
	5~10억 미만	2,045 (14.8%)	2,093 (14.6%)	2,375 (14.9%)	3,164 (15.3%)	3,337 (15.1%)	3,512 (14.3%)	3,625 (14.2%)
	10억 이상	3,713 (26.8%)	4,100 (28.5%)	4,750 (29.8%)	6,647 (32.1%)	7,187 (32.5%)	7,741 (31.6%)	8,022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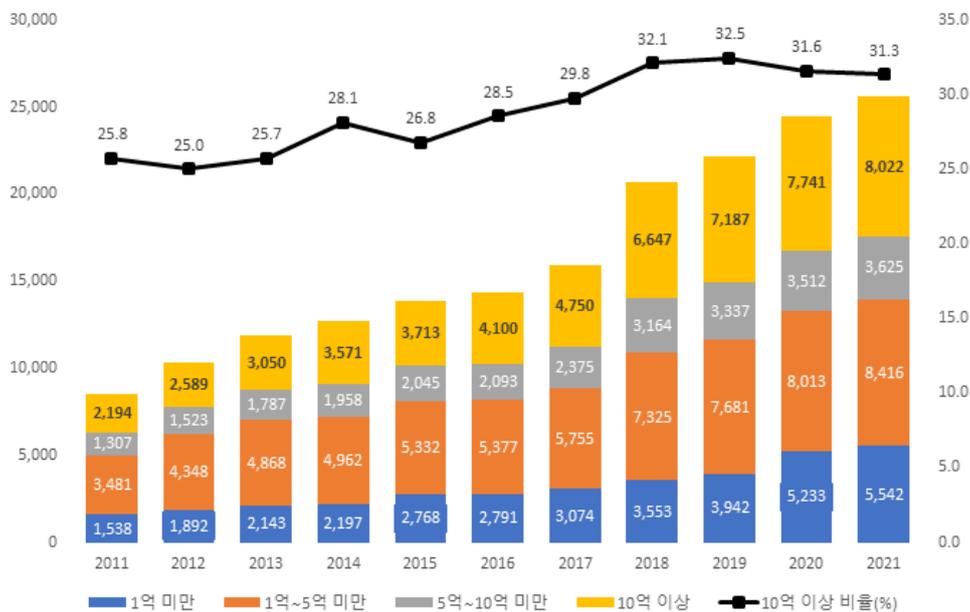
주: 통계청 SBR 자료, 국세청 법인세 자료를 활용.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표 4-13. 2022년 기준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 농업법인 수 및 평균 자산

30억 원 이상 농업법인 수 (개소)		법인 당 자산 (백만 원)
전체	3,712	9,124
영농조합법인	961	
농업회사법인	2,751	

자료: 통계청 「202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그림 4-1. 연도별 농업법인의 자산규모 변화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3.3.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제도 활용

□ 농업법인은 영농승계에 유리한 농업경영체 유형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농업법인은 소유지분의 거래가 가능하여 영농승계에 유리한 농업경영체
 - 일본에서는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승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화
- 첫째는, 영농경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자녀 혹은 타인)이 취업하여 소득을 얻으면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에 효과적인 방안
 - 특히 판매거래처와의 관계형성, 영농지식의 전수 등 무형자산의 공유 가능

- 둘째, 농업법인의 지분을 승계하는 것이어서 분할이 용이하고, 영농이양 후 고령 농의 노후소득 문제에 대응하기도 유리한 구조
 - 비농업인인 형제가 농지를 상속하였을 경우 매각하기보다는 합자회사 등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여 농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
- 셋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조직체이므로 영농승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생전에 적합한 직원을 고용하고, 이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것이 유리
 - 농업법인은 농지매각 없이도 제3자 영농승계가 가능하여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창업농이 영농기반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

□ 가족농의 농업법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강화

- 영농승계 과정에 있어 농업법인이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가족농을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
 - 외국의 경우에도 가족농의 수는 감소하여도 농업법인으로 전환한 수가 증가한 실태
- 그러나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이의 개선이 필요
 - 자녀가 법인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는 경우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농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고, 이는 농외소득으로 평가되어 영농증여 및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농업법인에 근무하여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사업주 혹은 고용취업자가 되어 농업인 국민연금 보조지원 등이 어려운 불이익 발생
- 가족농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인의 조합원이 필요로 하여 3인(부부, 영농자녀 1인) 가족의 경우 이로 전환이 어려운 실정
-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이익을 받는 사항들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필요

3.4. 가족경영협약제

□ 가족경영협약제 도입

- 가족경영협약제는 가구원 특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보수제공 등을 위하여 법적근거(고용계약 등)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간의 역할과 책임, 권리를 규정하는 사적 제도로 도입¹⁵⁾
 - 일본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계약관계의 법적 보호가 안되는 사항
 - 법적근거에서 가족경영협약제는 농업법인제도와 큰 차이가 발생
- 가족경영협약제가 역할과 책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농업에 처음 참여하고 있는 예비승계농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고정적으로 얻는 것이 가능한 협약
 - 개인간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
 - 일본의 경우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청색신고 등) 가족간의 임금지급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그만큼 농업소득세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이가 큰 상태
- 이러한 가족경영협약제가 영농승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제시
 - 가족경영협약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등 개인적 협약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승계 활성화의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은 방안

□ 일본의 가족경영협약제

- 일본의 가족경영협약 제도는 농가 내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보수,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경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원들 상호 간의 약속을 문서화한 제도
 - 가족경영협약 제도는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지위 향상의 기초
 - 가족경영협약 도입 초기에는 승계를 목표로 한 부자 협약차원에서 민간단체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점차 부부중심으로 농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부부간의 협약으로 확대
 - 특히, 여성의 경우 농업 외에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협약 사항에 포함시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영참여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

15)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가족경영협약제의 확산을 촉진

- 1995년 농업자연금법 개정, 여성이 ‘경영자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도록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가족경영협약을 연금가입 조건으로 제시하여 제도보급
 -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인정농업인 및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정부 지원 정책 대상
 - 인정농업인제도에서 농가의 구성원이자 실질적으로 공동경영하고 있는 경우, 가족경영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부부의 인정농업인 공동신청이 가능
- 가족경영협약의 주요 내용
 - 농업경영 방침 및 노동시간과 휴일, 역할분담(작업분담, 장부기입 등), 노동보수(일급, 월급), 수익배분(일급, 월급 외 이익 배분) 등으로 구성
- 가족경영체를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진되면서 가족경영협약의 실질적 효과 축소
 - 농업정책에서 영농승계정책으로서의 가족경영협약제는 존재가 약한 상태

□ 가족경영협약제의 영농승계 활용 가능성

- 가족경영협약제는 영농승계를 위한 준비단계 지원대책이기보다는 여성농업인 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한 방안
 -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율적, 사적 계약관계이어서 영농승계정책의 수단으로 활용이 곤란
- 일본의 경우 농업자연금 가입대상 및 인정농업자 지위(농업개량자금 지원 가능), 농업위원회의 확인 등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하여 활성화 가능
 - 우리나라도 농업경영체등록제에서 개별 농업인의 등록이 가능하여 정책적 차별성은 없는 조건
- 일본과 달리 우리는 작물재배업의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되어 고정적 임금을 지불하는 가족경영협약제도가 실효성은 낮은 상태
 - 가족농에서 고용상태의 유무, 농업활동의 증명 등을 입증하기는 곤란
 - 농업법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가진 고용상태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안
- 영농승계 준비단계에서 승계자의 영농의사결정권의 부여(근로조건 설정)를 위한 역할분담, 일정한 수입의 확보 등에서 활용성이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

5

외국의 영농승계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1. 외국의 경영이양(농지이양)지원 제도

1.1. 일본의 경영이양연금제도

- 후계자에게 임대하여 경영이양한 농지를 농지집적센터(농지중간관리기구)에 직접 위탁하는 경우, 경영이양연금 및 특별부가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별부가연금은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
 - 60세까지의 보험료 납부 기간과 카라기간¹⁶⁾ 등을 합산하여 20년(240개월 이상인 사람)
 - 원칙적으로 65세가 된 사람, 단, 경영승계를 65세 이후에 한 경우는 특례
- 특별부가연금은 경영승계 이후부터 수급하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나이에 경영 승계를 한 경우는 65세 이전에 특별부가연금을 조기 청구 가능
 - 경영승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양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경영승계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영농을 허용

1.2. 프랑스 경영이양제도¹⁷⁾

-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 분야에서 세대교체하기 위해 제3자 경영이양(Programme pour l'Accompagnement et la Transmission en Agriculture: AITA)을 위해 지원
 - 가족 외 제3자에게 경영이양을 지원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

16) 농업자연금의 피보험자는 국민연금 제2호 피보험자가 되거나 국민연금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경우 농업자연금을 탈퇴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 가능), 그러나 피고용자 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일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액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농업자연금 정책 지원 가입 요건 및 특별부가연금의 지급 요건 기간에 합산될 수 있는 기간

17) 임소영(2023) 보고서 재작성

- AITA는 기존 청년창업농을 지원했던 정책인 programme pour l'installation et de developpement des initiales locales(PIDIL)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지역에 따라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2016년부터 시행
 - 프랑스 농업부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AITA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 정부인 레지옹(Region) 단위
 - AITA 운영과 관련하여 프랑스 농업회의소가 경영이양을 하려는 농업인과 신규 진입농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관련 서류 접수 등을 담당
 - 은퇴를 하려는 농업인들은 경영이양에 대한 정보를 이양정보센터(Point Accueil Transmission)에 문의를 하거나, 도단위(department, 데파르트망) 농업회의소에 협조
 - AITA재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레지옹) 예산과 일부 EU 예산 등으로 구성
- 농업분야 세대교체를 위해 AITA는 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
 - 청년창업농 사업에 대한 접수(Reception of project leaders)
 - 농업 창업에 대한 조언(Installation advice)
 - 농업 창업 준비(Preparing for the installation)
 - 청년농업인에 대한 점검(Monitoring of the new operator)
 - 경영이양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to transmission)
 - 소통과 활동(Communication - animation)
 - 이 중 1개만 경영이양을 하는 은퇴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5개는 경영승계 청년농업인을 대상
- 사업은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제3자인 청년을 고용하는 경영주와 해당 피고용인에게 지원하는 것
- 경영이양에 대한 지원 사항¹⁸⁾
 - AITA는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의 농장을 진단하고, 경영이양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조건은 고령농업인이 영농은퇴선언서(Declaration of intention to cease farming: DICA)를 제출하고 RDI(Repertoire Depart Installation)에 가입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출비용의 80%, 최대한도는 €1,500

18) 프랑스 중앙정부 농촌 및 어업 법령에는 경영이양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부분이 있었으나, 2017년 폐지

- AITA에서는 고령농업인이 그의 농장을 이양할 목적으로 청년농업인을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지원
 - 지원 조건은 고령농업인의 경우 최소 57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수생(Trainee)은 최대 30세 이하
 - 지원금액은 청년농업인을 고용한 경우 연 €4,000, 연수생은 연 €2000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
 - 해당 지원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지급
- 해당 사업에서는 유휴농지와 기존 농업인에 대한 농지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을 일정 수준 이상 완료하면 지원금을 지급
 - 지원 조건은 경영이양을 한 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그만두고 후계농에게 농장을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
 - 지원금액은 전체 농지 중 95%가 이전되면 최대 €3,000, 85%가 이전된 경우 최대 €1,500
- AITA에서는 비농업인 혹은 영농활동을 종료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이양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
 - 만약 농업인이 자신이 보유한 농지의 일부를 임대하고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지원이 불가
 - 지원금액은 농장 소유자당 최대 €12,000이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지역의 농지 임대료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 AITA에는 농지만이 아니라 거주 및 농업 시설을 이양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
 - 대상 시설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촌 주택, 농업용 시설이 포함, 지원 금액은 최대 €5,000
- AITA에는 미래 은퇴할 계획인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원
 - 52~57세의 농업인이 향후 영농은퇴를 계획하고 자산의 농장에 대해 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 비용에 대해 지원
 - 지원금액은 고령농업인의 농장 진단에 대한 비용 지원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출 비용의 80%이며, 최대한도는 €1,500
 - 이 지원금은 고령농업인이 아니라, 진단 작업을 수행한 업체에게 지급

1.3. 영국 은퇴지원금(Lump-Sum Exit Scheme: L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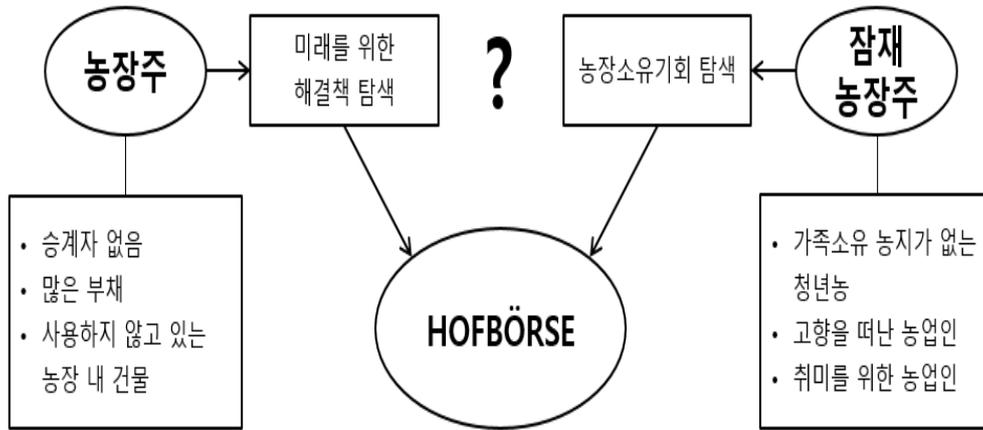
- 2019년 EU 탈퇴로 영국은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럽연합이 지급해 오던 농업지원금이 삭감되면서 자국의 농업환경에 맞는 신농업정책을 계획하면서 마련
 - 영국은 기존의 공동농업정책에 기반한 농정에서 혁신, 생산성 향상, 현대화, 농업기술진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계획인 Agricultural Transition Plan을 추진
- 신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직불제(Basic Payment Scheme: BPS)를 대체한 ① 비연계직불제(Delinked Payments)와 ② 은퇴지원금(LSES) 제도가 시행
 - 비연계직불제는 2024~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직불액이 농지면적이 아니라 지난 3년간(reference years) 평균 기초직불액에 비례
 - 2028년부터 비연계직불제는 폐지
- LSES 사업 목적
 - 영국의 농업인 고령화(평균 연령 60세)에 대응한 농업인력 구조조정
 - 농업 및 농지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농업 이탈 후 재정적 문제(노후소득 부족)로 인해 농업인력 세대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응
 - LSES 직불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은퇴·이탈 계획이 있는 농가의 은퇴를 촉진하고 신진농업인력의 유입을 유도
- 대상자, 요건, 준수사항 등 세부운영 현황
 - (대상자) 2018년 또는 그 이전에 기초직불제(BPS) 수령 농업인 또는 2018년 5월 이후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
 - (면적기준) 기초직불제가 5ha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면적기준은 5ha
 - (나이) 농지 양도인 및 양수인 나이에 제한은 없는 조건

- (요건 1) LSES 직불금 수령 전까지 모든 농지를 이전 처분(매도, 증여, 상속, 임대)할 것(승계인 수와 무관), 농지 임대의 경우 Farm Business Tenancy 하에 최소 5년간 임대
 - (요건 2) LSES 직불금 수령 전까지 기초직불제 수령과 관련된 권리포기와 함께 자격증빙서류를 작성하여 Rural Payments Agency에 제출
 - 권리포기가 제대로 이루어 안는다면, 그 부분만큼 LSES 수령직불금이 감소
- (준수사항) LSES 직불금 수령과 동시에 농업활동 복귀는 원칙적으로 불가
 - (패널티) 준수사항 미이행시 LSES 직불금 수령액을 반환
- (지급단가) 2019, 2020, 2021년 3년 평균 기초직불금 수령액 \times 2.35(상한액: £100,000)
 - 평균 기초직불금은 농지면적기준으로 산정되며, 단가는 £233.3/ha(우량농지), £231.6/ ha(비우량농지), £64/ha(습지)
 - 예를 들어, 기초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180ha일 경우 기초직불액이 약 £42,500이며, LSES는 £100,000(약 42,500 \times 2.35)
 - 3년간 평균 기초직불금 수령액이 £42,500 이하일 경우 정액직불금 총수령액은 상한액 이하라는 것을 의미
 - 기초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가 180ha 이하일 경우 정액직불금 총수령액이 상한액 (£100,000) 이하로 계산

1.4. 독일의 경영이양지원제도

- 농업인 노령연금을 활용하여 은퇴농업인의 노후생활비를 일정 부분 보장하고 생활비 수급 조건으로 은퇴 전 경영이양을 명시하여 경영이양을 촉진
 - 농업인 조기은퇴 및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통해 농지 전체를 양도하거나 전체 경작지의 85%를 청년농이나 구조개선 목적 법인에게 양수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
- 농지, 농장의 제3자 승계 지원정책의 하나로 공동이익토지회사(Lands edlug GmbH)가 농지직거래 사업(Hofbörse)을 운영하여 승계자가 없는 고령농과 농업에 진입하려는 청년농 간 농지 및 농장거래를 지원

그림 5-1. 독일의 농지직거래사업 거래구조



자료: HOFBORSE (<https://www.hofsuchtbauer.de/hofboerse>)

1.5. 유럽연합

- EU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조기은퇴지원제도를 1999~2013년간 3차에 걸쳐 시행
 - 유럽 공동농업정책(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내 농촌개발계획(Rural Development Plan) 정책의 하나로 농업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시행
 -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농업인 혹은 한계농업인의 조기은퇴를 유도하여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농으로 농업구조 변화를 추진
- 조기 은퇴 의사가 있는 고령농 중 농업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 혹은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우려를 일정부분 해소
 -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촉진하고자 고령농이 조기에 영농활동을 중단하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하여 영농활동 중단 후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 은퇴농에게 농업소득을 지원
 - 조기은퇴제도를 이용하여 은퇴하려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지나 농장을 승계하고자 하는 승계자는 경영자로서 은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영속하도록 전부 또는 일부 농지를 인수
- 조기은퇴제도에서 지원하는 은퇴 농업인의 조건은 1) 이양 시점에 55세 이상, 2) 이양 시점 이전에 10년간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
 - 지원금을 받은 은퇴 농업인은 상업적 농업활동을 중단

- 은퇴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은 ha당 10년간 최대 €100,000~€180,000
 - 10년간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1차 €100,000, 2차 €150,000, 3차 €180,000로 점차 증가
 - 연간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1차 €10,000, 2차 €15,000, 3차 €18,000
 - 지원금은 10년 이상 수급이 불가능하며, 70세를 넘은 농업인에게는 지원 불가
- 승계 농업인의 조건은 제도의 시행 시기마다 다르나, 3차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포함
 - 1, 2차 사업에서는 승계 농업인 조건은 적절한 농업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받기 전 최소 5년간 농업 활동에 종사
 - 3차 사업에서의 대상은 청년농 지원사업의 대상자여야 하거나, 50세 이하의 농업인 중 영농 규모를 증대시키려는 목적
 - 3차 사업 대상 중 청년농은 청년농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40세 이하로 처음으로 농업을 하려고 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교육 등을 수료하고 적절한 농업기술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농업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하는 조건

1.6. 시사점

□ 프랑스 사례와 같이 청년농업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

- 청년농업인의 농업부문 진입을 촉진하고 영농경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부문에 고용되는 경우 일정부분 소득을 지원
- 영농승계 이전 단계에 농업부문 취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이를 통해 영농승계를 모색하도록 하는 지원책도 필요
- 프랑스는 은퇴농에게 경제적 보상으로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는 대신 승계를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
 - 예컨대 승계자가 사전에 피고용인으로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보조하거나, 농장 승계 시 자산가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승계 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 지원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
 - 프랑스의 경영이양지원 사례는 경영이양 농업인과 승계자를 별개의 정책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영이양 과정을 보다 유기적·통합적으로 접근

- 프랑스의 사례는 향후 경영이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력의 진입과 진출을 분절된 방식이 아닌 연속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고령농과 청년농 간의 물적·인적 결합을 통해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 은퇴농가는 노후소득 부족문제에 직면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지원

- 영국과 독일의 경우 은퇴농에게 노후소득 부족문제를 보완하도록 일정기간 직접지원 실시
 - 고령농의 영농승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노후소득 부족문제라는 점을 강조
- 영국의 경우, LSES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1회성 사업으로서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는데 단기적인 사업 운영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지적
- EU의 ERS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3년 시행 후 중단되는 한계도 표출
 - 이는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중단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비용까지 포함할 정도의 큰 인센티브가 필요
 - 특히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농을 지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보다 더 큰 규모의 보상이 필요하므로 은퇴 지원금이 적어도 영농 지속시 얻을 수 있는 직불금보다는 유리하여야 한다는 시사점 제공

□ 경영이양직불이외 농지연금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의 지원도 실시

- 일본은 경영이양직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특별부가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영지원

2. 일본의 영농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2.1. 사업승계세제

- 농업법인의 경우
 - 후계자인 수증자·상속인 등이 원활화법의 인정을 받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그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과세액의 납세를 유예하고 후계자의 사망 등에 의하여 납세가 유예되고 있는 증여세·상속세의 납부가 면제하는 제도

○ 개인의 경우

- 청색신고(정규 소득신고)와 관련된 사업(부동산 대부사업 등은 제외)을 실시하고 있던 사업자의 후계자로서 원활화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경우
- 그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액의 납세를 유예하고 후계자의 사망 등으로 납세가 유예되고 있는 증여세 상속세 납부가 면제되는 제도

○ 대상 농지

- ①의 전체 혹은 채초방목지, ①의 2/3 이상 혹은 해당 농지 및 채초방목지와 함께 취득하는 준 농지, ②의 2/3 이상
- ① 1991년 1월 1일 기준 3대 도시권 특정 도시의 시가화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지역(生産綠地地區) 농지 및 채초방목지(생산녹지지역 도시계획 고시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생산녹지 중 특정 생산녹지 지정이 되지 않는 것 등은 제외) 등
- ② 농용지구역 내의 토지로서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農業振興地域整備計画)에서 농업상 용도구분이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로 되어 있으며, 10년 이내에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로서 농업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시정촌장(市町村長)이 임명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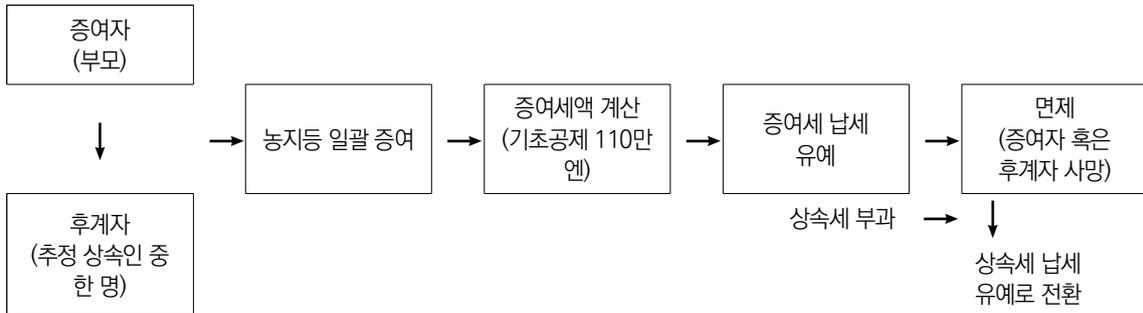
2.2.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 주요 내용

-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는 (구)농업기본법의 취지인 농업경영 근대화를 위하여 민법의 균분상속 등에 의한 농지의 세분화 방지와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 농업을 영위하는 자는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농지의 전부 및 채초방목지의 3분의 2, 해당 농지 및 채초방목지와 함께 취득하는 준농지의 3분의 2 이상을 농업후계자(추정상속인 1인에게)에게 일괄 증여하는 경우 후계자에게 과세되는 증여세 납세 유예
- 증여자 또는 수증자 중 어느 하나가 사망한 때에 증여세는 면제되는 제도
- 증여자의 사망으로 증여세액을 면제 받는 경우에는 증여농지 등(농지, 채초방목지, 준농지)을 상속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편입하고, 이 경우 농업을 계속할 경우 상속세유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이후 농업후계자에게 과세되는 증여세 납세를 유예하고, 증여자 또는 후계자 중 1명이 사망했을 때 면세

그림 5-2. 일본의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 자격 요건

- 증여/상속자는 농지(농지, 채초방목지 및 준농지)를 증여한 날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이양자의 조건
 - 증여자의 추정 상속인일 것
- 승계자는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농업위원회(農業委員會; 농업위원회를 두지 않는 시정촌은 시정촌장)에 의해 인증된 개인일 것
 - 농지를 취득한 날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
 - 농지를 취득한 날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지를 취득한 날 이후 신속하게 농업경영을 할 것
 - 농업위원회의 증명시 농업담당자¹⁹⁾로 되어 있을 것

19) (1)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2) 인정 신규 취농자 (3) 기본 구상 수준 도달자(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한 자)

2.3. 상속세 납세유예 제도

□ 목적

-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현되지 않는 높은 평가액(미실현가치)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면 농업을 계속하고 싶어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농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경영을 지속하는 상속인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를 마련
-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는 상속양도인 스스로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지만,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시가지구역 밖의 농지에 한해 특정 대부를 실시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2009년도 개정)

□ 세제지원 내용

- 상속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상속인 상속인이 해당 농지 및 초지 등을 계속 농업용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임대 혹은 인정도시농지임대(認定都市農地貸付) 등을 하는 경우 이들 농지 등의 가격 중 농업투자가격²⁰⁾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고,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는 제도
- 대상농지
 - 피상속인이 농업 용도로 사용하던 농지
 - 농지중간관리사업(農地中間管理事業)에 의한 대부(임대)(이하 “특정대부”)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가지 구역 밖의 녹지 및 채초방목지
 - 도시농지 임대차 촉진에 관한 법률(都市農地の貸借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에 따라 인정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임대 또는 일정 시민농장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임대(이하 “인정도시농지대부 등”)가 이루어지고 있던 생산녹지지역 내 농지

20) 농지 등이 영구적으로 농업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서 국제청장이 결정한 가격(예: 도쿄도의 논이면 90만 엔/10a)

□ 납세 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 피상속인의 범위

- 사망일까지 영농을 하고 있던 자
- 생전 일괄 증여한 자
- 사망일까지 특정임대 또는 인정도시농지대부 등을 실시하고 있던 자

○ 상속인의 범위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을 개시하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는 자
- 생전 일괄 증여를 받은 수증자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특정임차 또는 인정도시농지대부 등을 실시한 자

○ 대상 농지

- 유산 분할되어 있는 농지 등
- 생전 일괄 증여받은 농지 등
- 특정대부 또는 장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영농이 곤란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임대 농지(채초 방목지 포함)
- 인정도시농지대부 등이 이루어지고 있던 농지

□ 유예세액 면제 조건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영농 시에는 납부유예를 유지하다 사망 후 면제 특징)
-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 유예를 받는 농지 등 전부에 대하여 생전에 일괄 증여한 경우
- 3대 도시권 특정도시 외의 시가화구역 내(생산녹지지역 제외)에서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1년 이상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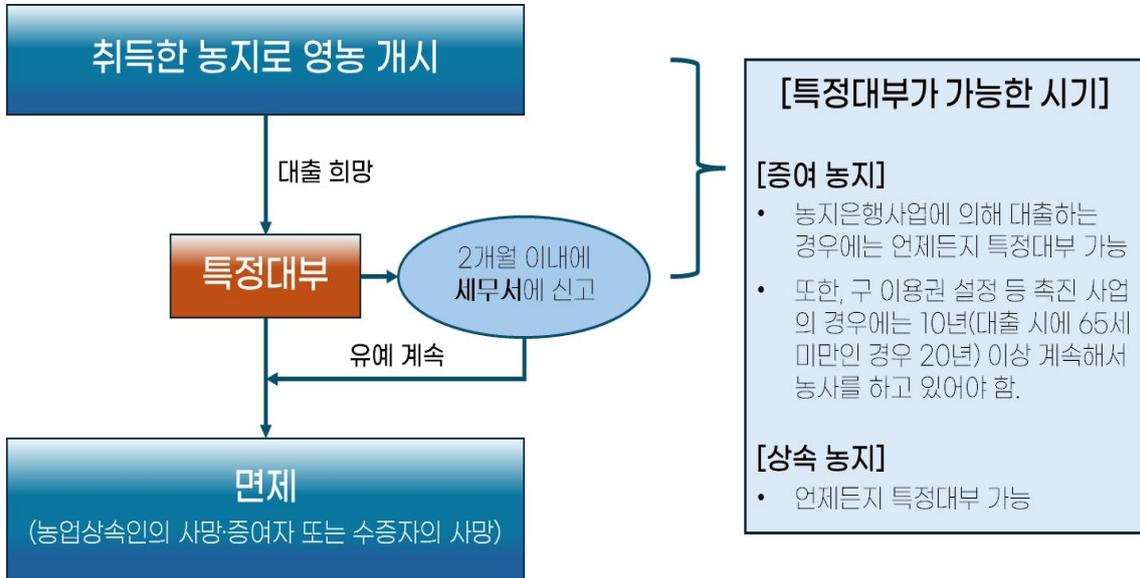
□ 납세 유예가 종료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상속세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세를 환수
 - 상속인이 농업 경영을 그만두는 경우
 - 납세 유예가 적용된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 전용 또는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
- 납세 유예 종료 예외의 경우
 - 특정임대를 한 경우(시가화구역 밖의 농지 및 채초방목지에 한함)
 - 장애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영농이 어려워져 임대한 경우
 - 인정도시농지대부 등을 한 경우(생산농지지역 내 농지에 한함)
 - 공공수용(公共収用) 등으로 농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이자세가 면제

2.4. 증여세 및 상속세의 납세 유예와 관련된 특정임대(特定貸付)

-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 유예 대상 농지 혹은 채초방목지에 대하여 농지중간관리사업 등으로 임대(특정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 유예가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유예
 - 농지중간관리사업(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하는 경우 대상
 - 특정임대 대상 농지는 시가지구역 외의 농지로 한정
- 경과조치로서, 2020년 4월 1일 이후 구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旧農業經營基盤強化促進法)의 이용권 설정 등 촉진사업(농용지이용집적계획; 農用地利用集積計画)에 따라 임대한 경우도 대상
 - 최장 2026년 12월 31일까지(지역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증여세 혹은 상속세 납세 유예 적용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정임대가 가능
 - 또한, 증여세 납세 유예 적용 농지에 대하여 (구)이용권 설정 등 촉진사업(旧利用權設定等促進事業)에 의한 임대를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제출기한부터 임대까지의 기간이 10년(대부 당시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20년) 이상

그림 5-3. 특정대부 절차 및 시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 절차

- 특정임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임대 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신고서에 특정임대에 대한 도도부현 지사 등의 증명서를 첨부)
- 임대 후 농지를 반환받거나 경작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시 임대하거나 직접 농업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소정의 절차 마련

□ 기타

- 20년간 영농을 계속하여 면제받게 되는 농업상속인이 특정대부를 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해당 면제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면제됨.
- 피상속인이 특정대부를 하고 있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나 농지 상속과 함께 새롭게 특정대부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특정대부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취득 후에도 계속 대부하여 납세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서에 특정대부를 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첨부해야 함.
- 이 경우 농업상속인과 농지 임차인 사이에 새로이 특정대부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해야 함.

2.5. 시사점

- 농지가 상속에 의해 비농업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용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에 대해 세제지원
 - 상속세, 증여세 납부로 인해 농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
- 상속/증여농지가 농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면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장기 유예를 추진
-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공제 확대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한 납부유예를 하는 사후관리방식의 지원
 - 상속인이 다음세대에 다시 농업용으로 상속하는 경우 유예된 상속세가 면제되고, 이는 후계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농업용으로 이용되면 영원히 상속/증여세 납부가 유예
- 농업용으로 활용되면 사전증여세 납부유예가 이루어지고, 증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자산으로 승계되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활용이 가능하여 생전에 사전증여가 활성화되는 장점을 제공
- 직계가족 상속/수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중간관리기구 등 공적조직을 통한 임대방식으로 불특정 창업농에게 증여/상속이 가능한 절차를 마련

3. 외국의 농업법인 정책

3.1. 일본의 농업법인제도

□ 일본의 농업법인 유형

- 일본의 농업법인은 우리나라와 같이 회사법인과 조합법인으로 구성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은 농업위원회에서 승인하는 별도의 농지소유자격법인으로 인정

□ 농업회사법인

- 유형은 주식회사, 합동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4형태의 법인

○ 주식회사:

- 자본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로 주식에 한정된 유한 책임이며, 이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
- 주주가 1명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출자 1주의 금액이 균일하면 금액에 제한이 없는 상태

○ 합동회사

- 조직의 설계나 이익 배분은 자유롭게 정관으로 정해지며, 구성원(사원)은 모두 유한책임
- 이사, 이사회, 감사역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대표자로서는 대표 사원을 둘 수 있지만, 그 이외는 업무 집행을 하는 사원 전원이 각자로 회사를 대표

○ 합명회사

- 경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회사로 설립 발기인은 2명 이상
- 출자방법은 현금, 현물, 노무, 신용이 있으며 수시분할 출자도 가능하고, 자본금의 제한은 없지만, 사원 전원이 무한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족 등의 소수 인원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인적 결합이 강한 회사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설립 발기인은 2인 이상으로 최저자본금 규제가 없는 회사
-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와 동일하지만 출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모으기 쉽게 하기 위해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을 1명 이상 두는 것이 필요

□ 농사조합법인²¹⁾

- 농협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농업생산 측면에서의 협업 추진으로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
- 농사 조합 법인은 사업형태에 따라 두 개 법인으로 구분
 - 1호 법인 : 유통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농작업의 공동화를 실시
 - 2호 법인 : 법인 스스로가 농업을 경영
 - 하나의 법인이 1·2호 양쪽의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2호 법인은 그 자체로 경영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농업인과 같은 하나의 농업경영체
- 농사조합법인의 설립요건
 -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성원(조합원)은 ①농협법상 농민, ②농협, 농협연합회, ③농지소유적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중간관리기구 등이 3인 이상 필요
 - 농민에는 농업 경영자(세대주)뿐만 아니라 후계자 등 농업 종사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 가족이 설립하는 것도 가능
 - 2호 법인의 경우 ① 조합원이 법인 설립후 농민자격이 취소된 "간주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3분의 1이하
 - 고용자를 포함한 상시 종사자 중, 조합원·세대원 이외의 자의 비율은 3분의 2까지 인정
- 농사조합법인의 사업범위
 - ①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립, 농작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업
 - ②농업경영(농업과 함께 실시하는 임업을 포함)
 - ③농업 관련 사업
 - ②와 ③의 사업은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사업요건.

□ 농업법인의 장점

- 농업경영을 법인화할 경우 경영상제도상의 장점
 - 농업경영상(인재확보 등)의 장점, 세제 및 대외 신용평가에서 유리한 점 등으로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촉진

21)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하지만 민법이 아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

- 농업법인의 장점으로 인하여 경영기반이 확립됨으로써 경영규모 확대, 사업 다각화가 추진
 - 또한, 신규 채용이나 지역 고용의 받침이 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이러한 법인화의 장점은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의 계속·발전을 위한 경영노력 속에서 창출되고 획득
 - 또한 법인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이 상승하거나 농지 등 상속세납세유예제도, 생전 일괄증여특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영내용,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법인화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

표 5-1. 일본의 농업법인화의 장점 내용

구분		내용
경영상의 장점	경영 관리 능력 향상	1. 경영책임에 대한 자각을 가짐으로써 경영자로서의 의식개혁을 촉진 2. 가계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관리 철저
	대외신용도 향상	1. 계수관리의 명확화나 각종 법정의무(설립등기, 경영보고 등)를 수반하므로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신용력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 2.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의해 상품 거래나 종업원 고용 등이 원활화
	인재 확보·육성	1. 노동환경 정비로 종업원 대우 향상, 고용 원활화 2. 법인 취업으로 초기 부담 없이 경영능력, 농업기술 습득이 가능해 신규 채용자 확보가 용이
	경영 승계 원활화	1. 법인의 임원, 사원 등 중 유능한 자를 후계자로 확보 가능 2. 법인으로서 경영·거래를 함으로써 사업승계 후에도 대외신용력이 지속
제도상의 장점	세제 측면의 우대	1. 소득 분배를 통한 사업주 과세 경감 2. 정률과세 법인세 적용 3. 임원 보수의 급여 소득화에 따른 절세 · 임원보수는 법인세에서 손금산입이 가능 · 소득세에서 임원이 받은 보수는 급여소득공제 대상 4. 사용인 겸 무임원 상여 손금 산입 5. 퇴직급여 등의 손금 산입 6. 결손금 9년간 이월공제(청색신고법인에 한함·개인은 3년간) 7.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활용(청색신고법인으로 인정농업인에 한함)
	사회보장 제도	1. 사회보험, 노동보험 적용을 통한 농업인 복리증진 2. 노동시간 등 취업규칙 정비, 급여제 도입을 통한 취업조건 명확화
	제도자금	1. 융자 한도액 확대 2.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슈퍼L자금)(인정농업인에 한함) · 대출한도 : 개인 3억엔(특인 6억엔), 법인 10억엔(특인 20억엔) · 원활화 대출: 최대 1억엔의 무담보·무보증 대출
	농지취득	1.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농용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농지취득부담 경감

□ 농업경영 법인화 지원 종합 사업(농업경영자 지원 사업)

○ 사업 목적

- 농업경영체의 법인화, 원활한 경영승계, 신규취농자 및 고용취농자의 정착 촉진 등 다양한 경영과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농업경영에 대한 상담체제를 정비하고 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진단, 경영과제에 적합한 전문가 파견·순회지도, 기타 개별 경영지원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의 법인화, 농업경영의 확립·발전, 경영자원의 차세대 승계 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사업 개요

- 1) 농업경영자 지원사업(정액) : 도도부현 단위에서 설치된 농업경영상담소가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농업경영법인화, 원활한 경영승계 등에 대한 경영상담, 경영진단, 순회지도 등의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
- 2) 농업경영 법인화 지원사업(정액) : 경영상담 등을 실시한 취약영농 등의 법인화에 대응하여 (정액) 25만엔을 지원하는 제도
- 3) 법인화 추진 위탁사업(정액) : 농업 경영의 고도화나 승계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사업
- 4) 후계자 회의·우량경영체표창사업(정액) : 전국 농업 후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뛰어난 농업경영체를 표창하는 사업

□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조건

- 농지소유적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농지소유적격법인은 별도의 인증 절차를 유지
 - 법인의 설립절차는 회사법에 근거하여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실시
- 다만, 법인 설립 후 농지소유적격법인으로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농지의 취득신청이 필요

- 또한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은 농지취득신청 시뿐만 아니라 농지의 권리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조건충족
 - 농지소유적격법인은 매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업위원회에 사업 상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 매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요건 적합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
- 설립한 법인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장래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농지를 소유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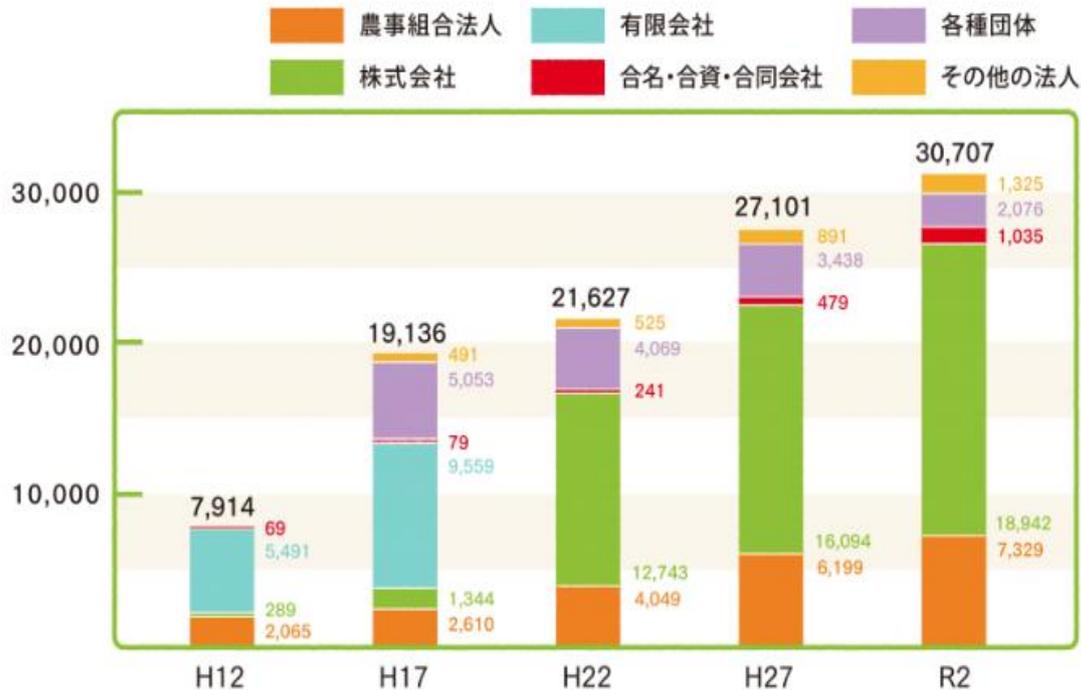
표 5-2. 일본 농지소유적격법인 요건

구분	내용
법인형태	1. 주식회사(비공개회사에 한함), 지분회사 또는 농사조합법인
사업요건	1. 매출액의 과반이 농업(판매·가공 등 포함)
구성원 의결권 요건	1. 농업 관계자 · 상시종사자, 농지를 제공한 개인, 지방공공단체, 농협 등의 의결권이 총 의결권의 1/2 이상 · 농지중간관리기구 또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를 통하여 법인에 농지를 대부하고 있는 개인 2. 농업인 이외의 구성원 ·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은 총 의결권의 1/2 미만
임원 요건	1. 임원(주식회사: 이사, 농사조합법인: 이사)의 과반수가 그 법인의 농업(판매·가공 등 포함) 상시 종사(원칙 연간 150일 이상)하는 구성원(주식회사: 주주, 농사조합법인: 조합원)일 것 2. 임원 또는 중요한 사용인(농장장 등) 가운데 1인 이상이 농사에 종사(원칙 연간 60일 이상) * (주)그룹 회사의 임원 겸무에 대하여 자회사(모회사가 총주주 의결권의 과반을 갖는 것)에 관한 특례도 있다(요건 있음).

□ 일본농업법인 수 추이

- 전국 : 일본농업법인협회(1999년 6월 28일 설립인가)
- 도도부현 : 47 도도부현에 법인 조직(지바현·미야자키현 이외는 임의 조직)
 - 농업법인화 정책의 추진으로 2023년 현재 농업법인 수는 5만개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

그림 5-4. 일본의 농업법인 추이



주 1) H17(平成17)년 (2005년) 이전에는 각종 단체의 공표자료 없음

2) H22(平成22)년 (2010년) 이후부터 주식회사에 유한회사(특례유한회사)가 포함됨

3) R2(레이와 2)년은 2020년에 해당

출처: 일본 농림업센서스, 일본농업법인협회 홈페이지

3.3. 프랑스 농업 법인 제도

□ 농업법인 유형

○ 프랑스의 농업법인제도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과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분

- 민법 농업법인은 우리나라의 영농조합과 같은 공동농업경영단(Groupement d'exploitations agricoles en commun, GAEC), 유한책임농업경영체 (Exploitation Agrico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EARL), 농업경영민사회사 (société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 SCEA) 등으로 구성
- 상법 근거 설립된 농업법인으로는 개인사업자(Entreprise individuelle), 유한책임1인경영체(EURL), 유한책임농업회사(SARL), 주식회사(SA) 등의 법인형태로 구성

표 5-3. 프랑스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법적 구분	개인형태	회사 형태		
		비법인	법인	
			유한책임 1인회사	2인이상
민사회사법	개인경영체 (Exploitation individuelle)	임의 회사1 (Groupement de frait)	유한책임농업경영체 (EARL)	공동농업경영단 (GAEC) 농업경영민사회사(SCE A) 등
상업회사법	개인사업자 (Entreprise individuelle)	-	유한책임1인경영체 (EURL)	유한책임농업회사(SARL), 주식회사(SA) 등

주: 유형상 회사지만 법인이 아닌 임의회사형태로, 1970년대 법인 영농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할 때 형성되었음.
 자료: 김수석·박석두(2006)「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 공동농업경영단(GAEC)은 조합법인으로 가족농이 확장된 법인으로, 농업 생산을 위한 노동과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도를 도입한 법인형태
 - 농자재 공동 구매를 통한 생산비 절감, 공동 농작업을 통한 노동력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농업을 조직화하기 위한 목적
 - 나아가 부모와 자녀 간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영농 후계자의 영농정착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도 담당
-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은 비농업인의 자본 참여를 허용한 법인으로, 농업인의 경영 자산과 개인 자산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공동농업경영단이 축소되고 구성원이 줄어들면서 법인 형태를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
 - 구성원이 모두 농업인일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1인은 농업경영인이어야 하고 농업인이 다수가 되어야 하는 조건
 - 참여자수는 1~10인이고 경영주와 배우자만으로도 EARL 구성 가능
 - 경영면적은 최대 10 SMI(최소 영농정착 면적)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최소 7,500 유로이고,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가 가능하고, 현물 출자 중 부동산은 회사 자본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만이 출자 가능

표 5-4. 프랑스 영농법인제도 비교

구분	민사영농조합 (SCEA)	공동농업경영단 (GAEC)	유한책임농업경영회사 (EARL)
자본	규정 없음	최소 1,500 유로	최소 7,500 유로
구성원	- 최소 2인, 최대 제한 없음 - 본인, 배우자만 구성 가능 - 비농업인, 법인 참여 가능	- 최소 2인, 최대 10인 - 비법인, 성년 농업경영인 - 본인, 배우자만 구성 불가	- 최소 1인, 최대 10인 - 비법인, 성년자 - 비농업인도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하나, 전체 출자금의 50% 이하 한도 - 본인, 배우자만 구성 가능
책임한도	-	출자 자본의 2배	출자자본 이내
투명성 원칙	-	- 구성원은 농업경영주 자격 보유 - 정책자금 지원 시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수혜	-
농업노동 참여	의무 아님	모든 구성원 의무	자본의 50% 이상을 출자한 구성원에 의무
의결권	출자지분에 비례	1인 1표	출자분에 비례
기타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GAEC는 경영체 상속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용	GAEC로 상속 후 후속 형태로 활용

- 농업경영민사회사(SCEA)는 농업법인 가운데 제약조건이 완화된 형태로 경영방식과 수익분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법인형태
 - 법인 구성에 최소 2인이 요구되지만 부부간 구성이 가능하고 법인과 비농업인도 참여 가능
 - 회사자본에 최소출자액이 요구되지 않고 영농면적에도 상한과 하한의 제한이 없으며, 구성원의 책임은 출자 비율에 따른 무한 책임 법인

□ 공동농업경영단(GAEC)

- 법인 구성
 - 구성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이며, 구성원은 모두 법적 연령 이상의 농업인, 가족농으로 성격을 유지하도록 구성원은 최대 10인 이하
 - 구성원 모두는 전임 농업인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GAEC 구성원의 결정 및 지사의 동의에 따라 GAEC 외부 활동을 수행 가능
 -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구성 불가 등 고용 노동력 관련 규제를 포함

- 자본금은 최소 1,500유로로 액면가가 7.5유로 이상인 동일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소유
 - 출자금은 현물출자, 현금출자, 노동출자가 가능
 - 대부분의 구성원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나 임차 농지를 공동농업경영단이 이용하도록 허용, 임차한 농지를 GAEC에서 이용할 때 소유자에게 GAEC 이용을 승인 받아야 하는 조건
 - 구성원은 GAEC의 채무를 자신이 소유한 자본의 최대 2배까지 책임
 - 구성원은 개인으로 누릴 수 있는 세금,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각 구성원이 보조금, 정책 용자, 세금 혜택 등을 신청할 수 있어 GAEC는 각 구성원의 혜택을 누적하여 함께 수령 가능
- GAEC의 의사결정
 -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며 주주 총회는 1인 1표 원칙이 적용
 - 구성원은 GAEC의 공동 농작업에 참여해야 하며, 보수로 매월 최소 1 SMIC(최저임금) 이상 6 SMIC 이하의 보수를 받음
- 설립은 법인의 본사가 위치한 지방정부에 정관과 각서가 포함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 지방정부는 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orientation pour l'agriculture, CDOA)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정부에서 결정
 - 승인 결정 후 GAEC는 최종 정관에 서명하고 지방정부에 등록

□ 농업경영체 현황

- 과거에는 농업경영체 중 개별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법인형태의 농업경영체가 절반에 육박하듯이 증가
 - 1998년에는 농업경영체의 93.3%가 개별농가이지만 2020년에는 개별농가의 비율이 58.4%로 줄고 회사형태의 농업경영체가 41.6%로 크게 증가

표 5-5. 연도별 프랑스 농업경영체 현황

단위: 천 개, (%)

구분		1988	2000	2010	2020
개별농가		948.7 (93.3%)	538.0 (81.0%)	341.5 (69.7%)	227.7 (58.4%)
회사	유한책임농업경영체 (EARL)	1.6 (0.2%)	55.9 (8.4%)	78.6 (16.0%)	74.9 (19.2%)
	공동농업경영단 (GAEC)	37.7 (3.7%)	41.5 (6.3%)	37.2 (7.6%)	42.9 (11.0%)
	임의회사 (Groupement de fruit)	14.2 (1.4%)	3.9 (0.6%)	1.0 (0.2%)	1.3 (0.3%)
	기타 (Autres Status)	14.6 (1.4%)	24.5 (3.7%)	31.6 (6.4%)	43.0 (11.0%)
	소계	68.1 (6.7%)	125.8 (19.0%)	148.5 (30.3%)	162.1 (41.6%)
합계		1,016.8	663.8	490.0	389.8

자료: Agreste - Recensements agricoles 1988, 2000, 2010 et 2020

- 유한책임농업경영체는 1998년 0.2%, 2000년 6.3%에서 2020년 11.0%로 증가하였으며, 공동농업경영단도 1998년 3.7%, 2000년 6.3%에서 2020년 11.0%로 증가
- 농업법인 형태에서는 공동작업 등 규모화를 추구하는 영농조합법인인 GAEC도 많이 설립
- 설립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법인 형태는 가족농인 1인 설립이 가능하고, 출자지분에 의해 책임이 분명한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의 형태로 가족농의 법인화가 촉진되는 추세
- 2020년 기준으로 개별농가는 소규모 농장의 비율이 높지만, 법인 농장은 중간 규모 농장이나, 대규모 농장 등 규모가 큰 농장이 대다수로 법인 농장을 통한 규모화가 진전
- 소규모 농장의 90.7%는 개별농가이며, 회사형태는 9.3%에 불과
- 중간농장에서 유한책임농업경영체와 공동농업경영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2.0%와 16.0%, 대규모 농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5.1%와 28.4%
- 공동농업경영단 중 대규모 농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51.3%, 절반 이상으로 공동농업경영단을 이용한 경영 승계 등으로 농업 규모화가 진전된 것으로 판단
- 낙농과 축산업에 일반적인 경영체는 공동농업경영단과 유한책임농업경영체로 나타남.

표 5-6. 2020년 기준 농장 규모별 프랑스 농업경영체 현황

단위: 천 개, (%), [%]

구분	영세소농 농장 (Micros exploit)	소규모 농장 (Petites exploit)	중간 규모 농장 (Moyennes exploit)	대규모 농장 (Grandes exploit)	
개별농가	97.6 (42.9%) [90.7%]	77.5 (34.1%) [74.7%]	40.7 (17.9%) [42.3%]	11.8 (5.2%) [15.2%]	
회사 형태	유한책임농업경영체 (EARL)	2.9 (3.9%) [2.7%]	12.6 (16.8%) [12.1%]	32.3 (43.1%) [32.0%]	27.2 (36.3%) [35.1%]
	공동농업경영단 (GAEC)	0.4 (0.9%) [0.4%]	4.4 (10.3%) [4.2%]	16.1 (37.5%) [16.0%]	22.0 (51.3%) [27.4%]
	임의회사 (Groupement de fruit)	0.6 (46.2%) [0.6%]	0.4 (30.8%) [0.4%]	0.2 (15.4%) [0.2%]	0.1 (7.7%) [0.1%]
	기타 (Autres Status)	6.2 (14.4%) [5.8%]	9.0 (20.9%) [8.7%]	11.5 (26.7%) [11.4%]	16.3 (37.9%) [21.0%]
	소계	10.0 (6.7%) [9.3%]	12.6 (8.5%) [12.1%]	60.2 (40.5%) [59.7%]	65.7 (44.2%) [84.8%]
합계	107.6 (27.6%)	103.8 (26.6%)	100.9 (25.9%)	77.5 (19.9%)	

주 1) 마이크로 농장은 표준총생산량(Production brute standard, PBS)가 25,000유로 미만, 소규모 농장은 25,000~100,000유로, 중간 규모 농장은 100,000유로에서 250,000유로, 대규모 농장은 250,000유로 이상임.

2) ()괄호는 경영체 내 비율, []비율은 농장내 비율을 나타냄.

자료: Agreste - Recensements agricoles 1988, 2000, 2010 et 2020

3.4. 시사점

□ 농업경영체에서 농업법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외국의 농업구조에서는 농업경영체 유형에서 점차 농업 법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²²⁾

-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체 수는 감소하면서도 농업법인의 수는 증가하는 바와 같이 농업의 법인화가 일반적 추세

22) 황의식 외 자료

- 농업구조에서 농업법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규모화된 농업경영체는 농업법인형태가 가장 큰 비중을 점유
 - 농업법인이 규모화에 보다 유리한 장점을 제공
- 농업법인도 다수의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된 소규모 법인이 증가
 - 가족농의 법인화를 위하여 1인 소유, 가족소유의 법인형태인 유한책임조합형태가 가장 큰 비중을 점유
 - 경영체의 상속 및 영농승계에 유리한 형태의 농업법인이 보다 많이 출현
 - 기업공개 등 다수 투자자 중심의 법인형태보다 가족농 중심의 법인형태가 다수를 점유
 - 농업영농승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족농의 농업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일본의 농사법인의 경우 설립인원을 3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가족형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가능
 - 농업법인에서 유한책임형태가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농업인 외부출자도 가능한 형태
- 영농승계의 애로요인
 - 영농승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승계준비가 필요하지만 승계자가 적절한 보수를 받고 승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고용상태유지가 필요
 - 가족경영협약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부족의 문제에 직면
 - 고령이양농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자산을 모두 승계하기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가족농의 경우 후계인력이 없는 경우 제3자 영농승계 활성화가 한 방안
 -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법인제도 개선이 효과적인 수단
- 농업법인제도 개선을 통한 영농승계 활성화 필요
 - 일본, 프랑스와 같이 가족농이 1인 소유 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 영농승계에서의 가족농의 한계를 극복
 - 농업소득세 면세 등으로 고용인력에 대한 임금 지불, 이의 손금산입 불가 등의 요인 문제
 -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1인 가족법인의 도입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4. 일본의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승계 활성화²³⁾ 사례

4.1. 경영승계대책과 특징

□ 영농경영승계의 중요성

- 농업법인에서 규모 확대가 진행되고,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가공과 직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경영이 증가
 - 사업영역의 확대에 따라 농업법인의 경영자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
- 경영에서는 [유형자산(인적 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지적자산)]을 어떤 식으로 이 용할 것인지가 중요
 - 특히, 지적자산(노하우와 고객과의 신뢰관계 등)의 승계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후계자를 결정하여, 그 능력을 양성하는 등의 빠른 대책이 중요
 - 농업법인은 경영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분야별 지적자산(기술, 정보 등)도 분산 되어 있기 때문에 후계자 육성이 필요
- 승계하는 자산의 구성요소
 - 사람(경영)의 승계 : 경영권
 - 자산 승계 : 주식, 자금(운전자금, 차입금 등), 사업용자산(설비, 기계, 농지 등)
 - 지적 자산의 승계 : 경영이념, 직원의 기술과 기능, 노하우, 경영자의 신용, 거래처와의 인맥, 고객 정보, 인허가, 지적재산(브랜드, 상표, 상호)

□ 법인경영의 경영승계 장점

- 농업법인의 장점은 경영자의 교체 시기와 경영자와 소유자 등의 권한 및 책임 소재 명확
 - 법인은 임원을 교체할 때에 등기사항을 변경하기 때문에 언제 경영자가 교체되었는지,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제도상 명확히 제시
 - 법인경영의 내부, 외부의 관계자 또한 권한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특징

23) 일본에 있어서 농업법인의 경영승계 사례는 일본 農林水産省에서 2019에 발간한 “円滑な経営継承のために(法人版)”를 참고로 작성

- 이양하는 자산은株式이 중심
 - 많은 자산은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양하는 자산은株式이 중심
- 직원(비친족)의 임원 등용
 - 법인경영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크고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직원을 경영진에 등용하여 경영을 승계하는 사례도 존재
 - 이 경우에는 우수한 직원의 확보, 직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장제도 확립, 직원의株式 습득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4.2. 경영승계의 유형

- 농업법인의 경영승계유형은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
 - 친족이 농업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를 후계자로 선정하여 영농이양을 하는 경우, 비교적 영농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장점
 - 친족이 없는 경우 고용 직원을 후계자로 설정하여 영농이양을 하는 경우, 농업경영방식 등의 유지가 용이하고, 후계자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후계자가 농업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자금력이 부족할 단점도 존재
 - 마지막으로 농업법인 내 적격 후계자가 없는 경우 외부에서 제3자 영농승계자를 찾아 승계하는 경우로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은 있지만 농업경영이 올바르게 이 전되기는 어려운 단점도 상존

표 5-7. 일본의 농업경영승계 유형의 구분

유형	장점	단점
가족내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자로부터 심정적으로 수용 용이 - 후계자를 조기에 결정하여 장기간 경영이양 준비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내에 경영 능력과 의욕이 있는 후계자 부재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후계자 결정이나 사업용 자산 등의 집중이 곤란 - 후계자 본인의 의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종업원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내 후계자 후보가 없는 경우에도 후계자 확보가 용이 - 업무에 정통하기 때문에 다른 종업원 등의 이해를 얻는 것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내 승계와 비교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 후계자가株式 취득 등의 자금력이 부족 - 후계자로서 조직 내에서 계획적으로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
제3자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넓게 후계자 후보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 - 현재 경영자가 사업(지분)을 매각하여 이익을 획득하여 노후소득 확보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조건(후계자의 경영이념, 종업원의 계속 고용, 매각 가격 등)을 충족시키는 후계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 - 후계자를 확보해도 이해당사자의 이해나 협력 등을 얻지 못해 후계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승계 완료까지 확실하게 경영을 지원할 필요

□ 친족에 의해 승계

- 친족에게 승계를 하는 경우 : 친족 내 승계는 현재 경영자의 아들 및 딸이 후계자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이외에도 사촌 혹은 사위가 후계자가 되는 경우
 -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용이
 - 후계자를 조기에 결정하여 장기적인 준비 기간을 확보가 가능
- 유의해야 할 사항
 - 친족 내에 경영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애로
 -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후계자의 결정과 사업용 자산으로의 집중이 어렵다는 점
 - 후계자 본인의 이양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

□ 친족 외 승계(직원 등)

- 직원 등 비친족이 승계하는 경우
 - 공동창업자, 임원, 부장 등의 직원, 우수한 젊은 직원 등이 후계자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경영자의 자녀 등의 중간 연결자로서 일시적으로 비친족이 승계하는 경우도 가능
 - 친족내에 승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도 후계자를 확보하기 용이
 - 업무에 정통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후계를 이해받기 쉬운 점
- 유의해야 할 사항
 - 가족 내 승계와 비교하여 관계자로부터 심리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후계자 후보가 주식 취득 등 자금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 후계자로서 조직내에서 계획적으로 인재를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

□ 친족 외 승계(제3자)

- 친족과 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근처에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 외부인재를 영입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방안
 - 넓은 범위에서 후계자 후보를 구하는 것이 가능
 - 현재 경영자가 사업 매각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

- 유의해야 할 사항
 - 희망조건(후계자의 경영이념, 직원의 연결고용, 매각금액 등)을 만족하는 후계자 확보가 어렵다는 점
 - 후계자가 확보되어도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지 못하여 후계자가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

4.3. 경영승계 유형별 사례

- 경영승계 유형
 - ① 경영의 형태 (1가구 1법인인지, 협업경영인지)
 - ② 후계자경영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지
 - ③ 후계경영자의 인원수
 - ④ 후계경영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짐.

□ 1가구 1법인의 경우

- 1가구 1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후계경영자가 가족(자녀)며 1명인 경우.....「1가족형」
 - 후계경영자가 복수인 경우.....「1가족·후계자복수형」
 - 후계경영자가 가족(자녀)와 직원(비혈연자)인 경우.....「1가족+직원형」
 - 혈연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적임자선택형」
 - 비혈연자에게 사업 양도(또는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제3자 승계」

1) 1가족 1법인 후계경영자가 가족이면서 한 명인 경우

- 특징과 유의점
 - 농업경영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타입으로 경영승계 기본형
 - 후계경영자는 취농할 때부터 차기 경영자가 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가 중심과제

- 가족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공통의 목표 설정과 같은 의견 일치룰 이루기 쉬운 측면도 있지만, 업무상 지시와 후계경영자의 능력 평가, 급여 수준의 결정 등이 애매해지기 쉬워 후계경영자의 의욕 저하와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 가능

2) 1가족 1법인에서 후계경영자가 가족(자녀)며 후계경영자가 복수인 경우

○ 특징과 유의점

- 가족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 중 1명이 취농을 하는 것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규모 확대로 복수의 자녀가 취농하는 경우가 증가
- 후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형제간의 역할 분담과 경영 내의 입장, 차후의 법인대표 선택 등의 갈등문제 발생
- 특히, 현재 세대가 은퇴한 이후에 형제 중 누가 농장을 경영할 것인지를 생각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분사화가 가능한 부문도 고려해 두는 것도 중요

3) 1가족 1법인에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비혈연자)도 후계경영자가 되는 경우

○ 특징과 유의점

-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후계경영자의 업무가 증가하여 책임도 무거워지고, 이에 대비하여 직원을 경영진(경영 간부)으로 등용하여, 법인으로서의 체제 강화를 도모
- 자녀는 [1가족형]과 [후계자 복수형]과 같은 대책을 진행
- 직원은 중도에 퇴직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근무태도와 인간성을 감안하여 인재를 채용하고 근무실적과 신뢰 관계가 있는 인재를 이사로 등록

□ 협업경영의 경우

○ 협업경영(1가구 1법인 이외, 지역영농법인 포함)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구성원의 가족(자녀)가 후계경영자가 되는 경우 ……「복수가족형」
- 가족(자녀)와 같이 직원(비혈연자)도 후계경영자가 되는 경우…「복수가족+직원형」
- 혈연의 배제하고 우수한 사람을 후계경영자로 선택하는 경우 「적임자선택형」

표 5-8. 일본의 농업법인 영농승계 유형과 특징

타입	경영모체	후계경영자		특징
1가족형	1가구 1법인	가족	1인	가족내에서 후계경영자를 확보하여 승계(후계자 1인)
1가족·후계자복수형	1가구 1법인	가족	복수	가족내에서 후계경영자를 확보하여 승계(후계자 다수)
1가족+직원형	1가구 1법인	가족과 비혈연자	복수	가족과 같이 직원도 후계경영자의 일원이 됨.
복수가족형	협업경영	가족	복수	가족내에서 후계경영자를 확보하여 승계(후계자 복수)
복수가족+직원형	협업경영	가족과 비혈연자	복수	가족과 같이 비혈연자도 후계경영자의 일원이 됨.
적임자 선택형	1가족 1법인 협업경영	가족 또는 비 혈연자	1인 또는 복수	혈연 신경쓰지 않고 승계 구조를 법인 내에서 만들고, 후계경영자로서 적합한 사람에 승계함.
제3자 승계	1가족 1법인	비혈연자	1인	가족 내에서 경영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비 혈연자에게 승계

4) 협동경영에서 후계경영자가 가족(자녀)만인 경우

○ 특징과 유의점

- 후계자는 취농시점에 장래의 경영진이 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후계자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지가 중요한 과제
- 후계자가 복수이기 때문에 능력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평가방식을 정비
- 경영의 대표자에게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후계자 중 어떤 식으로 대표가 정해지는지가 중요
- 또한, 다음 대표의 인선과 관련하여 후계자 뿐만 아니라 현재 임원과 직원을 포함한 법인내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

5) 협업경영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비혈연자)도 후계경영자가 되는 경우

○ 특징과 유의점

- 후계자군 중 가족(자녀)는 취농 시점부터 장래 경영진에 등용될 것이라고 결정된 경우가 대다수이고, 비혈연자인 직원도 특별한 부적격사항이 없을 경우, 비교적 빠른 시점에 장래의 경영진 후보가 되는 경우를 많기 때문에 후계자군의 능력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지가 중심과제
- 가족(자녀)에 대해서는 [복수가족형]과 같이 대응하면 되지만, 거기에 [1가족+직원형]처럼 직원의 채용과 능력양성, 주식취득에의 대응도 진행

6) 혈연과 관계없이 적임자를 선발하여 경영승계를 진행하는 경우

○ 특징과 유의점

- 후계경영자가 가족이거나 가족이 아닐지라도 동일한 인재육성 방식을 진행하여 경영자(경영진)로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
- 법인 내에서 후계를 위한 방법을 만들어야 하고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할 필요
- 법인의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한 후, 다음 경영자 또는 경영진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여, 그것에 맞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인재를 외부에서 확보하는 것도 검토.
- 주식의 양도, 취득은 가족(자녀)도 직원과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기본

□ [제3자승계]의 특징과 대책

○ 사전에 양도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비혈연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 특징과 유의점

- 비혈연자인 승계자(후계자)에게, 농지와 기계, 설비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영 노하우, 거래처 등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 특징
- 수년간의 공동경영을 거쳐서 경영을 이양한 경우에는 승계자의 입장과 보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장래에 대표를 교체하는 형식
- 어떤 조건으로 경영을 이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자만으로는 협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

6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기본방향

- 영농승계는 농업기반 유지를 통한 농업생산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에 효과적인 정책방향
 - 농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후계세대가 확보되어야 하고, 농업부문 고정자산인 농지 등 농업자산이 효과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중요
 - 후계세대 확보를 위해 청창농 육성정책(3만명 육성 목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 창업농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영농기반을 갖춘 농가에서 영농승계농을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
 - 영농승계 청년농이 더 규모화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유지하여 영농정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
 -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영농승계형인 직계가족으로 경영이양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영농상속 공제 등 세제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청년승계농의 농업기반 확보 측면보다는 고령농의 영농경력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요건
- 영농승계는 농업경영기반이 크게 축소되지 않고, 후계세대에 이전되어 농업경영의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
 - 고령농의 영농기반이 보다 승계계획에 의해 잘 유지되면서 후계세대에 이전되도록 하여 후계세대가 안정적으로 영농기반을 유지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

- 이양세대의 농업기반이 상속에 의해 세분화되지 않도록 하고, 농업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농기반이 유지관리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 번째 중요한 과제는 사망 후 사후적 상속에 의한 승계보다, 영농능력이 부족한 고령농이 사전에 계획적(영농기반 유지), 체계적으로 영농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전영농승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책과제
- 의료발달로 인하여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농이 영농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상실의 경우)에도 영농을 계속한 상태로 되어 있어 농업기반을 계속 소유
 - 농업기반이 이전되지 않음으로써 잘 이용되지 않고,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업투자도 어려운 비효율적 이용상태에 직면
- 현재 영농상속은 대부분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영농승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농상속 공제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가장 큰 정책적 지원 수단
 - 사전 계획적 영농승계를 위하여 가족영농협약제의 활용, 경영이양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 미흡
- 사전에 계획적인 영농승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농증여과세특례규모를 영농승계를 상속에 의한 영농승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둘째, 영농승계에 대한 지원은 농업기반이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승계되도록 영농승계자산이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의 사후관리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이 중요
- 영농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의 물적기반인 농지 등을 사전증여 혹은 사후 상속 등에서 후계세대에 그대로 이전(승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
 - 농업의 규모화, 전업화 등을 추진한 것이 영농승계(상속) 과정에서 농업기반이 분할되거나(경지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 농지 등 농업자본이 농업 외부로 유출되어 경쟁력 제고정책의 효과를 상실하는 문제 발생
 - 그러면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모화 등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다시 확대하여야 하는 순환모순에 직면

- 농지 등 농업용 자산은 자산적 수단이기도 하지만 농업생산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분할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영농증여세, 영농상속세 납부 등에서 농지 등이 매각되어 농업생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개인소득으로 귀속되는 시점에 납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영농승계과정에 수반된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농업용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확보의 시간 부족으로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되어 농업기반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
- 현재는 사전적으로 영농증여 및 영농상속공제 중심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속인의 농업인이라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발생
 - 농업용 자산이 계속 농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상속의 형평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인식의 문제
- 영농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증여세 납부방식을 영농에 활용되고 있는 시간에는 계속 유예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
 - 농업생산 목적의 생산수단으로 활용될 때에는 세부담을 완화하여 영농기반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영농을 그만두고 생산목적이 아닌 재산소득으로 실현할 때 유예된 세 부담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방식으로 개편
- 셋째, 영농승계 필요성 인식과 전문지식 함양 지원 등으로 영농승계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
- 보다 효과적인 영농승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승계농 등의 영농승계의 중요성과 필요한 과제에 대한 지식을 제고하는 등의 영농승계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청년창업농과의 면담을 하여 보면 영농승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영농승계에 대한 사전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
 - 영농승계를 위한 주요한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가의 인식도 부족하여 제도개선 요구 부족
- 영농승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고령농 부모와 승계농간의 갈등관계 심화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 고령농 생전에 증여 등으로 영농승계를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인식 제고 필요
 - 사전준비를 통한 영농자산의 사전 증여방법, 영농자녀와의 역할분담, 기여소득의 분배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

- 영농승계 분위기의 조성 과 승계과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마련
 - 청창농교육과정에 영농승계 교육 강화, 세무 등 전문적 상담(컨설팅)에 소요되는 실비의 지원 등으로 영농승계 문화를 확산

2. 영농승계 활성화 문화 조성 및 사전 영농승계 컨설팅 지원

□ 청창농 교육 및 영농교육 과정에서의 영농승계 관련 정책 교육 강화

- 영농승계 과정, 특히 사전 영농증여에 의한 영농승계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한 부분이 있고, 보다 체계적이고, 오랜 시간 준비를 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 사전 영농승계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만이 아니라 고령농에게도 왜 중요한 과제 인지 등에 대한 인식이 중요
 - 현재 고령농은 사전 영농승계의 효과성, 필요성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속의 문제로 접근한 경우가 다수 발생
- 예를 들어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구비조건,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의 세대분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이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례 발생
 - 토지, 시설 등 영농 자산이 모두 부모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는 노동력만 제공할 경우, 자녀가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세대분리를 많이 추진
 - 그런데 부모와 세대분리 때문에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안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는 세대분리가 조건이 아니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표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정책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시키는 것 필요
- 효과적인 영농승계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 증여에 의한 영농승계의 효과와 필요성, 상속과정 등에 대한 세제상의 지식전달 교육을 강화
 - 절세를 위한 지식, 형제간의 증여 및 영농상속에 대한 갈등사례와 해소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
 - 예를 들어 영농승계 자산의 범위, 승계자의 구비조건 등에 대한 지식전달

- 영농승계, 세제문제 등에 대한 강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비대면 교육참여도 높은 바와 같이 매우 필요한 지식이라는 인식이 팽배
 - 사전 영농증여에 의한 영농승계, 자녀와 협약관계 구축 등의 교육 강화
 - **영농승계에 대한 길라잡이 홍보책자의 마련 등으로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산**
 - 영농승계에 대한 장점과 서로의 이해가 중요하고, 복잡한 지식이 요구되지만 서로 논의를 기피하는 풍토
 - 영농승계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지 않아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은 낮은 수준이고, 당사자도 인지도가 낮은 수준
 - 영농승계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구비하고, 사전 증여와 상속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길라잡이를 제시
 - 사전 홍보를 통하여 영농승계의 장점, 전문적 지식 등 인식을 확산
 - **영농승계와 관련한 컨설팅 자문, 추진비용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 영농승계를 위한 증여와 상속절차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해에 의한 부자간, 형제간 갈등이 발생
 - 사전에 영농승계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안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승계 창창농에게 컨설팅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1회에 한하여 지원)
- ※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영농승계에 대한 자문료 실비지원사업을 추진(1천 유로 수준) 등

3. 사전계획적 영농승계 활성화를 강화하는 지원체계 구축

□ 필요성

- 영농승계정책은 사전 승계인 영농증여와 사후 승계인 영농상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제지원은 영농상속에게만 유리하게 설정
 - 그러다 보니 사전증여에 의한 영농승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후에 가족간 갈등이 확산되어 농업기반이 붕괴되는 현상도 발생
- 의료기반의 확대에 따라 생존연령이 상승하고, 영농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농업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영농계획, 농업투자의 확대 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 발생
 - 영농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망 후 상속문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는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영농자원의 관리 및 영농투자가 어려운 실정
- 사전 영농승계가 이루어져야 영농기반의 유지와 영농지식의 공유가 가능하고, 사후 상속 시 형제, 가족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효과도 제공
 - 고령화로 영농능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농업기반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사후 영농상속은 준비 없는 영농승계가 발생
- 사전에 농지 등 경영이양을 받아야 이를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 등으로 영농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영농승계가 중요
 - 농지를 승계농가가 소유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영농과 자금조달능력을 갖추어 지속적인 영농 성장이 가능하므로 사전증여가 중요
- 영농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적 영농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증여에 의한 영농승계를 활성화
 - 영농기반의 유지와 농업구조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 영농승계 활성화

영농승계 과정에서 사전 영농증여의 필요성

- 부모로부터 영농승계를 받는 데 있어 주요 장애요인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상속을 통한 재산 배분 갈등 문제
 - 1983년도에 부모님을 도와 수도작으로 영농 활동 시작,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세무사 상담을 통해 증여세를 적게 내는 범위 내에서 자식들에게 증여,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 자산은 며느리(응답자의 처)와의 매매거래 방식으로 승계(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유리)
 - 나머지 자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에게 상속, 상속 문제로 형제간 갈등이 심한 상태
- 농가 사례조사(평택)에서 보면, 영농승계에 있어 큰 장애요인 중 하나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영농을 함께 하는 경우, 영농에 대한 의사결정권이나 경제권 등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과 수익의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
 - 다수 영농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로 경제적 독립을 통한 조기 영농 정착, 부모와의 갈등 완화 등 영농승계 효율성 제고 필요.
 - 사례조사(낙농) : 사전증여를 통한 영농승계는 증여계획 수립완료, 그에 따라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고, 자산배분 계획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증여·상속에 대한 가족 간 갈등도 전무.
- 부모가 생전 자산 배분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
 - 별도의 유언 없이 사후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부모 봉양 여부나 자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계비속에게 1/n의 비율로 각각 배분이 되기 때문에 가족간 갈등이 발생
- 부모가 영농자산을 영농후계자인 직계비속에게 살아계실 때 증여방식으로 최대한 자산 정리하여 사후 상속으로 인한 가족간 갈등 방지 필요
 - 직계비속 중 영농후계자에게 영농자산을 사전 증여하고, 영농외 자산은 사후 기증여분을 고려하여 형제들에게 상속되도록 유언 작성
 - 영농증여공제로 세금부담이 완화되고, 영농자산이 영농후계자에게 100% 이전되므로 영농승계 효과 증대

□ 영농증여와 영농상속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유지

- 현재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를 사전증여하는 영농증여과세특례에 의한 증여세 감면 및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
 -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5년간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상 농지 등 및 농지등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농업법인의 출자지분 외 농기계설비, 고정식비닐온실등의 설비, 농업회사법인 등의 지분 등은 증여세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감면한도도 5년간 1억 원으로 낮은 수준
- (대안 1) 사전 영농증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방안 1)은 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에 대상업종으로 농업, 임업, 어업은 가업상속대상 업종으로 확대하여 적용대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제규모를 확대
 - 가업승계증여세특례제도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생전에 가업상속대상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특례 부여²⁴⁾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일반 증여세율 10~50% 적용하여 5년간 산출세액 1억원 감면, 5년간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 (대안 2) 영농증여세과세특례 공제 규모와 영농상속 공제 규모가 동일하도록 영농증여특례제도의 공제규모를 현재보다 대폭 확대
 - 영농증여와 영농상속은 농업기반의 효율적 이용, 농업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
 - 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영농증여세 납부유예제와 함께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사전증여의 대상재산의 범위도 농지에서 농업용 자산(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지분)으로까지 확대 필요
 - 사전영농증여특례제는 농지등과 농지등을 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분이 감면 대상이며, 농기계설비, 고정식비닐온실 등 건물(축사는 감면) 등 사업용 자산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개선

24) 과세액가 10억(약 2.4억 세액감면효과(=10억 x 30% - 0.6억))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초과하는 증여세과세과액에 대하여는 10%~20% 과세, 5년간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 영농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필요

- 영농증여세 공제제도가 농지에만 한정되고, 공제한도도 적어 사전 영농승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
 - 부모와 후계세대가 같이 공동영농을 하고자 하여도 증여세 부담으로 농지 및 지분 등의 증여가 곤란하여 공동영농이 어려운 실태
 - 승계자녀는 영농지분이 없어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하는 관계가 되어 부모와 갈등이 심하게 발생
- 사전증여를 통한 영농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업용 자산이 농업에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고, 증여재산을 처분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 일본의 영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와 같이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고, 증여자가 사망 후 증여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 때 영농상속공제 등으로 지원
 - 영국 등에서도 영농증여세 납부유예를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는 사례
 - 이런 경우 사전영농증여와 영농상속의 지원조건이 일치하여 사전증여에 의한 영농승계가 활성화되는 효과

□ 영농증여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을 농지이외에까지 확대

- 현재 영농증여세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은 농지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농업고정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농업창업을 위해서는 농지기반도 중요하지만 점차 시설농업, 농업기계화 등이 진행되면서 농업이외의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
 - 농지만 증여한다고 하여 농업승계가 되지 않고, 추가로 다른 고정자산투자를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야 하는 애로 요인에 직면
 - 농지는 타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농업용 고정자산은 농업적 목적으로만 활용되므로 오히려 영농기반 유지에 유리
- 영농증여세감면 대상 자산의 범위를 농지에서 농업용 고정자산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

4. 사전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경영이양직불금의 지원방식 개선

- 현재 농업경영이양 직불제는 영농승계보다는 신규진입 창업농 육성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는 방식
 - 경영이양직불 지원은 영농이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양자 고령농가의 노후소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 경영이양직불금(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부족한 영농후계세대의 확보를 위하여 고령농의 농지기반이 유동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농의 노후소득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 경영이양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소득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매각(예정)에 대해 지원
 - 경영이양직불의 경우 직계가족에게 경영이양하는 경우에는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제3자 영농승계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
 - 직계비속 외에 타인에게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매각조건)에만 지원하고, 직계 영농승계에는 지원이 불가하여 사전 영농승계를 제약
 - 고령농이 사전증여 할 경우 노후소득 부족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영농증여를 하지 않고 영농기반을 계속 소유하게 되어 농업자산의 비효율적 관리가 지속하는 문제
 - 고령농업인의 가족 내 영농승계 및 농업법인으로 전환 후 승계 등에는 활용 불가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
 - 타인 매도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과거 경영이양직불 지원 실적(매도, 장기임대 구분)을 볼 때 임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후 영농 복귀문제가 지적된 점을 고려할 때 현 제도도 사업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
 - 농지매각이란 다양한 요인(자녀 상속, 자녀의 반대, 지가상승의 가능성 등)이 작용하여 신청이 낮은 가능성이 우려
 - 예를 들어 후계승계인력이 있는 경우 그 농지는 타인에 매각하기보다는 영농상속을 하고자 하므로 경영이양직불을 신청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
 - 과거 경영이양직불금 지원실적을 보아도 장기임대에 의한 사업비중이 높았던 점도 이를 반증

□ 직계비속 및 사위(며느리) 등으로 증여/매각의 경우에도 경영이양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

- 경영이양직불금 지원은 후계영농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므로 지원대상을 영농지속 여부로 보는 것이 적합
 -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공제초과 자산의 경우) 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현금증여)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
 - 신규창업농의 경우에는 영농정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영농승계를 통한 후계세대 확보를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향
- 경영이양직불금 지원에서 직계가족의 영농승계 청창농에게 사전 증여에 의한 경영이양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완화
 - 이는 고령농이 사전증여에 의해 노후소득 부족의 문제를 보완하고, 사전 영농승계를 활성화
- 일본의 경우 특례부가연금을 지원하지만 직계가족을 배제하지 않고, 단 일정부분 이상을 이양하여야 한다는 조건(제3자 이양은 소규모 이양도 가능)
 - 프랑스 경영이양지원은 창년창업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그만두고 후계농에게 농장을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한 경우 지원
 - 영국의 경우에도 은퇴직불금을 지원하지만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금지의 차별하지 않는 조건

□ 영농승계형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 경영이양직불제에 있어 직계가족으로 농지를 매각, 또는 증여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지원방식을 도입
- 고령농이 자신의 농지를 승계농에게 사전증여에 의해 이양한 경우, 일정규모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
 - 매각이 아니라 사전증여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농지매각 소득이 없어서 노후소득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역차별에 직면
- 직계가족에 대한 사전증여방식의 영농이양에 대한 경영이양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

□ 영농승계형 농지연금특례상품 도입

- 고령농의 농지에 대해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농지연금사업이 도입되고, 경영이양 촉진을 위하여 매도약정형농지연금특례상품을 도입
 - 이는 직계비속 자녀가 아닌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

5. 농업법인제도의 개선을 통한 3자 영농승계 촉진

□ 가족농의 농업법인 전환을 통한 영농승계를 활성화

- 농업법인으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지만 1인 가족농의 법인화는 미흡한 상태
 -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자의 1/3 이상이 농업인
- 농업의 법인화는 인재 확보 및 육성에 유리하고, 법인의 임원, 직원 중심으로 영농승계가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농업의 법인화가 촉진
 - 일본 및 프랑스 등에서는 가족농이 1인 소유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기반을 마련하여 농업경영체가 점차 가족농 중심에서 농업법인형으로 확대되는 추세
 - 선진국의 경우 가족농 중심에서 점차 농업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고, 농업구조에서도 가족농보다 농업법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가족농을 1인 이상의 농업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직원의 고용이 유리하고, 이를 통한 후계인력의 확보 등으로 영농승계를 활성화
 - 법인의 경우 영농승계 과정에서 후계인력(자녀 혹은 직원)에게 영농책임을 이양하더라도 고령농이 일정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법인 수익의 일정부분을 노후소득으로 충당 가능
 - 합자회사 등 농업법인에 의한 영농승계는 형제중 비농업인이 있어 상속받은 영농자산(농지)을 매각하지 않고, 농업법인의 지분으로 유지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유리
- 가족농의 경우 1인 법인제를 도입하여 줌으로써 가족경영협약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간 역할분담 및 책임, 그리고 수익배분인 보수체계 등을 명확히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영농승계에 유리
 - 청년승계인력이 농업자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영농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고령농-승계농 간의 갈등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유리

- 그렇지만 현재는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역차별되거나 정책 지원에 불리한 요소가 많아 법인화를 저해
 - 가족농의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보다 농업법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농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
- 가족농의 농업법인으로 전환 활성화를 위한 영농조합법인 설립 기준의 완화
 - 가족농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유한회사 및 합자회사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으로 전환은 어려운 실정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인가기준을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여 가족농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
 - 일본의 농사법인(영농조합과 유사한 조직)의 경우에도 설립기준을 3인으로 완화하여 가족농이 법인화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는 사례 참조
 - 영농조합법인을 경제주체보다 민법에 의한 조합의 일반적 규정을 인용하다보니 5인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농업구조 전환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
- 가족농의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부여
 - 현재는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되는 많아 법인화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
 - 가족농보다 농업법인이 더 불리한 조건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

농업법인에 불리한 규정 사례(예시)

- 농업법인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사업주 혹은 고용취업자가 되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
 -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조지원 등이 안되는 문제 발생
- 자녀가 법인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는 경우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농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고, 이는 농외소득으로 평가되어 영농증여 및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여 책임감을 갖도록하고자 한 것이지만 영농증여는 농지에 한정하고 있어 증여세가 증가하는 문제
- 농업법인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아 농지처분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
 - 축산농가의 경우 축종별 마리수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으로 합산 등의 유리한 점이 있으나 농업법인에게는 적용이 배제
-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현물출자한 자산은 세액감면이 되지 않아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농지등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영농조합법인 외의 농업법인 지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규정이 없어 영농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시세제상 불이익이 발생

- 농업법인에 취업한 경우에도 신규취농과 동일하게 생활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 마련
 - 일본의 경우 신규농업인력 생활비 지원대책에서 창농인력만이 아니라 농업법인에 고용된 청년인력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수립
- 농업법인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농업인으로 자격을 부여하여 영농상속공제 등에서 2년 자경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여 영농상속공제에 포함
 - 이러한 청년농업인이 취업하여 영농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농업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영농상속 공제 등에서 농외소득 3,700만원에 합산하는 것을 제외

- 농가가 농업법인으로 전환하여 자녀에게 지분을 사전 증여한 것을 활성화하도록 농지이외 농업법인 지분상속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치를 도입하고, 5년간 영농활동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자녀가 농업법인의 지분을 일정수준 보유하고 있어야 단순 고용자가 아닌 영농의 사결정 등에서 부모와 동일한 참여가 가능한 권한이 발생

6. 영농상속공제 및 사전 영농증여 세제기반 개선

□ 필요성

-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의 유지를 위한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
 - 농지 등 부동산 자원의 악용 소지(비농업용으로 활용되면서 세금감면 이익만 편취)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농업부문과 달리 영농상속공제를 엄격하게 운용
- 농업용 자산의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분할매각할 경우 분할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농지, 농업용 건축물) 함께 매각하여 농업기반이 축소되는 우려
 -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잔여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농지 등을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특히 농지가격이 급등한 지역인 수도권외의 경우)
- 농업기반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영농상속 및 영농증여 세제개선방향
 - 첫째, 과세부담으로 인하여 농업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공제규모를 비농업부문의 가업승계와 차별성을 해소
 - 둘째, 영농상속, 증여의 이양자와 승계자의 자격요건을 개선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업적 활용을 모니터링
 - 셋째, 농업용자산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산도 상속공제대상으로 확대

□ 가업승계 상속공제와 차별성 완화를 위한 영농상속공제 규모의 확대

- 가업상속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2)의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부터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까지 300억에서 600억 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
 - 농업의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차별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
 - 스마트농업(축산) 및 시설농업이 확산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중요한 과제이므로 기존에 정책적으로 육성한 전업농가의 영농승계가 효과적인 수단
 - 농업도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하므로 영농상속과정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면 안되는 상황이므로 가업상속공제와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
-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차별성을 두는 것은 농지라는 부동산을 사후관리기간 외 매각 등 비농업부분으로 이전되기 쉽다는 인식이 바탕
 - 농지 등이 농업용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다면 가업상속공제와 차별성을 두는 것은 부적합
 - 농지 등이 농업용으로 계속 활용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므로 차별성을 해소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영농상속공제한도 제약으로 인한 영농문제

- 축산농가, 시설농가 등 자산 가액이 큰 농가는 영농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 지급을 위해 상속 농지를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
 - 땅을 팔면 영농기반이 사라져 영농을 유지할 수 없거나 낮은 거래가격으로 재산상의 문제발생하고, 기 영농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부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
 - 소, 돼지 등 대가축은 영농상속 공제대상 자산이 아니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 그러나 가축이력제 등으로 영농기반 유지 실태 파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공제 대상 영농자산으로 인정이 가능
- 유리온실, 농업용시설(농업법인의 경우 APC 등)의 경우 자산의 분리가 어려운 농업용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곤란
 - 분할매각이 어려운 농업용 자산(농지, 농업용 건축물)은 일괄 매각해야 하므로 농업기반이 축소되는 우려

- (대안 1)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농업도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 가업상속공제로 일원화하고, 영농상속공제제도를 폐지
 - 이 경우 적용이 어려우면 개인 가족농은 현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농업법인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
- (대안 2)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재 30억 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별도 적용하는 방안
 - 예를 들어 현재 공제한도인 30억 원을 50~100억 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상속부담 완화
- 공제한도를 확대할 경우 악용소지의 문제가 우려되면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강화
 - 농업자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

□ 영농상속공제 대상자 조건의 개선

-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조건을 개선
 - 경제성장에 따라 농외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2000년 농가부채특례법 시행에서 도입된 제외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시와 비교하여 GDP성장률을 반영하면 인상 필요
 - 도시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도 2000년 3,516천 원에서 2023년 6,372천 원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이의 조정이 필요
 - 농외소득 3,700만 원이면 비농업인으로 산정하는 것을 7,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 및 조정 필요
- 농업외소득의 평가에 있어서도 영농관련법인에 종사하여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얻는 소득은 농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므로 농업법인 종사자 근로(임금)소득은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개선
 - 농업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영농기술과 경영지식을 습득하고, 안정적으로 승계를 위한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영농승계를 위해 장려하여야 할 사항인데 이를 차별화하는 것은 문제. 즉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농업인 인정하는 것과 모순
 - 청년의 영농정착을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법인에의 취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영농승계 촉진을 위해서도 필요²⁵⁾
 - 특히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전업농도 법인소득이 농외소득으로 합산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25) 일본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서는 농업법인에 취업한 경우에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전 2년부터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이 적합
 - 농외취업을 한 청장년의 경우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65세 이전)의 경우에는 후계자에게 제외하고 있으나 고령농이 자연사한 경우 이 조건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²⁶⁾
 - 2년 종사의 상속조건도 중요하지만 이후 영농지속 여부인 사후관리기간(5~8년 이상 영농종사)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즉, 2년 영농경력이 없더라도 영농상속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사후관리기간 내 농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면제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상속세 납부 등으로 인하여 농지를 매각하여 영농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개선

□ 영농증여과세특례 개선

- 사전에 영농승계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보장의 3절에서 설명하였던 것을 참조하여 재정리
- 영농증여과세특례에 대해 5년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농지에 대해 영농증여세 과세면제되는 것을 보다 완화
 - 먼저 증여세 과세면제 한도를 기업승계와 동일하게 인상 및 세율조정하고²⁷⁾, 증여대상 자산의 범위도 농지만이 아니라 농업용 고정자산으로 확대
 -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영농증여에 대해 증여세 납부유예를 하고(영농목적 외 매각 시 증여세를 과세),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자산으로 편입하여 영농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 장기적으로는 영농상속 및 사전증여 공제를 확대하고, 농업용으로 자산이 활용되는 것인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 영농상속공제 제도악용의 소지 등으로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조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제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선호
 - 영농을 지속하고 있으면 영농상속 및 증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
 - 영농상속 및 증여의 경우 5년간의 사후관리 조건을 부여

26)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직접 영농 조건 적용 배제

27) 과세 가액 300억원 한도, 과세 가액 10억 원 미만은 전액 감면, 10억 원 초과 120억 원까지 10% 세율, 120억 원 초과 20% 세율

- 영농상속의 사전조건을 강화하기보다는 영농지속 여부인 사후관리기간을 강화하여 영농지속 시(5~8년, 10년 이내) 정도에 따라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 현행법 상 5년 이내 상속공제대상 영농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100%를 취소하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전액 과세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
 -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8년 이상으로 늘리고(5~8년, 10년 이내), 영농지속 기간에 따라 상속세 공제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
 - 일본의 경우에는 이양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면 승계농이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 한 상속세는 납부유예제 도입
 - 농업을 지속하는 한 상속세 부담을 배제하여 농업경영규모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방향 추진
 - 국세청이 농업용 활용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우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업직불금 관리기관이 협업하여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
 - 농업공익형직불제는 사후관리기능으로 상호준수의무를 다하는가를 모니터링하므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상속공제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 지원 모니터링과 같이 사후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국세청에 통보하여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더 엄격한 관리방식
- 사위(며느리)에게 영농증여에 대한 특례제도 도입**
- 현재는 직계비속이 아닌 영농을 하는 사위(며느리)에게 농지를 사전증여(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제특례가 없는 상태
 - 1인 자녀가구의 수가 많아지면서 직계비속이 아닌 가족이 영농을 승계하는 사례가 증가
 -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매각에 의해 이양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농지매입 자금이 없는 경우 불가능한 여건
 - 직계가족이 아닌 사위(며느리)에게 농지를 사전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특례를 도입
 - 영농을 담당하는 사위(며느리)가 영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소유의 농지기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영농승계를 도입

직계비속 이외 가족에게 농지증여세 과세특례 도입

- 영농을 하고 있는 사위(며느리)에게 농지를 사전에 증여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 특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이정원 기고문)
- 영농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농의사결정권 등이 확대
 -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정지원의 대상 등을 위해 농지기반의 확보가 필요한 조건

- 사위(며느리)에게 영농증여가 가능한 조건으로 사전에 일정기간 영농을 담당하고, 사후관리기간(약 5년) 동안 해당농지를 계속 영농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관리
- 제3자 영농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창농 농업자금을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영농증여세과세특례에 포함
 - 제3자 영농승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 창농한 청창농이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는 많은 자금이 필요
 -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도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는 부채규모가 증가한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지원대책을 마련
 - 청창농이 농업에 전업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부모로부터 자금증여를 받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비농업부문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제외한 특정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증여세과세가액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의 증여재산공제와 10% 단일 세율을 적용
 - 증여세=(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 10%
 - 한도 50억원(10명 이상 신규고용의 경우에는 100억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대상 업종에는 농업은 제외
 - 농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비농업인 부모로부터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자산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에 직면
 - 이러한 요인이 농업부문 제3자 영농승계, 창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농업창업농이 비농업인 부모로 자금을 증여받아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경우 영농증여 혹은 영농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의 영농증여세 공제의 과세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농업을 포함하는 방안
 - 혹은 별도의 영농창업투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방안을 마련

참고문헌

- 김태훈, 박지연, (2018), 「경영이양직불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마상진·김남훈. (2019). “청년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분석”. 농촌경제, 42(1), 27-49.
- 손지용. (2020). 「한우 사육농장 영농승계자의 현황과 성공요인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 이미향, (2023), “청년농업인 농지이용 실태와 수요 중심으로 농지지원 확대 방안 솔루션 찾기 : 뉴스테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적 이슈와 함께”, 「2023 농업농촌의 길」, GS&J
- 이상호. (2020). 「영농승계의 성공적 정착모델 개발」. 농촌진흥청.
- 임소영·김남훈·하인혜. (2019).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 김수린. (2022),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조승연·민선형·김정승. (2022). 「고령농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주재창. (2018). 일본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및 프로그램. 세계농업, 210, 19-40.

부록 1. 영농승계 실태조사표

I. 승계농업인 현황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이상
3. 영농경력 : ① 5년이내 ② 6년~10년 ③ 11년 ~15년 ④ 15년이상
4. 장남여부 : ① 장남이다 ② 장남이 아니다
5. 부모 연령 : ① 50대 ② 60대 ③ 70대 ④ 80대이상
6. 부모와 동거 여부 : ① 동거 ② 미동거
7. 영농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부모 연고지 고향, ②비연고지 농촌, ③비연고지 도시
8. 영농종사 경영체 법인 유무 : ① 개인 ② 법인(법인 내 지위: 대표, 임원, 직원)
9. 주요소득작목 : ① 식량작물 ② 채소 ③ 과수 ④ 특용작물 ⑤ 축산
⑥ 유통가공 ⑦ 체험 등 6차산업
10. 경영면적 및 사육두수는 얼마입니까?
① 논: _____ 평, ② 밭: _____ 평, ③ 하우스: _____ 평
④ 과수원: _____ 평, ⑤ 한우: _____ 두, ⑥ 젓소: _____ 두,
⑦ 산란계: _____ 수, ⑧ 육계 : _____ 수 ⑩ 기타(_____)
11. 경영체 등록은 본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부모님과 동일한 작물(축종)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II. 경영승계(공동경작)과정

※ 영농승계란 (조)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장기임차)하거나, 함께 영농을 경영하였던 지인인 제3자의 농장(형제)을 임차 혹은 장기구매 조건 등으로 농장경영기반을 승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13.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어떤 형태로 농사를 시작하였습니까?

- ① (조)부모의 농장을 돕는 형태로 경영에 참여
- ② 토지를 승계 받아 독립적으로 영농 시작
- ③ 농지를 구입(또는 임차)하여 농사를 시작
- ④ 농업법인을 만들거나 참여하여 시작
- ⑤ 농장이나 농업법인에 실습보조로 취업 후 시작

14. 현재 농장 경영권을 (조)부모로부터 승계하였거나 승계중에 있습니까?

- ① 부분 승계 ② 완전 승계 ③ 형제분 임차관리
- ④ 법인지분 승계 ⑤ 창농을 위해 법인(농가) 취업 중

15. 영농시작 연도와 승계 시작연도는 언제입니까?

- ① 영농시작 연도 : _____ 년, ② 승계시작 연도 : _____ 년
- ③ 언젠가 승계 예정 상태 ④ 영농승계 계획이 없는 상태

16. 자산의 영농 승계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승계하였습니까?

- ① 가족 내 증여 또는 상속 ② 같이 영농한 제3자 농지승계(임차, 부채승계 조건)
- ③ 농업법인 참여형으로 창농 ④ 창업농 후 임의 농장 구입

17. (조)부모, 형제로부터 승계한 농지가 현재 본인의 경영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체 (100%), ② 50% ~ 100%, ③ 0% 이상 ~ 50% ④ 전무(0%)

18. 자산 승계에 필요한 자금(증여세 납부 등)은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 ① 가족 내 무상 증여 또는 상속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③ 영농을 위해 적절한 자금 및 농지 매각 ④ 장기임대차로 활용

19. 경영을 승계한 농장의 농지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1억미만 ②1억이상~5억미만 ③5억이상~10억미만 ④10억이상~50억미만 ⑤50억이상
20. 경영을 승계한 농장의 영농시설과 기계 등 자산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1억미만 ②1억이상~5억미만 ③5억이상~10억미만 ④10억이상~50억미만 ⑤50억이상
21. (조)부모가 소유한 영농기반중 본인에게 이양하거나 계획중인 영농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음 ② 0% 이상 ~ 50% ③ 50% ~ 100% 미만 ④ 전체(100%)
22. (조)부모의 영농승계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고령화로 영농능력 부족 ② 사고 탈농 ③ 도시로 이농 계획 ④ 사망
23. (조)부모는 자녀에게 영농승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모든 농지의 조기승계를 적극지원 ② 모든 자녀에게 농지를 공평하게 상속
 ③ 영농상속을 하는 것을 반대 ④ 사망 이후에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기대
24. 영농이양 이후 부모는 생활비를 어떻게 확보하거나 하실 계획입니까?(모두 체크)
 ① 부분적으로 영농지속 ② 농지매각, 예적금 활용
 ③ 농지 임대후 임대료 수입 ④ 자녀로부터 생활비 충당
 ⑤ 경영이양직불금 등 정부 지원금
25. 영농승계과정에서 가장 힘들었거나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같이 영농하고 있는 부모와 영농의사결정(투자결정), 생활방식의 차이
 ② 가족 형제간의 상속자산 배분에 대한 갈등문제
 ③ 영농상속에 필요한 자금부담, 상속세 납부의 문제
 ④ 세제정보 등 정보의 부족문제
 ⑤ 영농기술과 지식부족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애로 문제

26. 영농승계나 (조)부모와 공동영농(농업법인 포함)하면서 다음 항목이 장애요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농지 구하기가 어려움					
시설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이 부족					
증여나 상속에 대한 법률 정보가 부족					
농장경영 운영기술이 미숙					
경영 및 재배기술을 상담해 줄 전문가 부족					
부모님과 의사소통에서 문제 발생					
승계자 이외 자녀와의 유산갈등					
지역주민과의 갈등					
사람과의 교류(결혼, 사고 등)가 문제					

Ⅲ. 정책 평가

27. 정부나 지자체는 청년들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영농정착과정에서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다음 정책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	중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이양농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제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영농가업승계 공제					
영농기술 및 경영 관련 교육연수					
농지 취득이나 임대와 관련한 소개 및 알선					
정착 장려금(보조) 지원					
주거지 취득 및 임대 관련 소개 및 알선					
멘토 또는 기존주민, 관련단체와 교류 지원					
농업기술, 기반·자금 등 원스탑 종합지원					

28. 귀하의 영농정착과정에서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다음 정책들은 충분히 잘 지원되고, 제대로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양농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제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영농가업승계 공제					
영농기술 및 경영 관련 교육연수					
농지 취득이나 임대와 관련한 소개 및 알선					
정착 장려금(보조) 지원					
주거지 취득 및 임대 관련 소개 및 알선					
멘토 또는 기존주민, 관련단체와 교류 지원					
농업기술, 기반·자금 등 원스탑 종합지원					

29. 영농참여(창농) 과정 및 정착과정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영농기반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논밭의 농지 ② 트랙터 등 농기계 ③ 가축, 축사 등 고정자산
- ④ 유리온실, 연동온실 등 ⑤ 과수원 등 ⑥ 금융자산 및 부채 등

30. 영농참여(창농) 과정 및 정착과정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농지 등 영농승계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조금 높다 ③ 보통이다. ④ 효과적이지 않다.

31. 영농창농 과정 및 정착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의 정부지원이 더 효과적입니까?

- ① 영농준비단계 ② 창농 정착단계(1~3년) ③ 정착후 발전(영농확대) 단계

(※ 영농승계 공제한도)

32. 그동안 본인은 농장 상속을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 ① 5억원 이하 ② 5억원~10억원 이하 ③ 10억원~15억원 이하
- ④ 15억원~30억원이하 ⑤ 30억원 이상

40. 경영에 참여하는 역할과 대가 등은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가족경영협약제도란 “농가 구성원이 참여하여 농장 경영목표와 계획을 수립한 후, 역할분담과 성과분배, 근로조건과 경영승계 등의 항목에 대하여 가족간 논의 결정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귀하는 가족경영협약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이 있다 ③ 모른다

42. 가족경영협약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 제3자 승계)

43. 현재 승계자가 없는 고령농가가 많습니다. 이들의 농지 및 시설을 가족이 아닌 신규 청년농(제3자)에게 일정 기간의 연수 기간을 거쳐 승계하도록 돕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44. 제3자 승계시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양자의 노후생활자금 부족 ② 이양자 가족과 친척들의 반대
③ 승계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두려움 ④ 잘 모르겠다

45. 제3자 승계에 적합한 지역범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동일 작목반 ② 마을내 ③ 동일 읍면 ④ 지역 상관없음

46. 고령농업인이 은퇴하려할 때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기반을 출자하고, 지분을 소유, 배당받으면서 승계자를 대표하고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면 제3자 승계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효과가 없다.

53. 상기의 46번 문항과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본인 자산을 가족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 ②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 ③ 증여 및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 ④ 단계별 영농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 ⑤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 ⑥ 가족 구성원의 화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 ⑦ 농장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 ⑧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 ⑨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 ⑩ 기타 ()

부록 2. 영농승계 실태조사 집계표

문항			응답자수	(비율)
1	성별	남	152	(76.0)
		여	48	(24.0)
2	연령	20대	116	(58.0)
		30대	69	(34.5)
		40대	13	(6.5)
		50대 이상	2	(1.0)
3	영농경력	5년 이내	126	(63.0)
		6~10년	56	(28.0)
		11~15년	9	(4.5)
		16년 이상	9	(4.5)
4	장남여부	장남이다	102	(51.0)
		아니다	98	(49.0)
5	부모 연령	50대	100	(50.0)
		60대	82	(41.0)
		70대	16	(8.0)
		80대 이상	2	(1.0)
6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	95	(47.5)
		비동거	105	(52.5)
7	영농지역	부모 연고지·고향	157	(78.5)
		비연고지 농촌	35	(17.5)
		비연고지 도시	8	(4.0)
8	농업법인 여부	개인	167	(83.5)
		법인	33	(16.5)
9	주요소득작목	식량작물	42	(21.0)
		채소	34	(17.0)
		과수	29	(14.5)
		특용작물	19	(9.5)
		축산	57	(28.5)
		유통가공	7	(3.5)
		체험등6차산업	12	(6.0)
11	경영체 본인명의 여부	그렇다	145	(72.5)
		아니다	55	(27.5)

문항			응답자수	(비율)
12	부모와 동일작목 여부	그렇다	142	(71.0)
		아니다	58	(29.0)
13	영농시작형태	(조)부모 농사 돕기	123	(61.5)
		토지승계 후 영농시작	10	(5.0)
		토지 구입(임차)	56	(28.0)
		농업법인 설립(참여)	1	(0.5)
		농업법인(농가) 취업	10	(5.0)
14	영농승계 여부	부분 승계	133	(76.9)
		완전 승계	27	(15.6)
		형제분 임차관리	5	(2.9)
		법인(농가)취업중	8	(4.6)
16	영농승계 유형	가족 내 증여·상속	116	(58.0)
		제3자 농지승계	14	(7.0)
		농업법인 참여형 창농	17	(8.5)
		창농 후 농장 구입	53	(26.5)
17	경영규모 중 승계농지 비중	전무(0%)	45	(22.5)
		0~50% 미만	75	(37.5)
		전체(100%)	31	(15.5)
18	승계비용 (증여세 등) 조달 방법	가족 내 무상 증여·상속	97	(48.5)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63	(31.5)
		영농자금 및 농지 매각	14	(7.0)
19	승계농지 금액	1억 미만	79	(39.5)
		1~5억 미만	75	(37.5)
		5~10억 미만	28	(14.0)
		10~50억 미만	15	(7.5)
20	승계영농자산 규모	1억 미만	83	(41.5)
		1~5억 미만	69	(34.5)
		10~50억 미만	18	(9.0)
		50억 이상	4	(2.0)
21	부모영농기반 중 본인에게 이양한 비중	없음(0%)	64	(32.0)
		0~50% 미만	78	(39.0)
		전체(100%)	20	(10.0)
22	부모의 영농승계 이유	고령화로 영농능력 부족	174	(87.0)
		도시로 이농 계획	16	(8.0)
		사망	7	(3.5)

문항		응답자수	(비율)
23	영농승계에 대한 부모입장	모든 농지 조기승계 적극지원	118 (59.0)
		자녀에게 공평하게 농지상속	63 (31.5)
		영농상속 반대	3 (1.5)
		사망 이후 자연스러운 선택 기대	16 (8.0)
24	영농이양 후 부모 생활비 조달 계획	부분적 영농 지속	134 (67.0)
		농지매각, 예적금 활용	56 (28.0)
		농지 임대료 수입	49 (24.5)
		자녀로부터 생활비 충당	88 (44.0)
		경영이양직불금 등 정부지원금	44 (22.0)
25	승계과정 중 애로사항	부모와의 영농의사결정, 생활방식 차이	120 (60.0)
		가족 간 상속자산 배분 갈등	6 (3.0)
		상속세 등 영농상속자금 부담	30 (15.0)
		세제정보 등 정보의 부족	9 (4.5)
		영농기술·지식 부족으로 인한 경영 애로	35 (17.5)
29	승계받은 영농기반 (복수응답)	논밭 등 농지	118 (59.0)
		트랙터 등 농기계	66 (33.0)
		가축, 축사 등 고정자산	56 (28.0)
		유리온실, 연동온실 등	25 (12.5)
		과수원 등	26 (13.0)
		금융자산 및 부채 등	55 (27.5)
30	영농승계 효과	매우 높다	123 (61.5)
		조금 높다	48 (24.0)
		보통이다	25 (12.5)
		효과 없다	4 (2.0)
31	정부지원이 효과적인 영농 단계	영농준비단계	65 (32.5)
		창농 후 정착단계(1~3년)	91 (45.5)
		정착 후발전(영농확대) 단계	44 (22.0)
32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	5억원이하	182 (91.0)
		5~10억원 이하	14 (7.0)
		10~15억원 이하	2 (1.0)
		15~30억원 이하	0 (0.0)
		30억원 초과	2 (1.0)
33	증여·상속세 마련 방법	전혀 납부하지않음	71 (35.5)
		적당한 자금활용	97 (48.5)
		상속·증여 농지담보로 차입	22 (11.0)
		농지 매각	10 (5.0)

		문항	응답자수	(비율)
34	현행 증여·상속세 공제한도 만족 여부	충분하다	46	(23.0)
		부족하다	84	(42.0)
		모르겠다	70	(35.0)
35	영농증여·공제 한도 적정수준	현행(30억원)	47	(23.5)
		50억원	53	(26.5)
		100억원	47	(23.5)
		300억원	16	(8.0)
		600억원	9	(4.5)
		600억원 이상	28	(14.0)
36	공제한도 확대 필요 이유	농장규모확대	72	(36.0)
		법인화로 자산규모확대	31	(15.5)
		비농업부문과의 형평성도모	27	(13.5)
		농업승계 활성화	57	(28.5)
		기타	13	(6.5)
37	농장경영에서 본인의 역할	주도적으로 농장경영참여	116	(58.0)
		농장경영 일부참여	47	(23.5)
		고용형태로 농장경영참여	33	(16.5)
38	농장경영 참여 대가 수령 주기	정기적	82	(41.0)
		비정기적	75	(37.5)
		받지 않음	43	(21.5)
40	경영참여내용 문서화 여부	예	43	(21.5)
		아니오	157	(78.5)
41	가족경영협약제 인지 여부	잘 알고 있다	25	(12.5)
		들어본 적 있다	49	(24.5)
		모른다	126	(63.0)
42	가족경영협약제 필요 여부	매우 필요	49	(24.5)
		필요	68	(34.0)
		보통	68	(34.0)
		불필요	10	(5.0)
		전혀 불필요	5	(2.5)
43	제3자 연수 승계제도 도입 필요 여부	매우 필요	75	(37.5)
		필요	68	(34.0)
		보통	41	(20.5)
		불필요	9	(4.5)
		매우 불필요	7	(3.5)
44	제3자 승계 시 애로사항	이양자 노후생활자금부족	37	(18.5)
		이양자 가족의반대	57	(28.5)
		승계자의 약속 미이행 우려	74	(37.0)
		잘 모름	32	(16.0)

문항		응답자수	(비율)
45	제3자 승계 적합 지역 범위	동일 작목반	34 (17.0)
		마을내	27 (13.5)
		동일 읍면	53 (26.5)
		지역 상관없음	86 (43.0)
46	농업법인형 제3자 승계 효과 여부	매우 효과적	54 (27.0)
		효과적	69 (34.5)
		보통	63 (31.5)
		효과 없음	14 (7.0)
47	법인설립 의사	있다	138 (69.0)
		없다	62 (31.0)
48	법인참여형 영농승계 부모 동의 여부	동의할 것	129 (64.5)
		동의하지 않을것	21 (10.5)
		모르겠음	50 (25.0)
49	법인참여형 영농승계 형제 동의 여부	동의할 것	116 (58.0)
		동의하지 않을것	25 (12.5)
		모르겠음	59 (29.5)
50	법인형 영농승계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	다양한 세제혜택	83 (41.5)
		규모확대로 사업확장 가능	84 (42.0)
		법인지분 단계적승계 가능	22 (11.0)
		기타	11 (5.5)
51	법인형 영농승계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	함께 출자할 동료 부족	64 (32.0)
		법인 설립절차의 까다로움	44 (22.0)
		농업법인의 폐쇄적 의사결정	29 (14.5)
		농업법인제도를 잘 몰라서	49 (24.5)
		기타	14 (7.0)
52	적합한 영농승계 방법	개인 승계	139 (69.5)
		법인 승계	57 (28.5)
		제3자승계	1 (0.5)
		농장폐업	3 (1.5)
53	적절한 영농승계 방법의 이유 (복수응답)	본인 자산을 가족에게 줄 수 있음	108 (54.0)
		신속한 의사결정가능	87 (43.5)
		증여 및상속세 절감	69 (34.5)
		단계별 영농승계 가능	54 (27.0)
		사업영역 확장 가능	59 (29.5)
		가족 구성원의 화합 유지	48 (24.0)
		농장의 지속적 경영 가능	93 (46.5)
		후계자가 없음	14 (7.0)
		안정적 노후 생활 자금 필요	29 (14.5)

26	영농승계 또는 (조)부모와 공동영농 중 장애요인 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농지 확보어려움	14 (7.0)	20 (10.0)	52 (26.0)	51 (25.5)	63 (31.5)
시설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부족	4 (2.0)	6 (3.0)	30 (15.0)	69 (34.5)	91 (45.5)
증여나 상속법률 정보 부족	6 (3.0)	9 (4.5)	48 (24.0)	78 (39.0)	59 (29.5)
농장 운영기술 부족	19 (9.5)	24 (12.0)	59 (29.5)	65 (32.5)	33 (16.5)
경영 및 재배기술 상담전문가 부족	22 (11.0)	29 (14.5)	53 (26.5)	63 (31.5)	33 (16.5)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문제	13 (6.5)	27 (13.5)	47 (23.5)	56 (28.0)	57 (28.5)
승계자 이외 자녀와의 유산갈등	61 (30.5)	49 (24.5)	56 (28.0)	15 (7.5)	19 (9.5)
지역주민과의 갈등	39 (19.5)	39 (19.5)	59 (29.5)	36 (18.0)	27 (13.5)
사람과의 교류(결혼, 사교 등)	27 (13.5)	39 (19.5)	48 (24.0)	44 (22.0)	42 (21.0)

27	영농정책과정 중 정책별 중요도 및 효과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이양농에 대한경영이양직불제	6 (3.0)	7 (3.5)	54 (27.0)	68 (34.0)	65 (32.5)
영농상속 및증여세 공제	1 (0.5)	2 (1.0)	32 (16.0)	59 (29.5)	106 (53.0)
영농기술 및경영 교육연수	3 (1.5)	1 (0.5)	41 (20.5)	66 (33.0)	89 (44.5)
농지 취득·임대 소개 및 알선	5 (2.5)	3 (1.5)	35 (17.5)	57 (28.5)	100 (50.0)
정책 장려금(보조) 지원	3 (1.5)	3 (1.5)	18 (9.0)	46 (23.0)	130 (65.0)
주거지 취득·임대 소개 및 알선	4 (2.0)	4 (2.0)	35 (17.5)	54 (27.0)	103 (51.5)
멘토, 주민, 관련단체 교류 지원	6 (3.0)	6 (3.0)	43 (21.5)	67 (33.5)	78 (39.0)
농업기술, 자금 등 원스탑 종합지원	2 (1.0)	4 (2.0)	29 (14.5)	58 (29.0)	107 (53.5)

28	정책별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양농에 대한경영이양직불제	17 (8.5)	47 (23.5)	99 (49.5)	26 (13.0)	11 (5.5)
영농상속 및증여세 공제	19 (9.5)	30 (15.0)	86 (43.0)	41 (20.5)	24 (12.0)
영농기술 및경영 교육연수	20 (10.0)	56 (28.0)	86 (43.0)	27 (13.5)	11 (5.5)
농지 취득·임대 소개 및 알선	18 (9.0)	30 (15.0)	73 (36.5)	50 (25.0)	29 (14.5)
정책 장려금(보조) 지원	22 (11.0)	41 (20.5)	72 (36.0)	35 (17.5)	30 (15.0)
주거지 취득·임대 소개 및 알선	16 (8.0)	21 (10.5)	88 (44.0)	43 (21.5)	32 (16.0)
멘토, 주민, 관련 단체 교류 지원	19 (9.5)	35 (17.5)	90 (45.0)	35 (17.5)	21 (10.5)
농업기술, 자금 등 원스탑 종합지원	18 (9.0)	33 (16.5)	83 (41.5)	35 (17.5)	31 (15.5)

영농승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인 쇄 2024.04

발 행 2024.04

발 행 처 GS&J 인스티튜트

12925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자식산업센터 A-9005호

전화 02-3463-7624 www.gsnj.re.kr

Globalization Strategy network Journal